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Sunset System

- Focusing on Standards and Procedures of Regulatory Review -

연구책임자 : 백옥선(부연구위원)
Baek, Ok-Sun

2017.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일몰입법의 중대

-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규제일몰제임
- 규제일몰제는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음

▶ 재검토행 일몰제의 확대경향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개별법령의 본칙에 특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전통적인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구분하여 재검토행 일몰제로 구분
-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면 특별히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나, 재검토행 일몰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해당규제를 재검토하여 규제폐지 또는 규제개선·규제유지 중 결정을 하여야 함

- 다른 국가는 효력상실형 일몰 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부적합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경우도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검토형 일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재검토형 타입의 일몰을 장려하면서, 2017년 3월 기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는 일몰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901개가 있으며, 그 수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경향에 있음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연구 필요

- 규제재검토 제도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규제재검토 제도는 좋은 입법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규제재검토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에도 법제분야 혹은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의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행정규제기본법」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절차등과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과연 개별법령상으로 도입되는 규제재검토를 체계적·실제적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정도로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정되는 개별법령상의 규제재검토 조항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

▶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제도적 의의

- 규제일몰제의 의의 및 연혁을 검토하고, 규제일몰제의 유형 및 유형별 특수성을 논의함으로써 현행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함
- 규제재검토 제도를 일몰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제도로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제재검토 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간의 연계점을 논의함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 근거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취지등에 대한 연혁적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의 일반법적 근거의 문제점 제시 및 이에 따른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의 한계 분석
- 재검토 대상 규제 선정단계부터, 재검토 실시단계에서의 조직 및 절차, 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단계에 걸쳐 각각의 쟁점별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제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유형 분류, 재검토주기, 재검토 방향, 후속조치 등 개별법령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조항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함

- 규제재검토조향을 두는 법형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률유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현행 규제의 분류·등록 방식 연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여 규제재검토조향의 모델입법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이론적 기대효과

- 전통적으로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법학보다는 행정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 역시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었으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음

▶ 제도운영상 기대효과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적 기대효과

-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을 분석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에 따라 개별법령상에 포함된 규제재검토 조향을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향의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함

▶ 주제어 : 규제의 재검토, 규제일몰제, 일몰조향, 실험입법, 입법평가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Growing importance of sunset legislation as means of regulatory reform

-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regulatory reform, and sunset legislation is emerging rapidly as a core means for regulatory reform.
- Sunset legislation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pealing or revising the existing inefficient regulations in a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manner and restraining the establishment of new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t is applied not only when newly establishing or reinforcing regulations but when revising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 Trend toward expansion of review-type sunset legislation

- With respect to regulations specific to main provisions of individual Act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quires to stipulate a provision for “reviewing regulations” so that a periodic review can be conducted regarding such regulations. Separately from more traditional termination-type sunset legislation, these provisions are classified as review-type sunset legislation.

- In cases of termination-type sunset legislation, regulations become invalid after a preset period unless the intent to renew the relevant regulations is affirmatively expressed. In comparison, while regulations subject to review-type sunset legislation do not automatically expire on a preset date, they become subject to review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o repeal them or retain them with or without improvements.
- As many other countries view it as inappropriate to widely apply termination-type sunset clauses, most of the sunset legislation consists of review-type sunset clauses in Korea and termination-type sunset legislation is only rarely used.
-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promoting the review-type sunset legislation. As of March 2017, a total of 901 Acts,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have review-type sunset provisions. There is an ongoing trend towar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review-type sunset legislation.

▶ **Need to conduct research for ensuring effectiveness of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 Despite the rapid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it is skeptical whether a substantive review of regulations is actually conduct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system when a period for reviewing regulations arrives.
- While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is being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regulatory reform aimed at efficient legislation, it can be said tha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is field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despit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lack of a legislative basis for operating the regulatory review system.

- Therefore, more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directions for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a focus on: whether the scope of the current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is adequate; and whether the provisions on determining the period, procedures, etc. of reviews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adequately and sufficiently defined to provide the basic guideline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d substantively review regulations introduced under individual statutes. Further,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provisions prescribing the review of regulations attached to individual statutes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I. Main Contents

▶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 The legal nature of the current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has been analyzed by examining the purpose and history of the sunset legislation and discussing the types of the sunset legis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thereof.
-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whether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is classified as sunset legislation or as an evaluation system. Additionally, the link between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and the system for post evaluation has been discussed.

- ▶ Analysis of legal basis for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suggestion of ways for enhancement
 - A historical review has been conducted on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etc.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 Major problems that the current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have as a general legal basis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 discussed, and in relation to that, limitations of provisions of individual statutes on the review of regulations have been analyzed.
 - An approach for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s been presented by examining contentious issues by phase of review, covering the phase for selecting regulations subject to review; the phase for performing review, and the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used in this phases; and the phase for follow-up measures after review.

- ▶ Analysis of provisions of individual Acts on review of regulations, and proposal of ways for enhancement
 -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provisions on review of regulations included in individual statutes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covering the classification of types of regulations subject to review under individual Acts; the cycle of review; basic directions for review; follow-up measures, etc.

- A legislative model of provisions on review of regulations has been proposed by examining problems of the legal approach of legislating such provisions from a statutory reservation perspective and problems of linking th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current regulations.

III. Anticipated Effects

▶ Effects theoretically anticipated

- Traditionally,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has been conducted more by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than by legal researchers, and the same can be said for research on regulatory reviews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legal basis established as part of the regulatory reform. Recognizing many limitations caused due to the lack of legal theories,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lay down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viewing the regulatory review system from the legal perspective.

▶ Anticipated effects on operation of system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regulations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regulatory reform and properly reflect the realities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 Anticipated legislative effects

-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views of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serves as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system for reviewing regulations and by proposing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the aim of making the system more effective.
- In addition to proposing th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s study presents a legislative model of provisions on review of regulations to be included in individual statutes so that it can serve as a reference when enacting statutes in future.

▶ **Key Words : Review of Regulations, Regulatory Sunset System, Sunset Clause, Experimental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요약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I. 연구의 필요성	21
II.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I. 연구의 범위	26
II.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I. 규제관리법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28
II. 규제재검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제시	29
III.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효성 도모	29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 31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33
I. 규제일몰제의 의의	33
1. 일몰제의 개념	33
2. 일몰제의 기능	34
II.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37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근거	37
2. 기존규제에 대한 근거	38
3. 대상규제 및 일몰기한에 대한 근거	38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39
I.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39
II.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의 비교 및 구분	41

1. 규제일몰제 설정 대상 기준 부재	41
2. 실무상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2
3. 선행연구에서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3
Ⅲ. 유사입법 개념과의 관계 및 비교	45
1. 임시입법과의 관련성	45
2. 실험입법과의 관련성	46
3. 사후입법평가와의 관련성	48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49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경과	49
1. (구) 행정규제관리법에 따른 규제 검토	49
2.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른 규제 재검토	50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51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54
1. 재검토행 일몰제 대상 선정 요건	54
2. 규제인지 여부 판단	55
3. 일정주기마다 재검토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단	67
Ⅲ. 규제재검토 운영절차 및 기준	73
1. 재검토키한 설정 주체 및 절차	73
2. 재검토키한의 설정 및 연장	75
3.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및 절차	76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법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81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84
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 분석	84
1. 법령형식별 재검토 조항 현황	84
2. 법령별 재검토 조항 분포 현황	85

Ⅱ.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시기(신설시기·재검토시기) 분석	106
1. 규제재검토 조항 신설시기 추이	106
2. 규제재검토 주기 설정 현황	107
3. 재검토주기 설정 기준	107
Ⅲ.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소관부처 분석	124
1. 재검토 대상 규제 현황	124
2. 부처별 재검토 조항 현황	125
3. 재검토 실시주체 현황	127
Ⅳ. 규제재검토항목 및 후속조치 분석	129
1. 규제재검토 항목	129
2. 규제재검토 이후 후속조치	130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132
I. 각 부처에서의 규제재검토 운영방식	132
1.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 도출방식	132
2. 규제재검토의 심사자료 형식 및 기준	133
3. 규제재검토 운영 결과 통계	134
Ⅱ. 법률상 규제재검토 조항 개폐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136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폐지 사례	136
2.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사례	137
3.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여부 판단 사례	141
Ⅲ. 규제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 사례	143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 151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154
I. 재검토 대상규제 선정 및 기준 마련	154
1. 규제재검토 성격규명 및 일몰 근거와의 분리	154
2. 규제재검토 대상범위 선정기준 필요	158
3. 규제재검토에 부적합한 영역 결정 필요	159

Ⅱ. 규제재검토조항의 근거 형식 정비	160
1.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과 관련한 쟁점	160
2. 규제재검토 조항 근거형식 및 규율체계 변경	161
3.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모델안	162
Ⅲ. 재검토 실시 시기 및 주기 명확화	163
1. 규제재검토의 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쟁점	163
2. 개별법상 검토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165
3.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법령정비방안	167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169
Ⅰ. 규제재검토 실시 기준 마련	169
1. 규제재검토 실시주체 및 기준정립주체	169
2. 규제재검토 기준 마련방식	170
Ⅱ.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정비	171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조직 설치 근거 부재	171
2. 규제재검토 조직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173
3. 규제재검토 실시조직 근거 법령정비방안	184
Ⅲ. 규제재검토 실시 절차 정비	188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절차 규정 보완의 의의	188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미설정시 사유 제시	188
3.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연장절차	190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192
Ⅰ. 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192
1.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의 유형	192
2. 규제재검토 결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계 마련	194
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195
Ⅲ. 재검토 관련자료 공개 및 결과 보존 의무화	197
1. 재검토결과서 작성 근거 마련	197
2. 재검토 결과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근거 필요	198
3.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결과자료 공개	198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 201

참고문헌 207

부 록 215

- [부록 1] 개별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 현황(2017.3. 기준) 217
- [부록 2]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8년) 271
- [부록 3]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9년) 325
- [부록 4]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0년) 435
- [부록 5]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1년 이후) 46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개별법령의 본칙에 ‘규제의 재검토’¹⁾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의무지우는 방식으로 일몰조항을 입법화하는 방식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²⁾ 이와 같은 규제일몰제는 원래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일몰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곧바로 상실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몰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신설되었고, 이를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구분하여 재검토행 일몰제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대해서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모두를 상정하여 일몰제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제도는 현재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는 조의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규제정책 관련 문헌에서는 이를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혼용하여 사용하되, 최대한 실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규제의 재검토 제도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2) 우리의 경우 일몰제도를 두는 목적상 규제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거나, 외국에서는 규제일몰제로 표현하기 보다는 ‘일몰법(Sunset Law)’ 또는 ‘일몰조항(Sunset Clause or Sunset Provision)’이라고 하여 입법학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경향이 짙다. 우리는 일몰에 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제분야에 있어서의 일몰을 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일몰제(Sunset Regul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재검토 조항(Review Clause)’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술하겠으나 그동안의 경험상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의 운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규제일몰제는 법률에 새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물론 현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폐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특히나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는 기존에 도입된 규제를 일정한 주기별로 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재검토행 일몰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규제를 강화 내지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재검토행 기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개별법령에 포함된 규제 중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대상규제를 선정하고 해당규제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기한 등을 담아 개별법령에 근거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는 법령에서 “규제의 재검토”라는 제명으로 하나의 조(條)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901개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입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45개, 시행령에 464개, 시행규칙에 392개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수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재검토행 기한 설정에 관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후 개별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근거하여 개별부처에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제의 신설 시는 물론, 기존규제에 대해 강화하거나,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입법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행 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다. 이는 물론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1994년 이후부터 운영되어 온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가 없이 규제개혁의 홍보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규제일몰제를 운영하는 부처의 능력 등 여러 실무적인 한계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겠으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개별법령에 규제일몰제를 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대상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규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 중에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큰 의미가 없는 규제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행 규제일몰을 규정함에 있어 각 개별부처에서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개별부처의 법령에 일몰제 운영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제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확대경향과는 달리 규제의 재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재검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몰제는 불필요하거나 과잉적인 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념과 함께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념이 결합되어 활발해지고 있는 제도로서, 일몰제 중에서도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는 좋은 입법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몰제의 속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는 결국 우리가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로 부르고 있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에도 법제분야 혹은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몰제가 독특한 입법방식이기 때문에, 그 제정이나 활용이 일반적이지 못한 까닭에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던 점, 특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방식의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헌은 물론 외국에서도 그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³⁾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는 현행 규제등록제도나 규제정비제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규제연구에서 법학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 규제관리제도 전반의 혼란상황이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규제일몰제에 대한 법제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성격을 일몰제의 성격으로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의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행정규제기본법」의 재검토행 설정과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과연 개별법령상의 규제의 재검토를 체계적·실제적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것인지,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상, 절차, 기준, 방법 등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이나 개별법령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규제의 재검토에서는 결국 해당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매커니즘과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검토 제도를 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관련 근거, 규제의 재검토 제도와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와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의 재검토의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근거에 따라 각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3) 일몰제에 대한 법제연구로서는 이미 2011년과 2013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제외하면 일몰제도에 대한 법제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서는 일몰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 외국의 일몰제 및 검토조항의 운용상 경험,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의 성공적인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과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 국가의 일몰제 경험 분석 및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질적 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법제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참조.

지고 있으므로, 현재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검토행 규제일물제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들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에 대해 해당 법률상의 근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규제일물제 중에서도 재검토행으로 설정되고 관리되고 있는 규제일물제에 대한 심층적 제도연구로서 현행의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실증연구이며, 규제재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제의 재검토 설정방법, 검토방법, 검토조직 및 검토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법령의 사례를 분석하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반규정은 물론 및 개별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조사·분석하는 실증연구로서, 2011년과 2013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일물제 법제개선연구를 실증적·심층적으로 발전시키는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재검토행 규제일물제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이외에도,⁴⁾ 일물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개별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4)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는 폐지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2014년 11월 13일 김광림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여전히 제정되어 있다. 당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 후 제정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

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은 물론, 이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이에 근거하여 규제의 재검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을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해당 제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연구의 범위로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에 관한 연혁을 조사하고, 해당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란 무엇인가,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조직은 어디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다.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개별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들을 분석하여 규정방식, 규정형식, 규정내용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인 재검토행 일몰제 설정을 위하여 법령에 도입되어 있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실질적으로 재검토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규제일몰제의 원래의 도입취지는 실험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여 규제의

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현재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한시적인 기한을 정하거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유지, 개편 및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일몰제 시행 후 처음에 제도도입 당시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유지, 폐지, 완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실효성 파악을 위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규제일몰제가 실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규제일몰제의 규범적 근거조차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일몰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과 검토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가 반드시 요구된다.⁵⁾ 이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로서, 규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 내지 평가와는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규제일몰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규제일몰제 시행 또는 운영에 대해 적극적 평가를 해보는 것은 법적 기반의 정비 이후 후속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한 기존의 문헌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적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일반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연혁분석, 규범분석을 실

5) 일몰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몰이 아니라 자동연장만이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는 규제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이를 평가해 본 사례는 없다. 규제일몰제 중에서도 효력상실행 일몰의 경우에는 일몰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실제로 일몰조항에 따라 실효된 것과 갱신된 것에 대한 수 및 전체적인 빈도수가 평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검토형 일몰제의 경우에는 일몰 설정의 목적은 물론, 제도도입당시와 일몰시점에서의 환경변화 등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재검토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력상실행 일몰제의 운영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검토형 일몰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시하였다. 규제일몰제 혹은 재검토 제도에 대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증적·경험적 연구방법론이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검토형 규제일몰의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관련조문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취하였다. 개별법령상으로 규제의 재검토라는 제명을 달고 있는 조문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재검토 조항을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사항은 분류 시 반영하였다.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된 시기, 재검토의 주체, 재검토의 방향, 재검토의 주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개별법령상의 규정의 체계성·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방법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미비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규범분석을 바탕으로 「행정규제기본법」과 개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입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이론적 효과, 입법적 효과, 실효성 확보 효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I. 규제관리법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전통적으로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법학보다는 행정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결과, 규제관리와 관련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법학 내지 입법학적 측면에서의 기본이론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분류나 등록·정비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규제분야에 대한 법학적 이론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도 역시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유형이나 존속할 필요가 없는 규제에 대한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왔던 결과 제도운영상의 여러 한계가 있었

으므로, 본 보고서의 논의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규제와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규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에 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규제재검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제시

본 연구의 결과 일몰제, 특히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유지·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가진다. 이 연구는 일몰제도도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일몰의 근거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일몰제 전반은 물론 재검토행 일몰제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일몰제 운영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관련법제의 개정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III.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효성 도모

재검토행 규제일몰제를 포함하여 규제일몰제는 제도도입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몰제도의 실효성확보는 운영에서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정부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규제의 양적축소 및 질적개선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I. 규제일몰제의 의의

1. 일몰제의 개념

일몰제(Sunset Law) 혹은 일몰법(Sunset Legislation)은 정해진 기한이 도래했을 때 특별하게 존속과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은 이상 대상이 되는 입법, 법률 등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몰제나 일몰법이라는 용어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규제일몰제(Regulatory Sunset System)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부터 도입되어 있었던 규제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제의 활용의 목적이나 역사가 규제의 완화 내지 합리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과거부터 규제일몰제에 대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노후규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규제 품질관리기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확대해왔고, 앞으로도 확대의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⁶⁾

이러한 배경에서 규제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해당규제를 존속시켜야 하는 기한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기한이

6)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4.3, 690면.

도래하는 경우 해당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논의된다. 때문에 그동안의 규제 일몰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래 시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라고 명명되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면서 규제일몰제의 개념에도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백서 및 OECD 규제개혁보고서에서는 원래의 전통적인 규제일몰제의 개념에 “재검토형”을 추가하여 특정규제에 대해 일정한 기한을 설정 한 후 기한이 도래 시 해당 규제를 곧바로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존속이나 완화, 폐지 등의 방향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도 규제일몰제의 개념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일몰제를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규제신설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거나 감소하는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합리화를 목적으로 재검토 한 후, 규제를 폐지·완화하거나, 규제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유지하거나, 혹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반을 규제일몰제의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제의 개념은 규제개혁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기간이나 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재검토하는 전반적인 제도를 규제일몰제로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다.

2. 일몰제의 기능

일몰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의 수단 혹은 더 좋은 입법의 수단으로 논의되는 등 다양한 의미에서 순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일몰방식을 통하여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해당 법규범을 처음 도입할 당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7) 일몰제가 활발하게 시도되었던 미국에서는 원래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및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특정정책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특별히 의회 등에서 존속과 관련하여 논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는 수단으로 일몰제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결국 규제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정기관 자체에 대한 일몰제 역시도 “규제일몰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기도 한다(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19면).

지에 대해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나 법규범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가장 큰 순기능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큰 현대사회에서는 일몰방식의 규범형식 그 자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나 규범의 존속에 대해 고민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므로 질적인 혁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몰조항을 통하여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일몰조항은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운 규제, 부적절한 규제에 대해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⁸⁾ 일몰제는 그 외에도 규제나 법규범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해당 규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어떻게 유지·개선·폐지 등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규제나 법규범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⁹⁾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집행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로 규제자체의 집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세한 규제수단의 조정이나 폐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아왔기 때문에 일몰조항은 규제집행기관들에게 당해 규제 내지 규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원래의 일몰제의 탄생배경이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규제나 법규범에 대한 일몰을 통하여 관련사업 및 조직과 관련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일몰제의 순기능의 하나로 논의된다.¹⁰⁾

8) 정부가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정부가 기술발전에 직접적인 기준을 곧바로 설정하는 것 역시도 정부의 규제가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능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A. Freytag and K. Winkler, "The Economics of Self-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under Sunset Legislatio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Chair of Economic Policy II,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004.7, p5.

9) 특히 미국에서의 일몰제가 당초 행정기관의 폐지역할에서 개선을 거듭하면서, 현재 의회가 다른 행정감시수단과 일몰제를 연계하면서 행정기관의 자체감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Richard C.Kearney, *Sunset :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 1990, p.53,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3면 재인용)은 미국에서 일몰제가 처음 출발할 당시의 목적과 달리 현재는 규범 자체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우리와 유럽의 일몰제도라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하혜수 외,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8, 8면 이하.

일몰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몰입법이나 이와 유사한 실험입법은 자주 사용되는 입법방식은 아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다도 알 수 있다.¹¹⁾ 일몰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몰제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법치주의에서의 법률을 임시적·실험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거나, 법적 안정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 무시되거나 불필요하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¹²⁾ 이러한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 외에 일몰제를 설정하는 당시에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몰설정 시 일몰의 대상이나 기한을 부적절하게 정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의 독점화나 재독점을 야기하거나, 규제가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다.¹³⁾ 또한 이와 같이 일몰제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규제 내지 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즉, 실질적으로 평가 능력적 측면에서는 물론 비용적 측면에서도 평가주체에 대해 과잉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규제일몰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설치와 같은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일몰제의 규정방식은 매우 포괄적으로 혹은 개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일몰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규를 갱신하고 존속하기 위하여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일몰제의 운영과 관련된 시간상의 한계나, 규제일몰제 운영을 위한 평가 비용이 평가대상이 되는 규제의 소요비용 등 관련 비용을 초과할 여지도 있다.¹⁴⁾ 즉, 충분하게 실질적인 검토 내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규제일몰제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평가는 매우 어려우며, 충분하게 의미 있는 평가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와 평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도 일몰제의 목적달성과 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 일몰조항

11) Arnulf Tverberg, 『The Use of Sunset and Evaluation Clauses in the Norwegian Legal System』,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10.31.; Mauro Zamboni, 『Sunset Clauses in Swedish Legislation: An Overview』,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10.31. 참조.

12) Sofia Ranchordas, 『Constitutio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p11.

13) A. Freytag and K. Winkler, “The Economics of Self-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under Sunset Legislatio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Chair of Economic Policy II,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004.7, p5.

14)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39면.

을 두는 과정에서 규제선정에 신중하게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일몰제의 역기능이 실제 일몰제나 일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II.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근거(『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일몰제의 일반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¹⁵⁾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 제8조는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제정당시부터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를 구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과 달리,¹⁶⁾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여러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분화된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은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인지 재검토키형 규제일몰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설·강화규제인지 기존규제인지를 기준으로 근거조문을 구성하는 체계를 취한다.

15)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부터 법률의 목적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 억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당시 국회검토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강화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조항에 규제강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7, 5면).

16) 『행정규제기본법』은 제정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신설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키하여 정비하도록 하며, 법무부 차원의 일원화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정이유로 한 바 있다(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안이유).

2. 기존규제에 대한 근거(「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에는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정당시 「행정규제기본법」에 기존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국회는 “신설규제 및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규제 중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한정하여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일몰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지나친 행정 부담을 피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규제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규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6일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당시에 기존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서는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에 관해서는 규제의 신규·강화 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3. 대상규제 및 일몰기한에 대한 근거(각 개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에는 물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몰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특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방식으로 일몰기한을 두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

17)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검토보고서, 1997.7, 5면.

서도 재검토행 일몰기한을 두는 근거는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존속기한을 정하는 방식의 일몰제는 개별법령에 【존속기한】이라는 조(條)명으로, 재검토키한을 정하는 방식의 일몰제는 【규제의 재검토】라는 조(條)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수는 거의 없으나, 재검토키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약 900개 이상(2017년 3월 기준)이 있으며, 각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한 개 이상 다수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수는 이보다 몇 배 많은 수이다.¹⁸⁾ 이와 같이 규제일몰의 대상이나 기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있다.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I.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모든 법 혹은 규제는 제정목적에 따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정단계, 집행단계, 평가 등 후속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될 때 입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제정단계에서는 제정당시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하여야 하고, 이후 법제정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집행과 사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통하여 입법을 끊임없이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에 관한 논의는 입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집행을 통한 개선과정, 그리고 입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후속조치 과정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입법 중 규제사항에 한정하여 입법에 관한 절차,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국가가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규제가 당초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지속

18) 현재 901개의 법률에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대상으로 규정된 호를 기준으로 할 때 3,772개이므로, 실제 하나의 조항에서 평균 4개 정도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제도 역시 입법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입법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제도 모두 일몰제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동안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도래 시 해당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의 경우 전통적인 일몰입법으로서 그 법적 성격을 당연하게 일몰제로 보아왔고, 이에 대한 의문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규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의가 없이 일몰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는 재검토기한 설정방식이 존속기한 설정방식의 한계나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몰제의 근거로 논의되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재검토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게 되면서 더욱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일몰제의 한 유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존속기한 설정을 통한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규제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일몰제를 설정하였으나 다만 효력상실 이전에 한 번 더 연장의 필요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제도라면, 재검토행 일몰제로 구분되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하되 기한도래 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폐지 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폐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재검토 제도가 전통적인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의 일몰제와 어떠한 관련성 혹은 차별성이 있는지, 규제재검토 제도 역시 실무상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일몰제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검토제도의 경우 외국에서는 이를 평가제도로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 두 가지 제도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제도를 검토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은 물론, 정부에서도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실효성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규제의 재검토제도와 효력상실행 일몰제와의 비교는 물론, 다른 입법유형과의 구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II. 효력상실행 규제일몰제와의 비교 및 구분

1. 규제일몰제 설정 대상 기준 부재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분류하고 있는 일몰제의 유형은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와 효력상실행 규제일몰제로서, 그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로서 같다. 다만, 규제의 재검토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재검토키한 도래 시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행 규제일몰제와 구분된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재검토행 규제일몰과 효력상실행 규제일몰의 구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개의 제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6년 7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¹⁹⁾ 제4조에서는 두 가지의 규제일몰제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 원칙은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9) 본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정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이 원칙이고, 재검토행 규제일몰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훈령은 경제규제에 한정된 것이기도 하고, 이에 따를 때도 효력상실형 규제일몰과 재검토행 규제일몰의 대상이나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2. 실무상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과거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몰을 설정할 당시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 바 있고, 여기서는 효력상실형의 경우 규제가 존속할 필요기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도래 시 원칙적으로 효력상실로, 일몰주기 도래 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의 적정성 등 내용에 대한 재검토 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일몰제를 구분하고 있다. 개별규제가 효력상실형의 대상이 될지 재검토행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개별규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구분기준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몰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1】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행 일몰제 구분기준(국무총리실)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행 일몰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속 필요기간이 예측되는 규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에 중점 설정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폐지 예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도입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존속여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실패시 별도조치 없이 자동 효력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 실패시 별도 폐지절차 필요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이나 제도 운용상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해 제도도입 회피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감축에 폐지절차 소요되며,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거부감을 완화 가능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행 일몰제
실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경우는 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행 일몰규제 중 약 20%의 규제가 재검토 이후 폐지 또는 완화

출처 : 국무총리실²⁰⁾

3. 선행연구에서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실무상의 논의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행 일몰제의 적용영역과 장단점을 연구한 선행내용에서의 논의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행 일몰제의 구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적용영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긴급·일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시 효력상실형 일몰방식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재검토행 일몰제와 관련하여서는 완결적 정책집행을 위하여 그 전에 규제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영역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여 실험입법에 가까운 방식의 일몰제 유형을 재검토행 일몰제로 보고, 그 대상 역시 실험입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기준보다 더 명확하게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의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고 검토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2면 참고.

【표-2】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형 일몰제의 구분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형 일몰제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규정된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당해 규제의 존속을 재승인하지 않는 경우 일몰기한 도래와 아울러 자동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규정된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당해 규제의 존속을 재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폐지절차가 필요
적 용 영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나 각종 위원회 등 행정조직의 신설시, 예상하지 못한 긴급시 또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정책집행을 행하기 전에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후에 질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나 규제조치를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 적합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의 단기적 달성도가 높음 • 제도운용이 획일적, 경직성이 강하여 제도도입 회피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제도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 •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거부감을 완화
해 당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입법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가 시간적 제한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구체적 조건이 기한부로 될 수 있는 규제 •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시장 상황에 따른 응급적, 일시적 규제조치 또는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권한을 가지게 하는 조치 • 특정한 위기 또는 정치적 및 공공적인 압력에 상응한 규제조치 • 상호대립적인 이익갈등으로부터 적절한 조화 내지 합의의 방향을 도출할 수 없고,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매우 반대에 직면하여 취해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실행을 위한 전제조건(민사상 또는 형사상 제재, 집행을 위한 기관이나 절차 등)이 미비하여 실효성의 달성여부가 매우 가변적이고 내용 또한 경험적 증거가 수반되지 않은 규제 •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다른 해결수단과 결부될 수 있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하에 만들어진 규제 • 규제로 인한 활동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하여 매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로서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입법을 행하기 전에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후에 질적으로 우수한 규제조치를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행 일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상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일반적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적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잠정적으로 회피하고 그것을 선진부문의 발전으로 종속적으로 재편하려는 규제정책을 실시하려는 경우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법률과 유사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법률과 유사한 성격

출처 : 박영도(2011)

Ⅲ. 유사입법 개념과의 관계 및 비교

1. 임시입법과의 관련성

임시입법(Temporary Legislation, Gesetzgebung auf Zeit)은 입법자가 해당입법의 지속기간을 일정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는 입법, 즉, 별도로 입법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기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입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임시입법은 한시법(Temporary Effects Legislation),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 일몰입법(Sunset Legislation), 실험입법(Experimental Legislation) 등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통칭하는 개념처럼 사용되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일몰방식 역시 대표적인 임시입법방식의 하나이다. 임시입법은 영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입법방식으로서 정보의 생산, 불확실성의 해소, 정치적 합의의 도모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²¹⁾ 비정상적인 입법형식으로서 임시입법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²⁾

일몰입법의 하나로서 규제재검토를 이해하는 경우 임시적 기간에 적용되는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규제재검토의 대상 역시 임시로 적용될 필

21) 이에 관해서는 Gersen, Jacob E. (2007) "Temporary Legislati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4 : Iss. 1 , Article 12. p278 이하 참고.

22) Sofia Ranchordas, 『Constitutio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p17-18.

요가 큰 규제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불확실성의 해소 목적이나 정치적 합의 도모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를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의 수준이 실제 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제는 재검토기한이 오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만 임시입법의 하나의 유형으로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2. 실험입법과의 관련성

그동안 일몰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임시입법 중에서도 특별하게 실험입법(Experimental Legislation, Experimentelle Gesetzgebung)과의 비교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그동안의 임시입법에 대한 요청역역과 달리 새로운 분야에서의 임시입법 방식, 즉, 실험 방식의 실험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통상 실험입법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사전에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치학·행정학에서의 논의가 최근 들어 법학에 도입되어진 것으로 논의된다.²³⁾ 실험입법은 최근 들어 그 정보의 한계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입법으로서 이 역시 임시입법의 하나로 분류되며, 입법자에게 사회경제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의 존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몰입법과 실험입법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²⁴⁾ 일몰입법과 실험입법은 모두 사회·경제 및 기술환경에 변화에 부합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입법을 하는 의도 자체는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실험입법의 경우에는 실험적인 사항을 법에 규정함을 통하여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의 목적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률의 제·개정을 도모하

23) 실험입법에 대해서는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1, 106면 이하 참조,

24) Felix Uhlmann, «Sunset Legislation» und Experimentierklauseln. Weiterbildungsveranstaltung für die Kantonsverwaltung des Kantons Zürich, Zürich, 2017.5.31.(<https://www.rwi.uzh.ch/de/oe/ZfR/forschung/vortraege.html>); Sofia Ranchordas, 『Constitutio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p25.

기 위한 목적이 크다. 때문에 실험입법에서는 잠정적 성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후에 반드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무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며, 평가메커니즘이 없으면 이는 실험입법이 아니라고 본다.²⁵⁾ 이와는 약간 상이하게 일반적 일몰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입법을 종료하게 하되 계속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적이거나 불필요한 입법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입법자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에 뒤떨어지는 입법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입법보다는 일몰조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²⁶⁾고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재검토행 일몰제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입법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재검토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재검토하고, 개선·폐지·유지 등의 방향을 정하는 실험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재검토행 일몰은 “당해 법률의 제정 시에 산적한 과제나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종의 실험적 요소를 지닌 실험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⁷⁾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규제의 재검토제도의 성격이 실험적 입법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입법에 도입되어 있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영역이 실험입법적 성격에서의 입법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실험조항의 하나로 보고자 하는 경우 특별하게 실험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실험입법 및 실험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규제를 정하여야 한다. 현재 규제재검토 제도는 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범주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재검토제도 운영의 방향을 고려하여 실험입법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5)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1, 108면.

26) Sofia Ranchordas, 『Constitutio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p8.

27)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370면.

3. 사후입법평가와의 관련성

최근의 규제개혁이나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정책의 부각은 규제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보장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는 도구로서 일몰제를 평가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일몰제는 그 유형에 관계없이 일몰시점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효력상실형 일몰제의 경우에는 일몰기한의 도래 시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전제로 하므로 평가제도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 반면, 재검토행 일몰제의 경우 특정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해 평가하여 해당 규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효력상실형 일몰제이든 재검토행 일몰제이든 간에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되도록 하거나 연장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운영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여기서의 논의대상은 아니다. 이와 같이 규제재검토는 사후평가와 유사하며, 규제는 법률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현재의 규제재검토 제도에서는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와 마찬가지로 재검토키한 이후에 어떻게 재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규제재검토 제도를 사후평가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재검토제도의 평가적 요소,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규제재검토제도를 임시입법의 유형인 일몰입법이나 실험입법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경우 임시적 유지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전체법체계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임시입법에 대하여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입법형식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물론,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입법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일몰입법이나 실험입법의 대상이 좁게 설정되고 잘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선정결과의 적부와 관계없이 규제재검토를 더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평가제도로 이해하는 경우 현행 제도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많은 수의 규제를 평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후평가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한정된 평가기반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과잉적인 범위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므로, 중요한 규제에 대한 철저한 방식의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면 현재 규제 재검토제도는 임시입법이나 실험입법보다는 그 대상을 넓게 하면서도, 평가가 필요한 규제들에 대해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중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규제재검토의 제도적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I.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경과

1. (구) 행정규제관리법에 따른 규제 검토

현재 규제의 재검토의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근원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전 법률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32조 및 동법률의 개정 법률인 「행정규제관리법」 제32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²⁸⁾ (구) 「행정규제관리법」 제32조는 행정규제등의 정기조사 및 검토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3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허가·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관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구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근

28)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1994년 1월 7일 제정된 법률로서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었다가,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되면서 행정규제관리법은 폐지되었다.

거는 현재 규제의 재검토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2.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른 규제 재검토

국무총리실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²⁹⁾에 따른 기존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정부는 2009년 2월 3일 규제일몰제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법령에 포함되어 있던 규제들 중 일몰제 설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도록 하며, 중요규제 사항 중 일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작업팀이 일몰제 적용여부를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일몰제 적용대상 법률은 각 개별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되 국회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심의하고, 시행령 이하의 규제는 하나의 시행령이나 대통령 훈령을 제정함과 아울러 일몰제 운영지침·평가기준 등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였다.³⁰⁾ 이때는 (구)행정규제관리법상에서 정하고 있던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9년 4월 23일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³¹⁾에서는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조항에서 원칙적으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특정한 훈령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재검토형 일몰제 방식을 도입·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0)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22면.

31)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하나,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이나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2.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 설정의 예외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훈령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부터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측면이나 운용상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활용이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16일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³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기존규제에 대한 “개별적·부분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효력상실형 일몰 외에 일정주기(원칙 3년)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내용을 재검토·재설계하는 재검토형 일몰을 신설·운용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소개하고 있다.³³⁾

「행정규제기본법」에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이유는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가 어느 유형의 규제일몰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법 개정당시 “제8조의 내용이 규제일몰제의 어느 유형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규제가 원칙적으로 일정기한 도래와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명확한 내용도 없어서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결국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보는 경우 효력상실형 또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규제일몰제 전반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일몰제를 확대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규제일몰제의 유형구분을 통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를 새로이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일몰제에 관한 규

32) 실제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존규제(총 4,692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일몰설정을 한 건 수 총 1,044건 중, 효력상실형은 66건으로 6.3%에 불과한 반면, 재검토형이 978건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었다.

33) 규제개혁위원회, 『2009 규제개혁백서』, 2010.3, 27면.

정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정이유로 제시하였다.

【표-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개정연혁

1997.8.22.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2005.12.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2013.7.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u>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규제의 존속기한 <u>또는 재검토기한</u>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u>또는 재검토기한</u>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u>또는 재검토기한</u>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1997.8.22.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2005.12.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2013.7.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p>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u>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u>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이 당시 국회에서는 재검토행 일몰제의 신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행 일몰제도의 경우 효력상실형보다 유연한 존속기한 설정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검토행 일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설정에 관해서는 현행법 상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감안할 때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³⁴⁾ 이에 따라 현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재검토에 관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시는 물론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시에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II.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1. 재검토행 일몰제 대상 선정 요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재검토 설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규제로 한정하고,³⁵⁾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혹은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여야 일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모든 규제를 재검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34) 정부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3면 이하.

35) 2008년부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책일몰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제정되는 추세에 있다. 해당 조례에서의 일몰의 대상은 규제는 아니며, 일몰의 대상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시책 등”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례들은 대체로 정의, 적용범위, 일몰의 심의결정, 일몰권고, 일몰대상시책등, 일몰정책심의위원회,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의견청취,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몰대상 시책을 어느 주기로 선정하여 검토하는지, 검토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시책일몰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 및 시행시기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08.1.10.][2008.1.10 제정]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08.11.10.][2008.11.10 제정]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0.12.31.][2010.12.31 제정]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0.02.16.][2010.02.16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시행 2013.12.12.][2013.12.12 제정]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3.12.27.][2013.12.27 제정]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4.11.03.][2014.11.03 제정]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12.26.][2016.12.26 제정]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03.23.][2017.03.23 제정]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09.29.][2017.09.29 제정]

규제(그리고/혹은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³⁶⁾)를 선정하여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어떠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제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것까지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념에 대한 논의는 물론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이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크게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 그 범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합한 규제까지도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재검토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제도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검토의 대상을 너무 과잉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한정적 자원 대비 불필요한 과잉적인 재검토로 인해 정작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규제가 누락될 수 있고, 너무 협소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규제인지 여부 판단

(1) 규제의 개념(『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제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규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 형식의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법적 개념으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로 규제를 정의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정의한 후 약칭하여 규제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³⁷⁾ 이와 같이 현행 행정규제는

36)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혹은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중 어떤 것을 재검토형 일몰제의 대상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7) 『행정규제기본법』은 제4조에서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면서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되거나 국회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이 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위의 결과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가져오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에는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비권력적 행정행위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사실행위와 같은 행정지도가 법령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행사에 부담을 주므로 이러한 것이 규제의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³⁸⁾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념이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개념정의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체 법령에 근거하여 도입되어 있는 규제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상으로 규제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규제의 개념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법」 제2조상의 처분 개념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개념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한편으로는 규제의 개념에 소송법상의 논의를 반영한 포괄적인 개념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으로 규제를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규제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법보다는 규제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규제등록의 기준 등을 명확화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의 검토단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7, 5면; 의안번호 172595 유기준의원등 16인 발의안(2005.09.09.); 의안번호 172243 김종률의원등 30인 발의안(2005.07.14.)등), 법률의 제·개정시 법안심사 및 규제심사를 통해서도 규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검토(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11, 12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제정당시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38)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7, 5면.

(2) 규제의 유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의 개념은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동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전 영역에서의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정의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렇게 정의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규제의 범위나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등록기관인 관리주체가 관리의 대상인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에 대한 정의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2항은 규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이에 따라 행정규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표-4】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범위

적용 대상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	--

예 외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그러나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범위 역시 개략적인 분류로서, 예시방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각 호에 열거된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성격이 실질적인 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령등에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타의 예로서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4호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 개념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상의 행정규제의 범위 역시 법률상 규제의 개념정의를 크게 구체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규제등록제도 및 등록기준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이 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미등록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을 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령등의 정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규제기

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규제 등록시 규제의 명칭, 법적근거 및 내용, 처리 기관,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규제의 존속기한, 기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015년 국무조정실은 등록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등록체계를 개편하고,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규제등록단위의 수정과 함께 그동안 추진하던 규제총량관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규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제로 등록하거나, 규제를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등록함으로써 규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등록상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규제유형에 대한 통일적이고 자세한 기준이 없어 등록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³⁹⁾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의 등록단위를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규제등록을 규제사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사무와 관련된 20-30개의 규제조문을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하였으나, 개편에 따라 규제등록시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조문을 하나의 규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1개의 조문을 규제로 등록하도록 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현재는 규제등록기준을 기존과 달리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지 않고, 규제조문단위로 등록하되, 하위법령까지 연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현재 실무상으로는 규제등록방식 및 규제등록시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검토기한 역시 규제카드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내

39) OECD,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2017, 68-69면(<http://dx.doi.org/10.1787/9789264275874-ko>).

40) 등록체계 개편 전후 등록규제 단위 개수 변화 예시(정책브리핑, 과거·현재 등록규제 수 단순비교 부적절, 2017.5.30., <http://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36885> 2017-11-10 최종방문)

개편전	개편후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 1개 규제사무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3조(전입신고)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 등)
	3개 규제조문		

용의 하나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규제등록사항에 재검토기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 역시 시행령에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표-5】 규제등록방식 및 기재사항

규제등록방식	등록단위	규제조문(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 여러 규제조문을 통합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1개 조문 단위로 등록
	규제조문의 연계	규제조문을 등록함에 있어 해당 규제조문의 근거조문(상위법령의 규제조문)과 구체화조문(하위법령의 규제조문)을 모두 연계하여 등록
규제카드 기재내용	규제사무명	규제의 명칭
	규제요지	규제의 핵심 내용을 제시
	공포일	규제조문의 공포일
	시행일	규제조문의 시행일
	일몰정보	규제조문의 일몰유형(재검토행, 효력상실형), 일몰을 규정한 조문,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법령명	해당 규제조문의 법령명 및 조문
	주요검색어	해당 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
	연관법령	해당 규제조문과 연계된 상·하위법령 조문 일체를 연계체계도 형태로 제시

출처: 규제정보포털 사이트⁴¹⁾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서는 규제등록시 규제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중분류(규제의 성격),⁴²⁾ 소분류(규제의 유형)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분류와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규제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왔으며,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건강, 생명, 삶의 질, 경제 및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 기업

41) 규제정보포털 사이트(<https://www.better.go.kr/fz/stats/RefRgst.jsp>, 2017-11-1 최종방문).

42) 경제적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거래규제(trade regulation),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품질규제(quality regulation) 등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사회적 규제의 규제방식은 투입기준, 성과기준, 시장유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적 규제로 구분했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대분류 상으로 구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규제의 경우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와의 구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규제분류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는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목적인지, 혹은 보건·안전·환경·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지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였기 때문에,⁴³⁾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규제 간에 중복 측면이 클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규제를 분류하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분류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등록시 혼란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부터는 규제등록시 규제의 유형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분류의무방식을 폐지했다.⁴⁴⁾

(4) 실무상의 행정규제 판단기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상의 기준만으로는 행정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부터 “행정규제 개념 및

43)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별(출처 : 최병선(1992))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목적	소비자보호 생산자보호	사람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형평성 확보
종류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규제	환경규제 보건 및 안전 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제
이론적 근거	시장실패이론 시장경쟁의 효과성과 공평성에 대한 불신	대부분 시장실패이론
규제범위	특정 개별산업 대상	소산업에 공통 적용, 광범위함
시장경쟁과의 관계	시장경쟁을 직접적 연계	시장경쟁과 관계없이 폭넓은 대상
포획현상	피규제산업의 포획현상	포획현상이 적음
행위자 관계	피규제산업-소비자-정부	삼자관계 외 공익집단, 언론의 역할
규제기관	주로 독립규제위원회	행정부의 내부조직 또는 산하기관

44) OECD,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2017, 68면(<http://dx.doi.org/10.1787/9789264275874-ko>).

판단기준”을 작성하여 왔고,⁴⁵⁾ 이에 따라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규제에 대하여 등록하는 등록제도 역시 운용이 되어 오고 있다. 다만,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은 규제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기준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시 등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⁴⁶⁾ 그러나 해당 기준은 규제 개념의 명확화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미해결 논의를 담고 있는 한계 때문에 고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 기준은 현재 고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 기준을 사례화하여 행정규제 판단을 위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⁴⁷⁾

【표-6】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판단기준

사 안	사 례		행정규제 여부판단
기부금품모집, 행사후원 승인 등	사례 01	사회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금지하고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2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후원 승인 후 상당한 제약(예)행사의 수지결산 보고의무, 행사참석자 보고 등	행정규제
	사례 01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의 후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행사가능	행정규제 아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사례 01	행정질서벌(인·허가 및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규제
	사례 02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	행정규제 아님
수수료, 사용료 등	사례 01	수수료 등의 원인이 되는 검사·보고·신청·등록 등	행정규제

45) 2010년에 6월 10일에 이를 개정한 이후로 개정안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46) 이주선·정현용,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39면 이하.

47)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pmo.go.kr/pmo/online/online02_01.jsp, 2017-11-1 최종방문).

사 안	사 례		행정규제 여부판단
	사례 02	각종 검사·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등	행정규제 아님
단체 및 사업의 장려· 지원을 위한 지정행위 등	사례 01	지정·지원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의무·금지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수 있으며, 지정행위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육성을 위한 목적일 경우	행정규제 아님
위탁사무	사례 01	일정한 사유에 대해 위탁취소·철회하거나 위탁조건으로 지도·감독·검사·자료제출·보고 등을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사례 02	각종 검사·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등	행정규제 아님
구민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승인	사례 01	일정한 사유에 대해 사용승인취소 또는 사용제한 규정을 두거나 사용승인 후 조건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2	사용료 등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기금, 보조금, 지원금 등	사례 01	용자·지원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대해 교부·지원의 취소 중지 또는 금액반환 등을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사례 02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임의적 규정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사례 01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혜택 감소	행정규제
	사례 02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사례 01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 규정에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2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아님

사 안	사 례		행정규제 여부판단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 신고·검사 등	사례 01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혜택 감소	행정규제
	사례 02	수수료 부과, 등록의 구비서류·절차 등 요건을 명시하여 요건 기준에 맞을 경우만 등록을 접수하거나 등록에 따른 혜택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3	국민이 공인된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원하므로 사실상 검사기관이 독점적이며, 검사신청시 sample 제출방법, 검사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검사요건에 맞는 경우에 검사해주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4	검사가 법령등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물건 판매·안전 등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검사기관이 독점적이 되는 경우	행정규제
	사례 05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출처: 국무조정실⁴⁸⁾

여기서의 사례들을 보면 우선 기부금품모집등에 관한 사항, 행정형벌·행정질서벌에 관한 사항,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장려·지원을 위한 지정행위에 관한 사항,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기금·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임의적 규정방식으로 도입된 사항,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에 대한 사항, 비의무적 등록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사례를 예시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로 규제를 판단하나, 국민에게 수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로 볼 것인지와 같이 각각의 항목을 보면 여전히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논의한 후에 규제판단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문의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48)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pmo.go.kr/pmo/online/online02_01.jsp, 2017-10-31 최종방문).

현행의 규제판단기준에서는 행정형벌은 행정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반면, 행정질서벌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법률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양자는 제재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이하게 보고 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를 다시 규제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과태료를 규제로 보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에 대해 규제차원에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이 다수이고, 과태료에 대한 부과수준이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는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재검토를 하고 있다. 과태료를 규제로 볼지 여부와 부과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논의선상을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의 규제의 재검토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구분이 필요하다. 행정질서벌 뿐만이 아니라 행정형벌도 부과수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만약 과태료를 규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에 대한 부과수준에 대한 검토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같이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⁴⁹⁾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9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2017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과태료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역시 그동안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존 발의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등을 적용배제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징수, 법원의 질서위반행위 재판 및 집행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형태로 배제하고 있고, 이는 행정형벌과의 체계정합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범위의 구체화 작업과 함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행정규제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행정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논란이 있는 부분의 하나로 법령에서 임의조항의 성격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규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임의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나,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국민에게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지원을 받기 위한 지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실질적 효과면에서 임의규정을 판단하여야 하며,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준수절차가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규제로 보거나, 혜택으로 보아 사실상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로 본다”⁵⁰⁾는 의견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닌 영역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의 규제판단기준에서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시 관련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청 등도 규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주체와 객체 모두 행정기관인 경우에 이러한 사항도 규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판단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정내부적 행위로서 외부효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제로 볼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를 가져 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

50) 이해영·김주찬,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규제연구』 제24권제1호, 2015.6, 145면.

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행정규제로 판단하는 경우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준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제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⁵¹⁾

3. 일정주기마다 재검토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단

(1)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해석 및 그 의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의 재검토기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을 정하는 요건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여야 한다는 것은 명문의 해석상 명확하다. 그러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가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도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요한다.

【표-7】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51) 행정내부적 행위에 대한 처분성 문제가 논의된 판례로는 대법원 2011.4.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서울행법 2007.9.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대구지법 2006.4.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고 규제개혁백서에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해야 하는 일몰제에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상으로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은 재검토키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재검토키한에 대해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와 별도로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 즉,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와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규제재검토 제도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행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개념을 일몰제 전반에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재검토허 규제일몰의 대상은 이에 덧붙여 하나의 요건(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을 추가적으로 더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좁혀질 수 있다. 반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요건을 효력상실형 일몰제에만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경우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는 “일정기간마다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 전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의 대상규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대상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다.

【표-8】 「행정규제기본법」 해석에 따른 재검토형 일몰대상범위의 차이

적용영역	해석방법 1		해석방법 2	
	효력상실형	재검토형	효력상실형	재검토형
재검토형 규제판단 기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X
	X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X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판단에 따른 효과	재검토형 대상규제범위 축소		재검토형 대상규제범위 확대	

당초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의 일몰조항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일정기간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하여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재검토형 일몰제도 추진방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몰제 개정방식을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하여 병행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면서, 유형 1은 계속 존속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규제를, 유형 2는 계속 존속할 것은 명백하나 일정한 주기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재설계가 필요한 규제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⁵²⁾ 그러나 국회의 심사과정

5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7면.

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수정되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현재와 같은 수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자료에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의 체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형태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9】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 관련 조항의 개정경과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이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일정기간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하여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2) 규제재검토의 목적에 따른 대상범위 설정방향

일몰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존속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키형 규제일몰제 역시 일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급하는 이상 일몰제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규제의 재검토제도를 일몰제로 보는 경우에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부분은 재검토키형 일몰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명문으로 재검토키형 일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법령에서도 일몰제라는 용어 대신 규제의 재검토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본질을 일몰의 형태로 보고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존속의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규제까지 재검토를 하도록 결부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의 규정이 일몰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의 재검토기한의 설정을 하도록 제도를 일정기간마다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하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와의 결부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제들이 많으므로 일몰제의 형태가 아니라 규제에 대한 평가제의 성격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확대하여 도입할 수 있게 된다.

(3)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근거를 두면서 어떠한 규제가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인지, 그 유형이나 범위를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단순히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과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을 재검토기한 설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가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의 경우에는 일몰규정을 두기에 적합한 사항으로서 규제영향분석⁵³⁾이 없이 시급하게 신설되거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효력상실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재검토형의 대상

53) “규제영향분석”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르면 규제에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⁵⁴⁾ 우리의 경우 재검토행 일몰제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효력상실형 일몰제와의 연계하에서 재검토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있지 않은 측면도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 제도의 현실과는 매우 괴리가 크다. 다만, 일몰제의 틀을 벗어나 실험이 필요한 영역에만 한정하는 실험입법이나, 규제에 대한 평가제 등의 제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설정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거나 효력상실형 일몰제와의 관련성 없이 재검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재검토 제도의 성격을 일몰의 범위 안에서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효력상실형 일몰과 재검토행 일몰의 대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 일몰제도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은 재검토행 일몰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는 비례성 심사의 견지에서, “덜 제한적인 수법인 재검토행 설정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설정형이 적합하지 않으며, 획득되는 지식정보에 비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클 경우에도 비례성요건이 결여되어 유효기간 설정형이 부적합하며, 장래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유효기간 설정형의 채용으로 회복곤란한 법상태나 사실상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개혁의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달성도 내지 가능성만을 중시하여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여 퇴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설정형이 부적합하다”⁵⁵⁾고 한 바 있으며, 이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을 엄격하게 일몰제의 유형으로 분류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재검토행 일몰을 설정하는 데 적합한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지는 않지만, 일몰제를 두고자 할 때 일몰방식을 효력상실형 일몰제로 설정할 것인지 재검토행 일몰제로 설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규제재검토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며, 후술한다.

54)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5.4, 117면.

55)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10.31., 646면 이하.

【표-10】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 일몰제가 적합한 영역

일몰유형	구 분(규제 유형)
효력상실형	1)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2) 특별한 시장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추후 폐지 필요성이 높은 규제
	3)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4)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
	5)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으로 서둘러 도입된 규제
	6)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재검토행	7) 신기술 관련 규제,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
	8) 통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9)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출처 : 박영도(2011) 324면 포함 재구성

III. 규제재검토 운영절차 및 기준

1. 재검토행 설정 주체 및 절차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행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행을 설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검토행을 설정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하게 존속할 필요가 없는 규제의 신설·강화시는 물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면서도,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행을 설정주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설정하고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행을 설정하여야 하는 주체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으로써, 규제를 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재검토행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재량

에 맡겨져 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⁵⁶⁾ 이 과정에서 실무상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 설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표-1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포함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그러나 이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⁵⁷⁾⁵⁸⁾

56) 종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당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7. 8면; 반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같으나 규제정비영향분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된 바 있다(김영진의원 외 11인 발의, 2010.12.24.). 최근에도 규제정비시에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의안번호 12043, 김기준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2014.10.15.). 현행법률은 아직까지는 규제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57)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사유,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규제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규제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검토키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5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2. 재검토기한의 설정 및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검토기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나 5년을 넘길 수도 있다. 재검토기한을 5년으로 한 것은 재검토행 규제일물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일물제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던 기한인 5년을 그대로 정한 것이어서 효력상실형 일물제를 염두에 둔 것을 동일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를 다시 판단하는 것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환경변화를 고려한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재검토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재검토기한을 정하는 재검토제도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효력상실형 일물과 재검토행 일물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검토기간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역시 규제재검토제도의 성격에 따라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동법 제10조⁶⁰⁾에 따라 규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9) 그러나 2013년 개정 이전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의 규제의 존속기한은 그 문구만 보아서는 효력상실형 일물만 의미하는 것인지, 재검토행 일물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일물을 규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60)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개혁위원회에의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으로 이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존속기한의 경우 특정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므로 존속기한의 연장의 의미는 명확하다. 반면 재검토행 일몰의 경우 재검토 도입 기준일로부터 몇 년 후부터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연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기에 설정한 재검토주기가 3년인 경우 이를 5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주기를 변경하는 것인지, 재검토 이후 해당 규제를 재검토의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변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개별법에서 재검토기한을 정하는 경우 3년마다 혹은 2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주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조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5항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들 역시 재검토기한의 문제처럼 효력상실형 일몰제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3.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및 절차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정하도록 근거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규제를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재검토행 일몰제의 경우 효력상실형 일몰제 보다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 조직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몰제도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일몰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바 있으나,⁶¹⁾ 추진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재검토를 실시하는 조직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그 규정의 필요성과 함께 명문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신설·강화 규제인지 기존규제인지는 그 절차상으로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재검토 조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12면.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 조사 및 분석

제1절 범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조사 및 분석

제1절 법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재검토형 규제일물체는 개별법령에 “규제의 재검토”라는 조(條)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의 재검토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법령의 형식은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규칙(위임) 등 다양하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거형식을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규칙, 그리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전체적으로 2017년 3월 기준 901개로서, 법률 45개, 시행령 464개, 시행규칙 392개가 있고, 대부분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은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을 제정하면서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규칙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131개에 달하고 있다.⁶²⁾ 행정규칙형식의 재검토조항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형식에 따라 행정규칙 전체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법령에 규정된 규제의 재

62)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2016년 7월에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연구범위를 법령에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한정하면서 법령에 대해서는 연구시작시기를 기준으로 2차 조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사항은 1차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구과정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조사한 조례등의 경우에는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시점이 상이함을 밝혀둔다. 이와 더불어 이 장에서의 통계자료 역시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검토조항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행정규칙에서는 법령에 도입된 규제재검토 조항과 마찬가지로 조(條)제명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근거가 「행정규제기본법」이 아니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조문명도 규제의 재검토가 아니라 재검토기한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 외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의 대상은 규제는 물론 규제가 아닌 것에도 적용되고, 재검토주기 역시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는 3년을 기본적인 주기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행정규칙상의 재검토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2】 행정규칙에 근거하는 재검토 방식

	위임행정규칙	행정규칙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조문명	규제의 재검토	재검토기한
검토대상	행정규칙 전체	행정규칙 전체
검토주기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 원칙적으로 5년 초과불가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⁶³⁾
예시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2일 까지로 한다.

6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③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조례나 규칙에도 근거를 둘 수 있는데, 2017년 11월 기준으로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140개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포함하여 논의하지는 않고자 한다. 다만, 현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의 대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서, 이는 법률에서의 특례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140개 중 122개가 이에 해당하여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조례는 1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총 18개에 불과하다. 그의 내용 역시 13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며, 나머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 조례, 경관 조례, 폐기물관리 조례이며, 조례검토 결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들의 경우 실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개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 상당수 있으므로 정비를 요한다.⁶⁴⁾

이와 같이 현행 규제의 재검토는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행정규칙이나 조례·규칙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별도의 쟁점사항이 있으므로 행정규칙 형태나 조례 형태의 규제의 재검토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연구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칙 내에 위임 규제가 포함된 경우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의 형식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하고, 조례에 포함된 규제방식도 유사한 경우 지역별로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규제재검토제

6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는 대체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제로 보고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도의 법적 형식의 통일성은 행정규칙이나 조례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되,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현황만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근거는 법령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법령상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법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형식의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해서는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I.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 분석

1. 법령형식별 재검토 조항 현황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현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산발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법령별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를 분석하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둘 때 법률에는 거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전체 901개 중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전체 901개 중 45개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 464개, 시행규칙 392개로 하위법령에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 정하는 규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규제가 구체화되는 하위법령에서 재검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3】 규제의 재검토조항의 법적근거별 수

형 태	갯 수
법	45
시행령	464
시행규칙	392
전체 합	901

2. 법령별 재검토 조항 분포 현황

다음의 표는 현재 소관부처별로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두고 있는 근거법률수와 해당 법령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의 수를 정리한 표이다.⁶⁵⁾ 음영처리를 한 부분과 같이 하나의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에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령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 규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각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표-14】 법령단위별 재검토 조항 형식분포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찰청	8(13)	경비업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	○

65) 다만, 이 표에서는 법령명이 00법 사항률 등아 어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의 경우에는 형식은 하위법령일지라도 근거법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수로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별도의 하위법령은 총 48개가 해당한다.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정원경찰법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고용 노동부	27(4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고용정책 기본법	×	○	○
		공인노무사법	○	×	○
		국가기술자격법	×	○	○
		근로기준법	×	○	○
		근로복지기본법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노동위원회법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산업안전보건법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숙련기술장려법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
		임금채권보장법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직업안정법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최저임금법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정거래 위원회	8(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27(3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기술사법	×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	×
		방송법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별정우체국법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우주개발 진흥법	×	○	×
		우주손해배상법	○	×	×
		우편대체법	×	×	○
		우편법	×	○	○
		전기통신사업법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
		전자서명법	×	○	○
		전파법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
		통신비밀보호법	×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3)	방송법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교육부	36(3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고등교육법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	×
		교육공무원임용령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	×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대학도서관진흥법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	○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
		사립학교법	×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
		유아교육법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	×
		초·중등교육법	×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	×
		평생교육법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학교급식법	×	×	○
		학교도서관진흥법	×	○	×
		학교보건법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학위의종류 및 표기방법에관한규칙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	○
국가 보훈처	7(1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국민권익 위원회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국방부	2(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국토 교통부	69(1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건널목 개량촉진법	×	○	×
		건설기계관리법	○	×	○
건설기술 진흥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법	×	○	○
		골재채취법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공동주택관리법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공인중개사법	×	○	○
		공항시설법	○	×	×
		교통안전법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궤도운송법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도로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도시개발법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도시철도법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물류정책기본법	×	○	○
		물류창고업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	×
		사도법	×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	×
		유료도로법	×	○	○
		자동차관리법	○	×	○
		자동차등록규칙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
		주차장법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
		주택법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	○
		지하수법	×	○	○
		철도사업법	○	○	○
		철도안전법	×	○	○
		택지개발촉진법	×	○	×
		하천법	×	○	○
		항공보안법	×	○	○
		항공사업법	×	○	○
		해외건설 촉진법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1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보험업법	×	○	×
		상호저축은행법	×	○	×
		신용보증기금법	×	×	○
		신용협동조합법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은행법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전자금융거래법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
기획재정부	13(17)	관세법	×	○	×
		관세사법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담배사업법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세무사법	○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	×
		외국환거래법	×	○	×
		한국은행법	×	○	×
협동조합 기본법	×	○	×		
농림축산식품부	41(6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김치산업 진흥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낙농진흥법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농약관리법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
		농업협동조합법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농지법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동물보호법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	○
		말산업 육성법	×	○	○
		방조제 관리법	×	×	○
		비료관리법	×	○	○
		사료관리법	×	×	○
		수의사법	×	○	○
		식물방역법	×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
		양곡관리법	×	×	○
		외식산업 진흥법	×	○	×
		인삼산업법	×	○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종자산업법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	×
		초지법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	○
		축산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
		한국마사회법	×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	○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11(17)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	×
		농어촌정비법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
		식품산업진흥법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
문화재청	5(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
		문화재보호법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
문화체육 관광부	27(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경륜·경정법	×	○	○
		공연법	×	○	○
		관광진흥법	×	○	○
		국민체육진흥법	○	○	○
		국어기본법	×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	×
		도서관법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
문화예술진흥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예술인 복지법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저작권법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
		방송통신위원회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8(11)	국적법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
		법교육지원법	×	○	×
		법률구조법	×	○	○
		변호사법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	×
		출입국관리법	×	○	○
보건복지부	62(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건강검진기본법	×	×	○
		결핵예방법	×	○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
		공중위생관리법	×	○	○
		구강보건법	×	×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
		국민건강보험법	×	○	○
		국민건강증진법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국민연금법	×	×	○
		국민영양관리법	×	×	○
		기초연금법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
		노인복지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모자보건법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	○
		사회복지사업법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아동복지법	×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	○
		암관리법	×	×	○
		약사법	×	○	×
		영유아보육법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	○
		의료급여법	×	○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의료법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입양특례법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	○
		장애인복지법	×	○	○
		장애인연금법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
		치과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	○
		한약육성법	×	○	×
		혈액관리법	×	○	○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2(4)	약사법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림청	13(2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사방사업법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산림보호법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산림조합법	×	○	○
		산지관리법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	×
산업통상 자원부	46(7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계량에 관한 법률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광산안전법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	○
		광업법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
		대외무역법	×	○	×
		도시가스사업법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
		산업발전법	○	○	○
		산업융합 촉진법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산업표준화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
		석탄산업법	×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송유관안전관리법	×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
		유통산업발전법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전기공사업법	×	○	○
		전기사업법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전력기술관리법	×	○	○
		전시산업발전법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	×
		제품안전기본법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집단에너지사업법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	○		
소방청	7(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11(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식품위생법	×	○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
		의료기기법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화장품법	×	×	○
여성 가족부	13(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건강가정기본법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아이돌봄 지원법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청소년 기본법	×	○	○
		청소년 보호법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외교부	1(1)	해외이주법	×	○	×
원자력안전 위원회	1(1)	원자력안전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사 혁신처	2(2)	공무원연금법	×	○	×
		공무원임용시험령	×	○	×
조달청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	×
중소벤처 기업부	19(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
		중소기업기본법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		
통일부	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
특허청	6(9)	디자인보호법	×	×	○
		발명진흥법	○	○	×
		변리사법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상표법	×	×	○
		특허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2(3)	수상레저안전법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
해양수산부	45(6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
		국제선박등록법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
		내수면어업법	×	○	○
		도선법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	○
		선박법	×	×	○
		선박안전법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선박직원법	○	○	○
		선박투자회사법	×	○	○
		선원법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	○
		소금산업 진흥법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
		수산업법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수산자원관리법	×	○	×
		신항만건설촉진법	×	×	○
		어선법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	×		
어촌·어항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	×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	×	○
		연안관리법	×	○	×
		염업조합법	×	○	×
		원양산업발전법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
		항로표지법	×	×	○
		항만공사법	×	○	×
		항만법	×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	○
		항만운송사업법	×	○	○
		해사안전법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해양환경관리법	×	○	○
해운법	×	○	○		
행정 안전부	29(43)	개인정보 보호법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
		농어촌도로 정비법	×	○	○
		도서개발 촉진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소하천정비법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온천법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
인감증명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재해구호법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
		전자정부법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
		주민등록법	○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
		풍수해보험법	×	○	×
		행정사법	○	○	○
환경부	41(6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대기환경보전법	×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
		먹는물관리법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상수원관리규칙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소음·진동관리법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수도법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		

소관부처	재검토 근거법수 (조항수)	법령명	형 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약취방지법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자연공원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	×
		자원순환기본법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토양환경보전법	×	○	○
		폐기물관리법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하수도법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화학물질관리법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	○
		환경교육진흥법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
		환경보건법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환경영향평가법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II.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시기(신설시기·재검토시기) 분석

1. 규제재검토 조항 신설시기 추이

규제의 재검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되어 운영하다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추가되면서 개별법령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 집중적으로 재검토 대상 규제가 선정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342건, 2014년 354건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재검토 조항의 신설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이전에 도입된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의 각 항이나 각 호에 재검토의 대상 규제를 추가하는 개정을 한 사례도 많아, 그 수를 고려하면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수는 상당수가 추가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15】 연도별 규제재검토 조항 신설추이(조문 수 기준)

연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총 계
2009	-	24	20	44
2010	3	2	2	7
2011	2	1	2	5
2012	-	3	1	4
2013	-	228	113	341
2014	3	174	176	353
2015	21	18	72	111
2016	16	9	3	28
2017		5	3	8
총 계	45	464	392	901

2. 규제재검토 주기 설정 현황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는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제의 검토 주기는 다음과 같이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현행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는 재검토주기가 5년을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재검토의 주기를 원칙적으로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6】 재검토주기별 조문개수 및 비율

주 기	개수(조문)	비 율
1년	3	0.29
2년	261	25.76
3년	716	70.69
4년	2	0.2
5년	25	2.47
주기없음	6	0.59
총 계	1,013	100

3. 재검토주기 설정 기준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의 일몰이든 재검토형 일몰이든 간에 일몰제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평가를 통하여 심도 있게 규제나 법령을 심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는 상황에서는 일몰제의 정책적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일몰제의 대상으로 삼는 규제들의 경우 환경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의 재검토 주기는 심도 있는 사후적 심사 혹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재검토를 수행한 결과 규제재검토 도입당시 2년 정도의 짧은 기한을 정했던 재검토

조항들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초에 그 주기를 3년 혹은 5년으로 연장한 사례가 다수 있다. 검토주기를 연장한 대상 규제를 몇 가지 예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고, 이를 검토하면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각각 성격이 다르나 대체로 시설기준이나 자격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처분기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의 주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실제 재검토기한 도래 시 검토할 만한 사정변화가 없거나 사정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기설정을 위하여 주기를 연장하는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17】 재검토주기 연장개정 규제(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고용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시행규칙	제25조의2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직무개시등록신청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연수교육 -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 보수교육의 면제 - 폐업신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자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시행규칙	제16조의2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 법인설립관련 등기 및 정관변경 신청 등
			시행규칙	제34조	- 조합 설립의 통지 등 - 조합의 해산 사유 - 조합 해산의 보고 - 시정기간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비용 지원·용자 관련 보존 서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13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보존서류의 종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체당금의 청구기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용자단체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서면 기재사항 - 계약내용의 확인 및 통지·회신의 방법 -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단의 구성 및 현지조사의 실시 방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시행령	제10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국토 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 건설기술자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도로법	시행규칙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 종류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식 환지 기준 등 -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행위신고 시 제출자료 -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시행령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사무소 설치의 등록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표등의 부착기한 -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 변경계약 체결 대상 임대차계약의 항목 -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 수수료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 판매업의 등록 절차 -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 절차 - 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 - 행정처분의 기준 -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 구매자 정보의 기록 -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 검정대상 농업기계 - 검정 결과의 처리 -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 사후관리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기준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중앙회의 회인가입 거절기준 -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방법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 농업금융채권의 형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절차 - 농지전용허가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 수익자에 의한 유지·보수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방법 - 위해성검사신청 절차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 등록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 비료수입업의 신고 절차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 보증표시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의 기재사항 - 행정처분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 변경신고 절차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의 발급 절차 - 면허대장 등록사항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 임원 선임의 보고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 재산의 증가 보고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설립등기 등의 보고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 해산신고 절차 등 -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 수의사 연수교육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방법의 종류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범위 등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의 내용 및 절차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절차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처분기준 - 발굴의 금지기간 등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 준수사항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시행규칙	제11조	-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 싸움소의 등록 절차 - 싸움소주인의 등록 절차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절차 -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사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20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종자업의 시설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47조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 사후보고 시기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
	초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절차 -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3조	-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준수사항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6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 -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8조	-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청산결과의 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격예시 대상 품목 -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 경매사의 임면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요건 및 절차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금지 -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 대금결제 절차 -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 표준정산서의 내용 - 사용료 및 수수료 등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 검정절차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과 등록사항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의 표시방법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절차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자격 - 수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지원의 중단기준 -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한도 -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 정관기재사항 등
문화 체육 관광부	공연법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	- 과태료 부과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방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3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사업계획 승인 제한 -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 목재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인정의 기준 -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 안전성평가의 기준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32조	-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보고서의 제출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4조	-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 제되는 범위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시행규칙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 협회에 두는 임원의 범위 - 협회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협회의 사업 범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시행규칙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 산림 등에서 불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시행규칙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림청장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 방제사업의 감리기준

부처	법명	형태	조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인접지역의 범위 - 굴취·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장소의 범위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산업 통상 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절차 및 부과기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 수산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기준 적용 제외 -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터업의 허가기준 -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낙시어선의 출항제한 -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의 보험 등 가입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기준 - 출입·검사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 또는 방법
	선박법	시행규칙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의 개측신청 -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 변경허가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천일염인증 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 -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 수수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살처분명령 -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진단서 및 검안서 등 - 처방전 기재사항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요청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4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 보호수역 입역통지 -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휴업·폐업의 신고서 -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항행장애물의 보고 -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부과대상 - 취수과정금의 산정기준 등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영업장 폐쇄조치의 방법 등 - 광고의 제한
	해운법	시행령	제2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행정안전부	저수지·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제한

다음은 2년 주기로 설정하였던 것을 5년 주기로 변경한 사례로서, 환경관련 지구지정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이 3년으로도 재검토가 쉽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개편하는 개정을 하였다. 다만, 아직까지는 재검토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례는 적으며, 대체로 3년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표-18】 재검토주기 연장개정 규제(2년에서 5년으로)

부 처	법 명	형 태	조 문	재검토주기 연장 규제
산림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일 - 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시행규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앞에서와 달리 2016년 말부터 2017년 사이에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3년의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검토 주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 즉,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영된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개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주로 통일부 소관 규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축소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19】 재검토주기 단축개정 규제(3년에서 2년으로)

부처	법명	형태	조문	재검토주기 단축 규제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 반출·반입의 승인 -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취업보호의 제한 - 보호변경의 사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재검토기간 자체도 길어야 하고, 재검토주기도 길어야 한다. 때문에 현재 개별법에서는 평균적으로 재검토 주기를 3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 혹은 재검토의 실효성을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검토주기를 3년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의 경우 규제의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이 지나야 가시화 된다는 점에서 주기를 너무 짧게 하는 경우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⁶⁶⁾ 물론 사안에 따라 일몰주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예컨

66)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661면.

대,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안보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주기, 경제적 측면에서 매해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주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할 필요가 있다.

Ⅲ.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소관부처 분석

1. 재검토 대상 규제 현황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3700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중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의 내용이나 성격은 대체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많은 규제 중에서도 일부의 규제들은 다음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20】 재검토 대상 규제 유형

일반적 재검토 대상 규제	개별법상 특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기준 - 행정처분기준 - 기관, 업체, 지구 등 지정기준(지정요건), 지정절차 - 기관, 업체, 지구 등 지정취소 - 업을 위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자격기준 - 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각종 신고 및 신고절차 - 허가 등의 절차 - 신고, 등록, 허가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기준 등 - 사업 신고(개시, 휴업·폐업), 변경신고 - 사업자의 준수사항 - 행위제한 -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다수의 분야별 특수규제사항 - 예: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풍속 영업의 범위,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등

일반적 재검토 대상 규제	개별법상 특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의 내용, 주기, 횟수 - 수수료의 금액, 범위 -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보고사항 및 보고서 기입사항 - 정관 기재사항, 정관변경 인가, 인가시 첨부서류 - 정보제공의 범위 	

이를 검토해 보면 현행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명시하면서 재검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신고의 경우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이 신고시 절차나 서류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 신고제 자체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검토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의 경우에도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 재검토의 대상이 다르므로 과태료와 같이 과태료의 어떠한 부분을 재검토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방식의 규정은 피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중에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재검토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2. 부처별 재검토 조항 현황

다음 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의 개수와, 법령단위별로 규제재검토 조항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규제재검토제도의 핵심은 개별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라기보다 해당 조항에 포함된 규제의 대상과 그 수를 검토하는 것이 현황조사에서는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는 과거 등록규제수를 관리하던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수를 조사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과거에는 등록규제 수 대비 재검토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규제수를 비교할 수 있겠으나, 2015년 등록제도 개편에 따라 현재는 등록규제수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현재 3700개 이상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 등록규제 수에 대비하여 보더라도 적은 수는 아니다. 부처별로 재검토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령의 개수는 아래와 같으며, 대체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법률에 재검토 근거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표-21】 부처별 재검토 조항 개수

부 처	법률개수	조항개수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합
경찰청	8	1	7	5	13
고용노동부	27	4	20	24	48
공정거래위원회	8	0	8	3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2	22	9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	0	3	0	3
교육부	36	0	30	9	39
국가보훈처	7	0	7	4	11
국민권익위원회	1	0	1	0	1
국방부	2	0	2	0	2
국토교통부	70	6	54	49	109
금융위원회	12	0	11	1	12
기획재정부	13	2	11	4	17
농림축산식품부	41	1	28	36	6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1	0	9	9	18
문화재청	5	1	3	5	9
문화체육관광부	27	4	25	14	43
방송통신위원회	1	0	1	0	1
법무부	8	0	7	4	11
보건복지부	62	0	28	53	8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1	2	4

부 처	법률개수	조항개수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합
산림청	13	2	12	12	26
산업통상자원부	46	4	41	32	77
소방청	7	0	6	3	9
식품의약품안전처	11	0	3	11	14
여성가족부	13	0	13	10	23
외교부	1	0	1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1	0	1
인사혁신처	2	0	2	0	2
조달청	1	0	1	0	1
중소벤처기업부	19	3	16	6	25
통일부	3	0	3	0	3
특허청	6	3	3	3	9
해양경찰청	2	0	1	2	3
해양수산부	45	3	25	37	65
행정안전부	29	4	28	11	43
환경부	41	4	30	35	69
총 계	610	45	464	392	901

3. 재검토 실시주체 현황

다음은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 재검토의 실시주체로 정하고 있는 주체 현황에 관한 표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규제재검토의 주체 역시 대부분 규제 소관부처의 장을 재검토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개의 조항에서는 실시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정부를 검토 실시주체로 정하는 경우 누가 규제를 재검토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재검토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

게 되므로, 실질적인 재검토 실시기관을 정하여 재검토 조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22] 규제재검토 실시주체별 현황

검토주체	검토수
경찰청장	13
고용노동부장관	48
공정거래위원회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1
교육부장관	39
국가보훈처장	11
국민권익위원회	1
국방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108
금융위원회	12
기획재정부장관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18
문화재청장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	2
법무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83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산림청장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7

검토주체	검토수
소방청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5
여성가족부장관	23
외교부장관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인사혁신처장	2
정 부	3
조달청장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5
통일부장관	3
특허청장	9
해양경찰청장	2
해양수산부장관	64
행정안전부장관	23
행정자치부장관	20
해양경찰청장	1
환경부장관	69
합 계	901

IV. 규제재검토항목 및 후속조치 분석

1. 규제재검토 항목

규제재검토 조항에서는 재검토의 주체, 재검토 대상규제, 재검토주기와 함께 재검토시 검토해야 하는 방향성, 즉, 검토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법령에서 도입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몇몇의 법령에서는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아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포함된 검토기준 중 타당성과 적절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수를 비교한 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겠으나, 규제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의 용어는 법적의미에서의 차이를 보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동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23】 재검토대상 항목 비교

재검토대상 항목	개 수
타당성	897
적절성	4
총 계	901

2. 규제재검토 이후 후속조치

다음은 규제의 재검토 이후의 후속조치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표이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강화·완화·유지등의 조치”, “조정 또는 유지조치”, “폐지, 완화, 유지 등의 조치”, “필요한 조치”등 다양한 문구로 사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후조치를 하라는 문구대신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문구상 폐지·완화·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후속조치를 정하고 있다. 만약 규제재검토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각각의 후속조치의 방향성을 정하는 문구에 구속되도록(예: 검토하여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를 하여야 한다 등) 각각의 성격에 부합하게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속조치는 재검토 후 전반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조항들과의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반드시 규제의 재검토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폐지 또는 완화 등만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의미의 개선 등의 조치⁶⁷⁾ 혹은

67) 『행정규제기본법』은 개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규제의 개선과 폐지를 구분하면서 양자를 묶어서

강화·완화·유지·폐지 등의 조치 등의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강화의 개념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의 내용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도 강화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강화도 포함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에 대해 정할 필요도 있다.

【표-24】 재검토 이후 후속조치 의무 비교

재검토대상 항목	개 수
강화·완화·유지 등의 조치	2
개선 등의 조치	877
조정 또는 유지조치	1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	16
필요한 조치	2
없 음	3
총 계	901

한편, 개별법상의 규제재검토 조항에서는 아예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⁶⁸⁾ 이는 규제재검토를 실시하는 것과 이를 개편하는 것을 반드시 연계하여 의무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재검토의 실시목적은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재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는

정비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등의 조치라고 할 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68) 후속조치에 관해 정하지 않고 있는 법령 사례

농업협동조합법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 8 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I. 각 부처에서의 규제재검토 운영방식

1.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 도출방식

「행정규제기본법」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별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규제재검토에 대한 일관된 운영 지침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각 부처에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규제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심사한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규제를 폐지, 개선, 존속하는 심사를 확정하게 된다.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중의 하나로 정리하고 있으며,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규제를 개선하거나 존속하는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계속해서 설정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규제를 개선하든 그대로 유지하든지와 관계없이, 일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25】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검토 방식

	재검토 결과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1단계							
2단계	X	일몰연장	일몰변경	일몰해제	일몰연장	일몰변경	일몰해제

우선 규제가 아닌 경우 규제자체를 폐지할 수 있으며,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규제의 개선방안과 함께 일몰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규제를 존속하는 경우 규제는 존속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과 같이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몰연장으로, 규제의 존속 필요성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몰해제로 하고 있다.

2. 규제재검토의 심사자료 형식 및 기준

부처마다 규제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시 형식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표-26] 규제재검토 검토서 형식(예)

연 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①現일몰 설정형태		검토의견		
					②現 일몰 주기	③규제개선 여부	④일몰유지 여부
1	과태료 부과기준	oo 법률 시행령 제oo조	법령	o년	규제폐지/ 규제존속/ 규제개선	일몰연장/ 일몰변경/ 일몰해제	o년
[규제 내용] ○ [판단 근거] ① 규제존속 여부 ○ ② 일몰연장 여부 ○							

현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서식에 소관부처에서 이를 작성하고 있으나, 그 검토의 내용이 간단하고 규제존속에 대한 판단이나 일몰연장에

대한 판단 내용이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한 문장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절차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약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검토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어느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해당규제의 성격마다 약간 상이하나 대체로 규제가 타당하고 적합한가, 규제의 환경의 변화는 없는가, 규제를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실적이나 문제점과 같은 현황에 비추어볼 때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몰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규제의 수범자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가 등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검토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규제재검토의 검토서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경우 재검토기한이 연장되어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개별규제별로 평가의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상적일지라도 필요한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기관에서 인지하고 재검토해볼 수 있는 지침을 줄 수 있는 재검토 검토서 형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재검토 운영 결과 통계

2013년에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다가,⁶⁹⁾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재검토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다. 재검토형 일몰제의 근거가 2013년에야 비로소 법적으로 마련되면서 규제일몰제의 유형별 통계

69) 2009년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09년 11월 1차적으로 28개 부처 총 2,148건의 경제적규제 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고, 유형별로는 효력상실형 일몰이 14건(2.5%), 재검토형 일몰은 544건(97.5%)으로 재검토형 일몰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1, 2단계 규제일몰 확대를 통해 등록규제 총 6,876건 중 1,602건(23.3%)에 대해 일몰(재검토형 1,522건, 효력상실형 80건)을 설정하였다(규제개혁위원회, 『2010 규제개혁백서』, 2011.3, 596면).

나, 재검토행 일몰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및 이에 대한 통계는 최근 들어 비로소 조사되고 있다. 그 내용은 규제개혁백서에 포함되어 발간되고 있다.

2014년 2013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816건의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존속여부에 대해 결정했는데, 규제폐지 26건, 일몰삭제 223건, 일몰연장 567건으로 일몰삭제와 폐지하는 결정도 상당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재검토행 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관보게재를 통한 고시 형태로 운영되어온 재검토행 일몰규제 총 1,814건의 기한 및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⁷⁰⁾ 2013년 말 당시 등록규제 15,265건의 약 15.2%(2,316건)이 이미 일몰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효력상실형 일몰은 57건, 재검토행 일몰은 2,259건이었다. 이 수치는 2014년 정부가 기존규제 일몰설정 추진을 통해 12월말 기준 2,451건(효력상실형 일몰 13건, 재검토행 일몰 2,438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추가 일몰설정을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일몰 목표인 30%를 넘어 31.2% 수준까지 상승하였다.⁷¹⁾

규제개혁백서에서는 2015년과 2016년도의 재검토행 일몰의 현황과 심사결과에 따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18개 부처의 93건의 재검토행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⁷²⁾ 2016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31개 부처의 4,240건의 재검토행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였고, 그간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고려해 규제 필요성·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합동 일몰규제 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01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39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⁷³⁾

70)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5.4, 117면.

71)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5.4, 118면.

72) 규제개혁위원회, 『2015 규제개혁백서』, 2016.4, 126면.

73)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2017.3, 73면.

아래 표는 2015년과 2016년 재검토행 일몰 심사의 결과이다. 이를 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 도래하는 일몰대상 규제의 수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2013년 재검토행 일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일몰설정을 한 건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 3년 정도로 설정되는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2016년에 도래하는 규제의 수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15년 모두 재검토키한이 도래하였던 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규제존속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검토 일몰의 신설이후 처음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개선 및 폐지의 수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운영이 지속될수록 기존에 재검토를 설정하였던 규제폐지나 개선에 관한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7】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심사결과(2015년~ 2016년)

	총 계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소 계	일몰연장	일몰해제	소 계	일몰연장	일몰해제
2016	4,240	201	1,399	1,194	205	2,640	2,269	331
2015	93	2	17	16	1	74	52	22

출처 : 규제개혁백서(2016, 2015) 재구성⁷⁴⁾

II. 법률상 규제재검토 조항 개폐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폐지 사례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6.27)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재검토키한을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여

74) 규제개혁위원회, 『2015 규제개혁백서』, 2016.4, 126면;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2017.3, 73면.

및 대여 알선 조사, 민간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부과 등은 국민들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의 타당성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자격증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출제·검정 업무 종사자 등은 문제 출제 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면서, 해당 규제는 타 규제와 달리 별도의 타당성 검증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았다.⁷⁵⁾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2015.6.16.)하였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삭제되었다.

2.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사례

(1) 재검토 조항 신설의 필요성 또는 항목이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08.27, 의결일: 2016.05.19.)와 관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지정지구(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후속 입법취지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⁷⁶⁾ 현재 법률에 반영되어 3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10.24, 의결일: 2014.12.29.)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75)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12.

7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 5.

하는 안을 규정하였고, 이 법에서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고, 일몰 기한점을 2015년 7월 1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간 계산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한 바 있다.⁷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4.03.28, 의결일 : 2014.12.09.)과 관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재검토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인허가 사항일지라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호에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및 제5호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허가제 또는 등록제 등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재검토 대상을 “허가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차량충당조건의 경우에도 경제환경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또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같은 취지임에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은 해당사업의 허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와 관련되는 규제행위로서 별도 재검토 항목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적다”고 심사한 바 있다.⁷⁸⁾

7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2.

78)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1.

(2) 재검토조항의 신설필요성은 있으나, 주기설정문제가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12.26, 의결일: 2015.11.12.)에서 우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는 권리행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려는 개정안은 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과 같이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주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배상청구사례가 200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민원이 별도로 제기되고 있지 않고, 관련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기간 규정은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 재검토기한을 필요 이상으로 짧게 설정할 경우 규제심사의 형식화·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⁷⁹⁾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재검토기한 설정이 필요한 규제 발굴시 전부처 일괄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통일한 것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재검토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3) 기준시점이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 2014.12.31, 의결일 : 2015.07.06.)에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및 온천이용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재검토 시점(2015년 1월 1일)은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⁸⁰⁾ 재검토 기준시점을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7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11.

80) 안전행정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6.

(4) 재검토 조항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은 사례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국회는 일정기간(3년) 마다 국가의 지상물 매수권의 타당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지상물 처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하였으나, 도입되지는 않았다.⁸¹⁾

정부가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09.26, 의결일 : 2016.05.29.)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언론의 책임성,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격미달인 자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결격사유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된 바 있다.⁸²⁾ 그러나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기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12.08, 의결일: 2015.12.31.)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⁸³⁾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12.30, 의결일: 2015.12.31.)에 대해서도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 수정, 규제의 재검토 조항 등 기타

81)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8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8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⁸⁴⁾, 「도로교통법」상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년의 규제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조항에 대해, 도로교통법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규제의 효율적 정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⁸⁵⁾, 「공인노무사법」(제27조의2)·「국가기술자격법」(제25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의2) 등에서도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⁸⁶⁾고 보는 등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여부 판단 사례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6.06.29, 의결일: 2016.11.17.)에서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 저수지·공원·안보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의 취지에 따라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민북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의 변화속도가 느린 지역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산지관리종합계획도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고, 생태계의 보고인 민북지역의 산지에 대해서는 그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생태적 산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

84)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85)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6.

86) 안전행정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6.

다⁸⁷⁾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법률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12.19, 의결일: 2016.05.29 (임기만료폐기))에서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제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 i) 국어문화원 지정 등이 규제인지 여부, ii) 국어문화원 지정을 규제라고 볼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국어문화원 지정 등이 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어문화원 지정 등은 규제사무로 볼 수 있으나, 국어문화원 지정 등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인지 여부에 대해 국회는 “국어문화원 지정제도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로 하여금 국어 관련 상담, 국어교실운영, 국어 관련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고, 『국어기본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어문화원에 대해 지정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지정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며,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지정 취소되는 것이 비록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어문화원 지정제도는 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시설이 열악한 기관·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체적인 국어문화원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가가 국어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무라고 보아, 국어문화원 지정 등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⁸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4.03.28, 의결일 : 2014.12.09.)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

8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11.

8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4.

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규제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민간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중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조합·연합회·공제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해당 단체들이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산하의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완화하여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검토 여지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⁸⁹⁾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조합, 연합회 등에 대한 인가제도 역시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03.28, 의결일: 2014.12.09.)에서 도입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국회는 “부가운임의 징수는 부정승차 등에 대한 유일한 제재 수단이자 가장 경미한 제재방식인 바, 징수 자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부가운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바 징수 자체는 당분간 재검토 여지가 없을 것”, 그러면서도 “부정승차의 경우 운임의 30배, 부정 화물 발송의 경우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운임의 상한비율에 대해서는 부정승차의 증감 추이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⁹⁰⁾고 보았다.

III. 규제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 사례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통상적인 주기인 3년이 지나는 시점인 2016년과 2017년은 실제 규제재검토가 실시되고, 이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이 상당수 개정되

89)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1.

90)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2.

었다. 재검토 이후의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개정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제 폐지, 규제존속, 규제개선과 일몰연장, 일몰변경, 일몰해제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규제존속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통하여 정비가 되기보다는 부처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규제정비작업등을 통하여 개정된 사례가 많으며, 규제재검토를 통한 개정은 그 성격상 일몰과 관련된 개정이 다수였다. 크게 2016년 이후 개정된 사항은 일몰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개정과 일몰주기의 적절성에 대한 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몰의 주기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예시한 것처럼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주기를 개정한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재검토 이후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삭제한 사항이 상당 수 되며, 이는 규제재검토의 설정 단계에서 잘못 설정된 것을 다음번 재검토를 통하여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검토 이후 삭제된 규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28】 2016년 개정 이후 재검토 대상 삭제 규제

시행령명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된 규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2항: 수의계약방법의 분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조: 시험의 시행·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입찰보증금 - 제50조: 계약보증금 -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 제74조: 지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24조: 부가금징수에 관한 승인절차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5조: 훈련비의반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6조: 재정검증결과의 통보
납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제3조: 납시제한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3조제1항: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대상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4조: 업무위탁의 대상사업 및 기관 - 제33조: 채권모집에 응하는 방법 - 제35조후단: 채권발행총액의 산정방법 -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시기 -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 제38조: 채권매출발행의 방법 -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사항 -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8조: 흡연경고문구의표시기준 - 제9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기준 - 제10조: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등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신선농·수·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협회의설립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시행령	- 제5조제1항 및 제2항: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11조: 조합의 총회등 -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신청
방송법 시행령	- 제63조의2: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1조의4제1항: 집적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변리사법 시행령	- 제17조의2: 임원의 구성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변경시 제출자료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 제3조: 발기인의주식인수비율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 제2조의3 및 별표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 제17조: 간부직원의자격 - 제38조의2: 조합의 우선출자제한등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9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전기공사법 시행령	- 제6조 및 별표3: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기간 -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 지역 및 용적률의 범위 -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적용지역 및 건폐율의 범위 - 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적용지역 및 높이의 범위 - 제31조의2: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대상지역 및 띄어야 하는 거리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4조제4항: 자료제출 - 제15조: 인턴제도지원신청등 - 제40조: 임시허가의절차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12조: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의 비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시위방법 - 제17조: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제36조제1항 및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37조: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12조: 환경분야 연구기관
시행규칙명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된 규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0조 및 별표12: 수수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제한명령의 방법 - 제37조, 별표7 및 별표8: 검역신청과 검역방법·기간 - 제39조: 지정검역물수입장소의 지정 - 제40조제2항: 지정검역물의 검사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절차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 제2조 및 별지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신청서 -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 제4조 및 별지제3호서식: 경주개최계획서 - 제5조 및 별지제4호서식: 경주장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 - 제11조: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터보트의 검사기준등 - 제13조: 입장료의 징수등 - 제15조 및 별표2: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근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1조제1항: 공공법인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및 별표6제1호다목: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 -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조: 급여의 신청시제출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의9: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 및 재발급시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및 별표3: 전통식품품질인증의 표시등 - 제26조의2 및 별표7의2: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 제28조 및 별표9: 표시변경등의 처분기준 - 제29조: 승계신고절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농산물의 수입추천절차등 -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제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 제30조: 우선판매대상품목 - 제31조: 전자식매매·입찰의 예외사항 -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 제55조: 검사의 통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57조: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절차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9조: 농수산생명자원국외반출의 신청절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조 및 별표3: 품목의 변경등록의 대상 및 절차등 - 제20조 및 별표3: 원제의 등록절차등 - 제21조: 수입농약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절차등 - 제22조의2 및 별표3: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등 - 제31조 및 별표7: 수수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9조: 매립지등일시사용자선정방법 및 일시사용료의 산정기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 제18조의3: 안전장치부착확인신청절차 - 제18조의4: 안전장치부착확인재료등의 요구 - 제18조의5, 별표12 및 별표13: 안전장치부착확인 방법등 - 제18조의6 및 별표14: 안전장치부착확인결과와 처리등 - 제18조의7: 안전장치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확인 절차 - 제18조의8: 안전장치부착확인의 생략 - 제18조의9: 안전장치부착여부등의 조사절차
농지법 시행규칙	- 제14조제2항: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6조 및 별표10: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도서관법 시행규칙	- 제3조: 사서자격증의 발급신청절차 - 제5조: 사서자격증의 재발급신청절차 - 제6조: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절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1항: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설정시고려사항 - 제8조: 도농교류확인서신청·발급절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1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첨부서류의 범위 - 제9조: 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 제12조제1항: 안정성평가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제14조제1항: 지정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제16조제1항: 지정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제17조제1항: 목재제품품질인증의 대상품목 - 제26조제1항: 지정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 제27조제1항: 발급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22조: 전수교육계획서제출등 - 제32조: 공개행사계획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3조: 자격요건증명서류 - 제54조: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사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허가신청절차 -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 제16조: 시험·연구등의 승인신청 - 제18조 및 별표3: 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 제19조: 어획물등을 옮겨오는 행위등의 특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제조업의 등록절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제2항에 따라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허가없이 출입할 수 있는 사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 수수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의4 및 별표6: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 승 강기의완성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또는 수 시검사의 신청시서류제출 - 제24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또는 고장의 범위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및 별표1: 검역병해충의 범위 - 제8조 및 별표2: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 - 제11조: 수입항의 범위 - 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기준등 - 제18조의3: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등 - 제30조: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절차등 - 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승인절차 - 제35조: 수출식물등의 검역신청절차 - 제37조: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절차등 -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열처리기준 및 소독처리마크표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및 제8조: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사항승 인·신고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검사수수료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 해양수산관련단체소유의 선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별표4 및 별표5: 보육관련교과목·학점 및 교육과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대리서명인의 행위 - 제3조의2: 참가서명인의 서명·날인 - 제29조: 가계수표의 발행금액제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등의 신고절차 - 제18조: 검사의 신청절차등 - 제21조 및 별표4: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등 행정처분기준등 - 제24조: 압류절차등 - 제26조제1항: 검사원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절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조건부허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제1항: 내수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제26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 제49조: 외국선박통제의 시행 - 제53조 및 별표14: 외국선박통제 및 기국통제관련수수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의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제출서류 및 연장신청수수료 - 제7조의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현재 규제재검토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개선 또는 폐지되는 규제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행정규제기본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별로 상이한 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시행중이다. 재검토제도가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가제가 가지는 속성인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재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마련한 것은 규제에 대한 관리를 동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의 일환으로 규제의 유지나 폐해 등도 이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은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선정기준, 재검토심사기준, 재검토 실시 절차, 후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개별법령상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규제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술하겠지만 각각의 사항은 법적 근거의 마련이 적합한 것인지, 혹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 다만,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직접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절차법적 방식으로의 규율은 갖춰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분석을 토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시간적 단계별로 규제재검토 설정단계, 규제재검토 실시단계, 규제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I. 재검토 대상규제 선정 및 기준 마련

1. 규제재검토 성격구명 및 일몰 근거와의 분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는 존속기한의 설정에 관한 근거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재검토기한과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규제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효력상실형 일몰의 설정요건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한정되나, 재검토기한 설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되기 위한 요건 판단 시에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와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중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지, 혹은 후자만 만족하는 경우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가 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실익은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의 차이라는 것을 앞서 분석한 바 있다. 만약 전자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규제재검토는 일몰제의 하나의 유형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며,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행 일몰제의 구분에 있어서도 재검토행 일몰설정 대상을 설정하는 요건이 더 엄격해지므로 일몰제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재검토행 일몰이 소수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문건에서 일몰제의 구분에 대해 효력상실형 일몰을 원칙으로, 재검토행 일몰을 예외로 보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검토행 일몰제를 독려하거나 혹은 재검토행 일몰제를 효력상실형 일몰의 대체수단으로 바라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재검토 제도가 일몰제인지 혹은 평가와 유사한 성격의 평가제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며, 특히, 개별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대상으로 삼아지는 규제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각각 상이

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6년 일몰규제의 검토의 방향을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제거, 일차 리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보면,⁹¹⁾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으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일몰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는 재검토를 거치면서 삭제되고 있음은 설명한 바와 같다. 규제재검토를 일몰제의 유형으로 보고 규제재검토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재검토조항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과 같이 일몰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재검토의 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경우 일몰제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대상설정이 불가하다. 다만, 현재 규제의 재검토를 설정하고 있는 많은 조항에서의 대상 규제들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미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성격을 근거로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규제재검토의 대상만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몰제 보다는 넓게, 평가제 보다는 좁게 설정되어 있다. 규제의 재검토는 일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속할 필요가 명백하게 없는 규제영역보다는 주기적인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볼 때 일몰제와의 연계가 오히려 규제합리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재검토기한 설정의 요건에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요건이 규제재검토의

9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민생활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일몰제로 없앤다, 2016.11.2. 참고.

요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는 경우 규제의 재검토의 성격은 일몰제와 분리되므로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 역시 종전의 효력상실형 일몰제, 즉, 존속기한의 설정조항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와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분리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반드시 일몰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규제재검토 제도는 사후평가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조항과 분리하여 재검토기한 설정과 함께 사후평가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	개정안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u>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규제의 <u>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u>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u>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u>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u>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u>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u>존속기한</u>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규제의 <u>존속기한</u>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u>존속기한</u>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u>존속기한</u>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현행 법률	개정안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u>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u>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u>존속기한을</u>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u>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u>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 8 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주기(이하 “재검토주기”라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주기를 정하는 경우 규제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기준시점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제0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내용이 포함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결과서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재검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기타 재검토주기의 연장, 설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p>

현행 법률	개정안
	<p>한다. 이 경우 “<u>존속기한</u>”은 “<u>재검토주기</u>”로 본다.</p> <p>⑦ 그밖에 재검토 실시에 필요한 절차, 재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u>재검토기한</u>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u>재검토기한</u>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u>존속기한</u> 또는 <u>재검토기한</u>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신 설></p>	<p>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u>재검토주기</u>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u>재검토주기</u>를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u>존속기한</u>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u>재검토주기</u> 설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p>

2. 규제재검토 대상범위 선정기준 필요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굉장히 광범위하며, 각각의 규제 간의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규제재검토를 일몰제의 하나로 보든, 평가제의 하나의 형태로 보든 규제재검토의 대상 규제의 범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재검토를 현행 실무와 같이 일몰제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한에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하게 선정하게 되면 효력상실형 일몰제에 대한 법적안정성 차원의 비판을 그대로 받을 여지가 크다. 일몰제의 하나로서 현행의 규제재검토는 그 대상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나,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는 규제목적, 규제방식, 규제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역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두어야 하는 규제의 기준을 한 번에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규제의 재검토 실시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어떠한 규제의 경우가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를 경험적·실증적으로 축적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일몰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재검토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꾸준한 실험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평가조항의 하나로 규제의 재검토를 이해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 일몰 조항의 활용이 법은 일몰시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그 범위설정 정도 한정적인 반면, 평가 조항은 이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확대가 가능하며,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불필요한 경우 이를 재검토의 대상에서 쉽게 제외할 수 있다. 규제재검토 제도는 규제의 효과, 효율성, 또는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규제재검토에 부적합한 영역 결정 필요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규제일몰제를 좀 더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일몰제가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동안 규제재검토 제도는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일몰제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고, 이에 따르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개방된 네거티브기준은 규제일몰제의 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규제일몰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제한된 네거티브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규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나 재난의 저감을 위한 규제,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규제, 법령에 규정되어 장기간에 걸쳐 정당화되고 있는 규제는 일몰제에 부적합하다”⁹²⁾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 더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경우 일몰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명확하게 일몰이 부적합한 영역을 선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규제재검토를 일몰의 한 유형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재검토가 적합하지 않은 영역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일몰제의 형태로 보는 것보다 평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검토의 대상선정에 대해 현실적인 더 많은 반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평가제의 경우 그 대상 선정상의 법리적인 한계라기 보다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환경 혹은 역량상의 한계 문제가 더 크다. 그러므로 평가의 방식으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영역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때 재검토의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영역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적용배제 영역 정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평가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영역부터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규제재검토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규제재검토 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반으로 평가자원 및 평가비용을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영역도 가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II. 규제재검토조항의 근거 형식 정비

1.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과 관련한 쟁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규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나 조례 등에도 규정될 수 있는

92) 박영도, “규제일몰제 정책의 실효적 운용방법”, 『자치발전』2014권5호, 2014, 43-45면.

것이나,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이전의 규제등록방식에 따르던 당시에는 구체적인 규제사무를 등록기준으로 함에 따라 규제의 등록근거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규제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등록이 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규제등록제도의 개정으로 규제의 등록단위가 규제사무단위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재검토의 조항을 두는 근거를 예전과 같이 규제가 구체화되는 개별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에 규제의 재검토의 근거가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재검토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어느 규제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법률단위에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에서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규제의 현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는 행정기관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현행과 같이 하위의 법규명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 법령 전체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음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규제등록의 근거와 규제관리 제도의 하나인 재검토의 근거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한편으로는 재검토행 일물체의 근거형식을 법률에서 직접 두는 경우와 법규명령에 두는 경우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재검토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의 의도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선정되는 것임에 반해, 규제의 재검토의 근거가 법규명령에 있는 경우에는 제정권자인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재검토 대상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의 한 제도를 그 근거 형식에 따라 법적성격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2. 규제재검토 조항 근거형식 및 규율체계 변경

법률이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음에 따라, 규제 역시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재검토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규제

가 구체화 되어 있는 하위법령을 기준으로 규제재검토의 근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등록의 근거가 법률조문을 기준으로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규제재검토의 근거 역시 법률조문에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형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가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에서 위임하면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규제재검토의 근거조항을 작성할 때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는 규제 중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각 개별법률에서는 개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일반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형식은 권한의 위임·위탁의 일반조항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하되, 실질적인 재검토의 대상이 시행규칙에서도 많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조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임위탁의 일반조항과는 달리 하위법령에의 위임 없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더라도 구체화 이전의 규제의 전체적인 틀은 법률에서 확정되므로 법률에서 최대한 정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모델안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분석한 결과 크게 범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규제재검토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범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의 일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체계적인 조문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규정된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의 구체적인 규제재검토 대상과 기준시점, 그리고 주기를 개별규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속조치 강화, 완화, 개선, 폐지 모두를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의 방향성을 폐지나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표-29】 규제의 재검토 조항 입법모델안

법	<p>제00조(규제의 재검토) ① 000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0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00년마다(매 00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00조에 따른 00 : 0000년 0월 0일 2. 제00조에 따른 00 : 0000년 0월 0일 <p>② 000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0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00부령으로 정하는 주기(기준일을 포함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00조에 따른 허가절차(위임규정에 따른 규제) 2. 제00조에 따른 00
↓ 위임방식으로 전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p>제00조(규제의 재검토의 대상 및 주기) 000장관은 법 제0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00년마다(매 00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00조에 따른 허가절차등 : 0000년 00월 00일 2. (생략)

Ⅲ. 재검토 실시 시기 및 주기 명확화

1. 규제재검토의 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쟁점

규제재검토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검토주기를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이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검토주기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의 용이성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효력상실형 일몰방식의 존속기한의 경우에도 실험적인 성격이 크다면 실험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존속기한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검토형의 경우에는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

되어야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검토의 목적이나 해당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개별법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같이 다수의 규제를 재검토 관점에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에서 동일한 재검토주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재검토기한과 관련하여 제8조제2항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때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한을 직접 규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재검토를 해야 하는 주기를 정하도록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재검토기한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은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재검토기한은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한 검토주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이 재검토기한의 주기만을 정하도록 한 것인지, 주기와 더불어 해당주기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정할 것까지를 의도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주기를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해당 주기가 시작되는 기준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지, 혹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 주기설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단위의 규제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규제의 세부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는 재검토의 내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행정규제기본법」과 개별법에 따라 정해진 재검토기한이 되기 이전에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한가와 관련하여 실험입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도 재검토기한과 관련도니 쟁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2. 개별법상 검토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실제 개별법령상의 규제재검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재검토기한과 관련하여 1. 주기와 기준시점을 규정하지 않고 실시시기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기준시점 없이 주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 주기와 기준시점을 정하지 않고 검토시기만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하되, 어느 정도의 주기마다 규제를 검토할 것인지 혹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몇 년마다 검토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표-30】 검토시기만 규정하고 주기를 정하지 않은 사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규제의 재검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에 관한 별표6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2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부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부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검토시기에 맞춰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토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근거가 되는 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법령에서는 검토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자체로도 실효성이 없는 조문⁹³⁾ 필요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93) 기한경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사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시점을 정하지 않고 주기만 정한 경우

재검토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검토주기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정하면서 5년을 기산하는 시점을 정하여 언제까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법령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는 재검토 주기만을 규정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정하는 경우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처음 실시하는 재검토 시기가 과도하게 연장될 수 있으며, 명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의 실시주기가 실제 법령에서 정한 주기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재검토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주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표-31】 기준시점 없이 주기만 정하고 있는 사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법령정비방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을 하나의 조문에서 정하고 있으나, 재검토기한의 의미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검토기한과 관련 하여서는 분조와 함께, 신설조문에서 재검토제도 설정 시 재검토주기 및 기준시점을 정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주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주기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재검토주기를 정하는 경우 규제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기준시점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여 언제부터 재검토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p>제 8 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주기(이하 “재검토주기”라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주기를 정하는 경우 규제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기준시점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제0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내용이 포함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결과서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재검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기타 재검토주기의 연장, 설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재검토주기”로 본다.</p> <p>⑦ 그밖에 재검토 실시에 필요한 절차, 재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I. 규제재검토 실시 기준 마련

1. 규제재검토 실시주체 및 기준정립주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두면서, 해당규제를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타당성 내지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재검토기준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한편,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규제의 재검토 대상 역시도 각 개별법령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재검토의 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소관부처에서 선정된 재검토 대상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한 재검토의 범위 선정의 기준이나 방법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관 행정부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제재검토와 관련한 대상 선정 및 기준 마련 등은 구체적인 규제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규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규제재검토를 집행기관인 소관 행정부처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규제의 존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 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의 주체를 소관부처로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평가 없이 당연하게 규제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는 소관부처의 전문성이나 자료획득의 수월성이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소관부처를 배제하고 완전하게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규제재검토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한 경우 입법부의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재검토를 실시할 때 이하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필요 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규제재검토 기준 마련방식

규제재검토는 실질적으로 실시주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부처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마다 재검토의 방식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은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재검토의 기준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기준은 개별 규제별로 재검토를 위한 방법론과 결부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검토를 거치면서 개별 규제별로 사용한 방법론과 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재검토를 직접 실시한 행정부처에게 재검토기준이나 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론을 제3자가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의 타당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입법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에 관련된 논의에서와 같이 규제적인 것과 급부적인 것의 차이를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⁹⁴⁾ 규제의 목적별 혹은 분야별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을 참고하여 분류기준을 작성하여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평가의 결과와 원인 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 과정에서의 방법론이나 기준이 아니라 재검토의 기반이 된 정보자체가 잘못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재검토기준과 방법론 마련과 더불어, 정보수집 및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후술하겠으나, 규제재검토의 기준과 방법론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여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함은 물론, 규제재검토

94) Anthony Davis Lewis,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33, No. 4, 1981, p.393.

실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정비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조직 설치 근거 부재

현행법령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어떠한 조직을 활용해서 규제재검토를 실시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는 규제의 재검토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7조제3항⁹⁵⁾에서는 자체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대체로 훈령의 형식으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근거를 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 동 근거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심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규제기본

95) 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자체심사를 위한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및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자체규제개혁위원회가 각 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⁹⁶⁾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이나 운영상의 차이는 물론,⁹⁷⁾ 중앙행정기

96) 정부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7면. 정부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11, 12면.

97) 아래 표는 현행 자체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분류한 것이다.

위원회명	기 관
규제개선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규제개혁협의회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산림청
규제완화위원회	교육부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환경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자체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 자체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등 부처마다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상이하다.⁹⁸⁾ 그러므로 개별부처별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의 명칭을 ‘규제완화위원회’라고 하는 경우와 같이, 규제위원회의 운영의 방향성을 규제 완화로 삼는 것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강화까지 포함한 규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명칭은 개정을 요한다.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자체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명칭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의 문구와 통일적으로 개편할 것이 필요하다.

2. 규제재검토 조직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1)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검토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는 법령등은 물론, 조례·규칙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는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설치하고 있다.⁹⁹⁾

98)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99)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사항과 유사하게 위원회 설치·구성은 물론,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표-32】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위원 구성 비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기획재정부	자체규제 심의 위원회	기획재정부 자체규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3.29] [기획 재정부훈령 제295호]	15인 이내	1인	14인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교육부	규제완화 위원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 회 훈령[시행 2013.4.4] [교육부훈령 제2호]	15인 이내	2인	13인	교육 분야의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규제심사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11인 이상 21인 이내		과반수	규제 또는 과학기 술·정보화·방 송·통신·전파· 정보통신산업·정 보보호·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외교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 회 규정[시행 2015.1.30] [외교부훈령 제42호]	8인	2인	6인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
통일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통일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8.31] [통일부훈 령 제551호]	11인 이내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5.12.30] [법무부훈 령 제1036호]	5인 이상 10인 이내		과반수, 특정 성별 10분의 6 불초과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국방부	규제개혁 심사 위원회	규제업무 운영 훈령 [시행 2015.5.27.] [국 방부훈령 제1797호]	6인 이상 15인 이내			개인의 전공·경 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다만, 심의 내용에 따라 추가 로 위원선정이 필 요한 경우 내부위 원장이 지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 위원회	행정안전부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8.20] [행정안전 부훈령 제4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체육 관광부	규제개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10.4] [문 화체육관광부훈령 제 240호]	25인 이상 40인 이내		전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소관 업무에 관하 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림축산 식품부	규제심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규정[시행 2016.6.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4호]	15인 이상 25인 이내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중 사자, 각계 전문 가 등 농축산식품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업통상 자원부	규제개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4.28] [산 업통상자원부훈령 제 68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과반수	산업, 무역, 에너 지·자원 등 산 업통상자원부 소 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보건복지부	규정 없음					
환경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환경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6.15] [환경부훈 령 제1267호]	30인 이상 35인 이내		전체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 부전문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 위원회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 영 규 정 [시 행 2016.10.6] [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9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 동경제·노동법 학·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 에 있는 사람 5. 그밖에 노동관 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여성가족부	규정 없음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규제 개선 심의회 별도)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시행 2013.5.30] [국 토교통부훈령 제237호]	25인 이상 35인 이내		전체	국토교통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해양수산부	규제심사 위원회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4.11] [해양수산부훈령 제1호]	21인 이상 27인 이내		전체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소벤처 기업부	규제심사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7.8.28]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 17호]	9인 이상 15인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위원회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 2010.12.7] [국가보훈처훈령 제952호]	6인 이상 10인 이내	2인	4인 이상 8인 이내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여성위원이 30% 이상
인사혁신처	규제심사 위원회	인사혁신처 법령사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22.] [인사혁신처훈령 제37호]	5인 이상 10인 이내		과반수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와 법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제처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법제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시행 2016.11.9] [법제처훈령 제66호]	5인 이상 7인 이하	2인		행정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4.14]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01호]	7인 이상 (단, 제2조 제3항심의 시5인 이상)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 등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행정규제·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공정거래 위원회	자체규제 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7.1.23] [공 정거래위원회훈령 제 239호]	15인 이상 25인 이내			1. 정부규제업무 관 련 분야 전문가 2. 학계 또는 연구 단체의 경제전문가 3. 소비자단체의 임 직원 4. 그 밖에 공정거 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 운영규정[시행 2008.9.1] [금융위원 회훈령 제7호]	10인 이내			공무원이 아닌 자 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규제심사 위원회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4.6.13] [방송통신위 원회훈령 제169호]	7인 이상 15인 이내		과반수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국민권익 위원회	규정 없음					
원자력안전 위원회	규제심사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규정[시행 2015.8.24] [원자력안전위원회예규 제18호]	8인 이상 11인 이내		과반수	규제 또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규정	20인 이내	1인		1. 국세행정에 대 한 식견이 풍부하 고, 사회적 덕망 이 높은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2. 세정과 밀접한 정부기관·시민단체·학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제행정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4. 기타 국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시행 2017.1.17] [관세청훈령 제1851호]	20인 이내		10인 이상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4.6.9] [조달청훈령 제1662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과반수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5.9.27] [병무청훈령 제620호]	7인 이상 10인 이내			병무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77호]	15인 이내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 비율 등을 고려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소방청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시행 2017.8.31.] [소방청훈령 제1호]				
문화재청	규제개혁 위원회	문화재청 규제개혁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 정[시행 2014.5.21] [문 화재청예규 제135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 가 및 이해관계자
농촌진흥청	규제개혁 위원회	농촌진흥청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규정[시 행 2012.4.30] [농촌 진흥청훈령 제890호]	5인 이상 10인 이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 표하는 자
산림청	규제심사 위원회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 영 규 정 [시 행 2014.1.16] [산림청예규 제621호]	7인 이상 15인 이내			산림청 소관 업무 와 법률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특허청	규제개혁 위원회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7.17] [특허청훈령 제886호]	10인 이상 15인 이내			특허청 소관 업무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상청	규제개혁 협의회	기상청 법무업무운영 규정[시행 2017.8.16] [기상청훈령 제884호]	10인 이내	3인		기상청 업무나 규 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해양경찰청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 리 규 칙 [시 행 2017.8.8.] [해양경찰청 예규 제2호]				
국무 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 총리비서실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4.23] [국 무조정실지침]	10인 이상 15인 이내	5인		국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소 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2) 규제재검토 조직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면 규제의 재검토는 실질적으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의 수를 위원회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의 분야나 수를 고려하면 특별한 분야별 전문성이 없는, 혹은 특정분야에만 전문성이 있는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규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수로 위원 수를 규정하거나, 위원 수의 상한만을 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실질심사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적어도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33】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 규정 비교

위원회 전체위원 구성의 수		기 관
미규정		소방청, 해양경찰청
정수규정	8인	외교부
상한규정	10인 이내	금융위원회, 기상청
	11인 이내	통일부
	15인 이내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찰청
	20인 이내	국세청, 관세청
상하한 규정	5인 이상 7인 이내	법제처
	5인 이상 10인 이내	법무부, 인사혁신처, 농촌진흥청
	6인 이상 10인 이내	국가보훈처
	6인 이상 15인 이내	국방부
	7인 이상 10인 이내	병무청

위원회 전체위원 구성의 수	기 관
7인 이상 15인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8인 이상 11인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
9인 이상 15인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10인 이상 15인 이내	특허청, 국무조정실
10인 이상 20인 이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문화재청
11인 이상 21인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인 이상 25인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21인 이상 27인 이내	해양수산부
25인 이상 35인 이내	국토교통부
25인 이상 40인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30인 이상 35인 이내	환경부
하한규정 7인 이상(예외 5인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 수 중 민간위원의 수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정하거나 아예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 전체의 과반수이상, 혹은 특정인원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하나, 아예 민간위원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 규제심사의 경우 규제집행기관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 정하여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34】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규정 비교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기 관
전 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특정인원	6인	외교부
	13인	교육부
	14인	기획재정부
하한 규정	10인 이상	관세청
상하한 규정	6인 이상 10인 이내	국가보훈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격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재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간위원의 자격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간위원의 자격의 하나로서 해당분야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사유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표-35】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비교

민간위원자격	기 관
추상적으로 학식, 경험, 지식이 풍부 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경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국무조정실

민간위원자격	기 관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소속기관 등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한 경우	<p>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각계전문가), 고용노동부(전국규모의 단체가 추천하는 자, 변호사등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 분야 부교수이상 직 등), 중소벤처기업부(학계, 업계, 유관단체 종사자), 국제청(정부기관,시민단체학회 등 전문가)</p> <p>국방부(법률,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등) 국가보훈처(법률, 행정학 전공자, 기업체 대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협회, 학계, 전문가 등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정부규제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학계 또는 연구단체 경제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직원, 공정거래분야 규제 전문가) 문화재청(행정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농촌진흥청(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p>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수

3. 규제재검토 실시조직 근거 법령정비방안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1안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하나의 조문에 신설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두는 방식이다. 제2안의 경우 현재 자체심사에 관한 근거를 두는 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우회적으로 두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모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개별 부처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2안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의 근거는 두되,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체계적으로는 현재의 체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개정이 쉬운 반면, 제1안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관리제도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직접 확보한다는 데에 장점을 가진다.

(1) 제1안

현행 법률	개정안
<p><u><신 설></u></p>	<p>제00조(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소속으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이하 “자체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자체심사·기존규제의 정비 그 밖에 당해 기관의 규제개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p> <p>③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④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법률	개정안
<p>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p> <p>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p> <p><u><신 설></u></p> <p>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p> <p>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u>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u>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p> <p>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p> <p>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p> <p>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p> <p>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u>제0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u>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2) 제2안

현행 법률	개정안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p>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p>

현행 법률	개정안
<p>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u>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u>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p>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u>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u>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 <u>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Ⅲ. 규제재검토 실시 절차 정비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절차 규정 보완의 의의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재검토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실무상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재검토는 그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부터 실제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재검토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재검토의 기준이나 방법론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제도가 도입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재검토 절차를 구분하면 크게 평가를 위한 준비절차, 평가절차, 의결절차, 이후 후속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에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폐지·개선·유지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에서는 평가를 심사하는 규제심사위원회가 평가주체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평가주체는 규제심사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주체는 규제의 폐지·개선·유지에 관한 방향을 결정하고, 법령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평가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평가를 위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미설정시 사유 제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신설이나 강화와 관련,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미설정의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

한 이유로 규제심사 요청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¹⁰⁰⁾ 당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별히 개정 없이도 개정안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¹⁰¹⁾ 그러나 규제일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를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 이러한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심사요청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 및 강화 심사의 신청과 관련된 제10조에서 미설정 사유를 두게 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단계와 자체심사를 거치는 단계에서는 재검토주기 미설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아래 개정안 대비표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100) 의안번호 1800349, 김종률의원등 19인 발의(2008.07.21.).

현행 법률	개정안
<p>제10조(심사요청)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요지 <p><신설></p>	<p>제10조(심사요청) ① (생략) 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u></p>

101) 한편, 국무총리실의 업무지침에 있는 내용인 규제 존속기한 미 설정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정주의를 강화하고 규제일물제의 실효성과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심사의견이 있었다(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12. 5-7면).

현행 법률	개정안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 ④ (생략)</p>	<p>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p>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p>② ~ ④ (현행과 같음)</p>

3.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연장절차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면,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의 조문인 동법 제8조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규제존속기한 등의 연장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청을 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행정부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고려하여 국회에는 3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제정되어 있다.¹⁰²⁾

[시행 1998.3.1.] [법률 제5368호, 1997.8.22., 제정]	[시행 2006.6.30.] [법률 제7797호, 2005.12.29., 일부개정]	[시행 2013.8.17.] [법률 제11935호, 2013.7.16., 일부개정]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 ② (생략)</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 ② (생략)</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 ② (생략)</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102)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12, 5-7면.

이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연장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국회에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국회에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3항과 제5항의 절차를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 문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I. 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1.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의 유형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근거만 가지고 있고, 재검토를 실시하는 절차, 즉, 실시주체가 어떤 조직을 활용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규제재검토를 실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유지 및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각기 다른 방식의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상이한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후속조치의 문구의 차이가 규제재검토 제도의 성격에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재검토기한에 관해 “점검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규제재검토가 반드시 점검 후 폐지나 완화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이해하는 문헌이나 문구들이 보인다.¹⁰³⁾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혹은 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103) 「행정규제기본법」은 그 체계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기존규제를 정비(폐지 또는 개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장별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심사의 대상으로 함께 규정하기 위해 제2장에 두고 있다. 제3장에서의

시행 이후 특정 날짜까지 평가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평가이후의 방향을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자체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이해되어지기도 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후속

기존규제의 정비의 범위를 폐지 또는 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경우는 제2장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제3장에서의 기존규제정비의 범위를 완화로 이해하기 쉽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이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방향을 완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율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체계 및 문구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장제목	조제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규제 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제9조(의견 수렴)
	제10조(심사 요청)
	제11조(예비심사)
	제12조(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제14조(개선 권고)
	제15조(재심사)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 제출)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조직 정비 등)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 제33조(조직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제36조(행정지원 등)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조치를 법령에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규제기본법」 전반에 걸쳐서는 물론이고, 당장에 규제재검토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완화는 물론, 강화를 포함하여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재검토 결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계 마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정비에 따른 영향분석의 실시나 영향분석서의 작성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규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규제 폐지 및 개선의 필요성 및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¹⁰⁴⁾ 규제재검토 제도의 경우 규제를 신설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규제를 강화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을 모든 규제가 아니라 특별하게 선정된 규제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여 재검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정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영향분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들은 실험입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재검토시에 실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해당 규제를 강화·완화·유지·폐지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와 영향분석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 효과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가

104) 동일한 취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대표발의, 2010.12.24.)」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당시 정부는 행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의견을 제시함).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면 될 것이나, 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완화·유지·폐지인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제의 신설·강화 시에 실시하게 되는 규제영향분석 자체는 물론이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규제재검토 실시와 재검토결과에 따른 영향분석 역시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규제재검토 제도와 영향분석제도를 연계하게 되는 경우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인하여 당장 필요한 규제의 정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 후 규제재검토 실시와 그 이후의 영향분석 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개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II.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현재 개별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은 개별규제에 대하여 재검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별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제도가 개별 부처에서의 재검토로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규제재검토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나가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제에 대한 재검토는 개별 부처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판단문제,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성격별 재검토기준 작성과 방법론 적용문제, 재검토를 위한 현실에서의 정보의 불확실성 및 오차문제 등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이기 때문에 규제의 재검토가 목적인 바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부처에서 실시한 규제에 재검토 실시방법 및 결과를 종합하고 실질적인 규제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토 이후에, 단순하게 재검토결과의 수치화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

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재검토와는 구분되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는 재검토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 재검토는 규제관리 담당기관인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실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여 얼마나 기존규제를 폐지했는지, 완화했는지, 기존규제를 그대로 유지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재검토에 대한 결과를 매년 규제개혁백서에 언급하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별로 효과적인 재검토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규제 혹은 실험적 입법의 성공을 위해서 사후평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재검토의 운영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평가가 결부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인 제8조는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이지,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 내지 평가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의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이미 규제 개선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개정안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u>규제제도의</u>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u>규제제도 및 규제재검토 제도의</u> 운영 실태

현행 법률	개정안
<p>인·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u>여론조사</u>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p>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u>제도·기반연구 및 여론조사</u>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Ⅲ. 재검토 관련자료 공개 및 결과 보존 의무화

1. 재검토결과서 작성 근거 마련

「행정규제기본법」이나 개별법상의 규제의 재검토 관련 근거에서는 규제재검토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작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재검토 제도는 해당 규제에 대한 실험입법적 성격은 물론이고, 해당 규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자료 작성은 다음 번 이루어지는 재검토 실행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검토 주기에 따른 과거 검토사항이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환경, 동일한 규제수준등 재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에 따라 재검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규제재검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재검토를 실시한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재검토 결과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근거 필요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재검토 실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나, 규제의 재검토는 지속적으로 재검토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검토 시에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재검토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물론,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향후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검토 실시주체에게 한번 재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자료를 다음 재검토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재검토 실시단계에서도 과거의 재검토 사항을 연혁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동일한 환경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함은 물론, 과거의 검토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의 재검토시 기존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결과자료 공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재검토 제도가 일몰제의 형태이든 평가제의 형태이든 간에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규제의 합리성 도모를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잉적인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특히나, 우리의 경우 규제 재검토를 외견상으로는 일몰제의 형태 혹은 실험조항의 형태에 가깝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위해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에게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¹⁰⁵⁾ OECD 보고서에서도 연간 실시해야 하는 규제 사후평가 일정을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된 바 있으므로,¹⁰⁶⁾ 재검토 대상 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비의 일환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적절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했던 규제가 어떻게 재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우나 재검토 실시주체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재검토 대상이 된 규제의 검토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의 결과에 대해 규제의 수범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규제재검토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검토결과서의 작성·보존의무, 공개, 그리고 사후활용에 관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방안은 다음 개정 대비표와 같다.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 8 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주기(이하 “재검토주기”라 한다)마다 그 타당

105) 유럽의회의 내부(in-house) 리서치 서비스 제공 및 씽크탱크(think tank)의 기능을 하는 기구인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에서는 EU의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유럽의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의 하나로 검토조항이 포함된 법률들을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Ivana Kienzl Krišto, Stephan Huber, Review Clauses in EU Legislation - A Rolling Check-Lis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7.2

106) OECD,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2017, 42면(<http://dx.doi.org/10.1787/9789264275874-ko>).

현행 법률	개정안
	<p>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주기를 정하는 경우 규제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기준시점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제0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내용이 포함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결과서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재검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기타 재검토주기의 연장, 설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재검토주기”로 본다.</p> <p>⑦ 그밖에 재검토 실시에 필요한 절차, 재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현실에서의 법은 사라져야 할 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할 수 있을 때 폐지된다¹⁰⁷⁾는 말은 일몰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규제를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 그대로 두는 경우 계속 존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의무를 부과하여 폐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일몰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조항이 입법에 대한 감독 혹은 규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나, 일몰제는 입법에 대한 항구성,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반대로 인해 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일몰방식인 효력상실형 일몰의 경우에는 일부영역에만 적용되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규제재검토 제도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일몰방식을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또 다른 제도적 모색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백서를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향한 규제품질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존규제에의 일몰설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를 설정하여 일몰 설정을 추진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¹⁰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7) Sofia Ranchordas, 『Constitutio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p3.

108)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5.4, 118면.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제대로 된 평가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일몰제가 자칫 실적 위주로 부실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재검토의 대상도 한정적으로 선정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들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과거 규제등록제도가 규제개혁의 실적과 긴밀하게 연계되다가 의미 없는 실적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하고자 개편된 것처럼 현재와 같이 규제일몰제가 운영되는 경우라면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몰 도래 1~2년 전에 국무조정실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규제들을 선별하고, 해당 규제들에 대해 심층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¹⁰⁹⁾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은 아직까지 규제재검토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시행 초기단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형식적 근거만이 담은 아니겠으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재검토는 규제를 일정주기별로 재검토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목적이며,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반드시 일몰제의 형태가 아니라 평가 혹은 재검토라고 부를 수 있는 사후평가의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들을 보면 일몰제로 보기에는 과잉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평가제로 보기에는 협소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규제의 법적 근거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재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배제되기도 하는 등 재검토 대상 확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재검토제도가 운영되면서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가 삭제되기도 추가되기도 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방식이라면 재검토의 대상 규제는 확대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일몰제의 무제한적인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제도로의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법제적 기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 특히, 폐지에 대한 위협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던 일몰제의 방식보다는 평가제의 방식이 수범자나 집행기관의 저항

109) 규제개혁위원회, 『2015 규제개혁백서』, 2016, 17-18면.

도가 낮음은 물론이고, 재검토의 목적을 과도한 규제완화나 폐지로 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규제재검토 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평가제로 보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토 대상의 자연스러운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법 혹은 규제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실험입법의 방식은 기본적인 방향성이 폐지가 아니라 정보수집과 반복을 통한 규제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규제재검토 제도를 새로운 기술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규제환경에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평가제도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일반문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 규제개혁위원회, 『2009 규제개혁백서』, 2010.3
- 규제개혁위원회, 『2010 규제개혁백서』, 2011.3
-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4.3
-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5.4
- 규제개혁위원회, 『2015 규제개혁백서』, 2016
- 규제개혁위원회, 『2015 규제개혁백서』, 2016.4
-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2017.3
- 박영도, “규제일몰제 정책의 실효적 운용방법”, 『자치발전』2014권5호, 2014
-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1
-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이주선·정현용,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이혜영 · 김주찬,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규제연구』 제24권제 1호, 2015.6
-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 하혜수 외,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8
- OECD, 한국 규제정책-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2017(<http://dx.doi.org/10.1787/9789264275874-ko>)
- Freytag, A. and Winkler, K., “The Economics of Self-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under Sunset Legislatio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Chair of Economic Policy II,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004.7
- Ivana Kiendl Krišto, Stephan Huber, Review Clauses in EU Legislation - A Rolling Check-Lis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7.2
- Jacob E. G., “Temporary Legislati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4 : Iss. 1 , Article 12, 2007
- Kearney, R. C., Sunset :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 1990
- Lewis A. D.,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33, No. 4, 1981
- Ranchordas, S., 『Constitutionnal Sunsets and Experimental Legislation』, Edward Elgar, 2014

- Tverberg, A., 『The Use of Sunset and Evaluation Clauses in the Norwegian Legal System』,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10.31
- Uhlmann, F., «Sunset Legislation» und Experimentierklauseln. Weiterbildungsveranstaltung für die Kantonsverwaltung des Kantons Zürich, Zürich, 2017.5.31. (<https://www.rwi.uzh.ch/de/oe/ZfR/forschung/vortraege.html>)
- Zamboni, M 『Sunset Clauses in Swedish Legislation: An Overview』,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10.31

<보도자료 및 국회자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민생활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일몰제로 없앤다, 2016.11.2
-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11
-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12
-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11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1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6

안전행정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6

안전행정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6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12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12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11

정책브리핑, 과거 · 현재 등록규제 수 단순비교 부적절, 2017.5.30. (<http://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36885>)

행정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7.7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12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사이트>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www.law.go.kr)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better.go.kr/fz/stats/RefRgst.jsp>)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pmo.go.kr/pmo/online/online02_01.jsp)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부 록

- [부록 1] 개별법령상 규제외 재검토 조항 현황
(2017.3. 기준)
- [부록 2]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8년)
- [부록 3]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9년)
- [부록 4]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0년)
- [부록 5]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1년 이후)

[부록 1] 개별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 현황(2017.3. 기준)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경찰청	경비업법	제31조의3	2014.6.3.	2014.6.8	3년마다	2020.6.7	
		제27조의2	2014.1.8.	2014.6.8	3년마다	2020.6.7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2015.8.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87조의4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141조의2	2010.7.9.	2014.1.1	3년마다	2019.12.31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9조의2	2014.1.8.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3조	2014.1.8.	2014.1.1	3년마다	2019.12.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7.1	2014.7.1	3년마다	2020.6.30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8.	2014.1.1	3년마다	2019.12.31	
항공·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2016.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8.	2014.1.1	3년마다	2019.12.31	
고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016.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2014.12.3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0	2014.9.24	2017.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8조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3조의3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공인노무사법	법	제27조의2	2010.5.25.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7조		2014.12.31.	2010.12.31	5년마다	2020.12.3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7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6조의2		2017.1.1	3년마다	2019.12.31	
	근로복지기본법	법	제80조의2	2015.7.20.	2016.1.1	2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66조의3		2017.1.1	3년마다	2019.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조	2014.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법	제62조의2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2조의3	2014.12.9.	2016.1.1	2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2조의3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 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0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1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4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2014.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법	제36조의2	2016.1.28.	2017.1.1	5년마다	2021.12.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9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7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47조의4	2013.12.30.	2019.1.1	3년마다	2021.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27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80조	제문신설시기	기존시기				
공정거래 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80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31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2013.12.30.	2014.1.1	5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5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임금채권보강법	시행규칙	제17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82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7조의5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취직임금법	제7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1조	2014.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1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2013.12.30.	2014.1.1	5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36조의3	2013.12.30.	2014.2.14	3년마다	2019.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독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8	2009.7.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6조	2013.12.31.	2014.2.14	3년마다	2020.2.13	
		시행령	제18조의3	2013.12.30.	2017.1.1	2년마다	2018.12.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2014.12.31.	2015.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0조	2014.12.31.	2014.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4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4.1.1	5년마다	2018.12.3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4.2.14	3년마다	2020.2.13	
		시행규칙	제17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1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5조	2014.11.28.	2015.1.1	3년마다	2020.12.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6조의3	2014.11.28.	2014.11.29	3년마다	2020.11.28	
시행규칙		제15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기술사법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0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0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규칙	제22조	2014.6.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방송법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2조	2014.6.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	2014.6.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0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0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0조	조문신설시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9조의2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10조의2	2014.12.3.	2015.1.1	3년마다	2020.12.3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법	제38조	2015.6.22.	2015.12.22	3년마다	2018.12.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0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2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1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2014.12.3.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9조	2015.12.1.	2016.1.1	2년마다	2019.12.31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3조의3	2014.11.11.	2015.1.1	3년마다	2020.12.31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45조	2014.1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65조의3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18.12.3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4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의4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4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시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전자서명법	제4조의4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전자법	제15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123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6.1.5.	2016.1.1	3년마다 2018.12.31
		제43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7조의2	2009.7.7.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24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	2009.8.18	기준시기없음	주기없음 2012.12.31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의3	2013.12.30.	2014.1.1
	방송법	제68조의2	시행령	2013.12.30.	2014.1.1
2015.1.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2014.9.24	2015.1.1	1년마다 2018.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령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조문신설시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2014.12.9.	2017.1.1 2018.12.3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20조	2013.12.30.	2014.1.1 2019.12.3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1조	2014.2.18.	2014.3.1 2018.2.29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24조	2013.12.30.	2014.1.1 2019.12.3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2014.12.9.	2017.1.1 2019.12.3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017.2.3.	2018.1.1 2020.12.3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3조	2013.12.30.	2017.1.1 2019.12.31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시행규칙	제9조	2014.12.31.	2015.1.1 2018.12.31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6조	2014.12.9.	2017.1.1 2019.12.3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3조	2013.12.30.	2014.1.1 2019.12.31
	대학교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2015.9.25.	2016.1.1 2018.12.31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13조	2013.12.30.	2016.1.1 2018.12.3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	2015.12.31.	2016.1.1 2019.12.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014.12.9.	2016.1.1 2018.12.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99조	2014.12.9.	2015.1.1 2018.12.3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3	2013.12.30.	2017.1.1 2019.12.3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13조	2015.12.31.	2016.1.1 2018.12.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2013.12.30.	2017.1.1 2019.12.31
					2016.1.1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6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9.12.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	2015.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34조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2014.3.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7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06조의3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7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6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0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3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1조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국가보훈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2조	2014.12.31.	2015.1.1	2018.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4.12.9.	2015.1.1	2018.12.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013.12.30.	2014.1.1	2019.12.31
		제4조	2015.12.31.	2015.1.1	2018.12.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015.12.31.	2016.1.1	2018.12.31
		제60조의3	2013.12.30.	2017.1.1	2019.12.3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2014.3.18.	2014.1.1	2019.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2013.12.30.	2017.1.1	2019.1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2조의3	2013.12.30.	2014.1.1	2019.12.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4.11.19.	2017.1.1	2019.12.31
국민권익위원회	채대근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2014.12.9.	2017.1.1	2019.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2013.12.30.	2014.1.1	2019.12.31
		제20조	2014.12.9.	2015.1.1	2018.12.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4.3.18.	2017.1.1	2019.12.31
		제66조의3	2013.12.30.	2017.1.1	2019.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受的 금지에 관한 법률	제38조	2014.3.18.	2014.1.1	2019.12.3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受的 금지에 관한 법률	제45조	2016.9.8	기준시점없음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구분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국방부	국방정보회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지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2014.1.1	3년마다	2019.12.3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본조신설 2016.8.3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7조	2014.12.31.	3년마다	2019.12.3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4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5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0조	2014.12.9.	2년마다	2018.12.31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39조의3	2016.1.19.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97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	2010.12.13.	3년마다	2019.12.31
				제64조	2014.5.22.	3년마다	2019.5.22
시행규칙			제87조의3	2009.7.7	3년마다	2019.12.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20.12.31	
			제24조	2009.6.24	3년마다	2019.12.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2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제9조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	2009.7.7.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44조	2013.12.30.	2016.5.19	1년마다	2018.5.18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0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19조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118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99조	2016.8.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공항시설법	법	제63조	2016.3.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6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문신설시기	기존시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51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6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0조	2015.3.5.	2017.1.1	3년마다	2019.12.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2015.12.15.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48조의3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법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04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로법	시행규칙	제54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72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3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85조의6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5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0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9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9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7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4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6조	조문신설시기	시행시기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5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8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사도법	시행규칙	제10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7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새민감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0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9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8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89조의2	2015.1.6.	2014.1.1	3년마다	2019.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08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9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자동차관리법	법	제77조의3	2011.5.24.	2008.12.31	4년마다	2020.12.30
		시행규칙	제157조의2	2009.6.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자동차등록규칙	시행규칙	제51조	2014.3.25.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5조의5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6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2014.6.25			3년마다	2020.6.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3조	2013.12.30.	2014.12.25	3년마다	2020.12.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제96조	2017.6.2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0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지능형건축물의 인중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4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43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6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48조의2	2015.1.6.	2014.1.1	3년마다	2019.12.31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2				
금융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3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6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8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의2	2014.12.9.	2015.8.1	3년마다	2018.7.31	
		시행규칙	제43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0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017.3.29	2017.3.30	2년마다	2019.3.29	
		시행규칙	제72조	2017.3.29	2017.3.30	2년마다	2019.3.2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65조의2	2015.1.6.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5조의3	2013.12.30.	2014.11.29	3년마다	2020.11.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3조	2016.7.28	2016.8.1	3년마다	2019.7.31	
		시행령	제11조의5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1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조	2015.4.3.	2015.3.1	2년마다	2019.2.29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의3	시행령	조문신설시기			
기획재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은행법	제30조	시행령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이중상환정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의2	시행령	2012.6.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시행령	2013.11.22.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1년마다	2018.12.31
	관세법	제290조	시행령	2013.11.5.	2013.10.31	3년마다	2019.10.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관세사법	제37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09.6.16					3년마다	2019.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7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담배사업법	제12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시행규칙	2009.7.1.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24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농림축산 식품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21조	2015.12.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13.12.27.	2014.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10조	2016.12.27.	2017.1.1	3년마다	2019.12.3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013.12.17.	2013.12.19	2년마다	2019.12.18
		시행령	제13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9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0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4조	2014.7.21.	2015.1.1	3년마다	2020.12.31
	한국의은행법	시행령	제15조	2014.12.26.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014.12.26.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2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5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9조의2	2014.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간척지의 농어업적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7조의2	2014.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7조	2015.1.6.	2015.1.1	2년마다	2018.12.3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신설시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2015.1.1	2020.12.3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15.1.6	2019.12.3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4.12.9	2017.1.1	2019.12.31
		시행규칙	제32조	2013.12.31	2017.1.1	2019.12.31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2013.12.31	2017.1.1	2019.12.31
	농업협동조합법	법	제169조의2	2014.12.31	2015.1.1	2020.12.31
		시행령	제51조의3	2013.12.30	2017.1.1	2019.12.31
		시행규칙	제12조	2015.2.27	2015.1.1	2020.12.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2014.9.11	2015.1.1	2020.12.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2015.1.6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77조	2009.7.7	2017.1.1	2019.12.3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2015.1.6	2017.1.1	2020.12.31
		시행령	제8조의2	2014.12.30	2017.1.1	2019.12.31
		시행규칙	제11조	2015.1.6	2017.1.1	2019.12.3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2014.12.30	2015.1.1	2018.12.31
		시행규칙	제49조	2015.1.6	2015.1.1	2018.12.31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3	2013.12.30	2014.1.1	2019.12.31	
	시행규칙	제16조	2013.12.31	2015.1.1	2018.12.31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2015.1.6	2017.1.1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수의사법	시행령	제22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9조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0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쌀기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3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2조	2014.11.12.	2017.1.1	3년마다	2019.12.31	
	진통소염제제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5조의2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0조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7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016.1.19.	2016.1.21	2년마다	2018.1.20	
		시행령	제17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초지법	시행령	제17조	2014.1.1	2014.1.1	5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건			전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7조	제3조의3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조의3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2016.1.6.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축산저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6.1.1	2년마다	2019.12.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5.1.6.	2015.1.1	2년마다	2018.12.3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3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수산저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3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어촌생태비법	시행령	제14조의2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림수산물유통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2014.10.15.				
문화재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규칙	제62조	2016.1.1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2014.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25조의3	2016.5.29.	2016.1.1.	3년마다	2019.12.31	
					2014.1.1.	3년마다	2018.12.31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2014.12.30.	3년마다	2020.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문항	시행규칙	조문	신설시기			
문화체육 관광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2016.3.25.	3년마다	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	2013.12.30.	5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63조	2013.12.31.	3년마다	2020.12.3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규칙	제29조	2014.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13.3.18.	2017.1.1	3년마다
	시행규칙		제31조	2013.12.31.	2016.3.15	2년마다	2018.3.14
					2016.3.15	2년마다	2018.3.14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8조의2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공연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2년마다	2019.12.3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8.12.31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3	2009.7.7.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마다	2019.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73조	2009.10.22.	기존시기없음	주기없음	2018.12.31	
				기존시기없음	주기없음	2018.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8.4	3년마다	2018.8.3	
	법	제46조의2	2014.12.23.	2016.1.1	2년마다	2019.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44조의2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5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7.1	3년마다	2018.6.30	
	시행령	제21조	2014.12.23.	2015.7.1	3년마다	2019.12.31	
제1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46조의2	2016.2.3.	2016.1.1	2년마다	2019.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1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2.9.	3년마다	2019.12.31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6조의5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014.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09.7.7.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7조	2009.7.7.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	전문신설시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6조	2012.11.23.	2014.1.1	3년마다	2019.12.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법	제38조의3	2016.2.3.	2016.1.1	2년마다	2019.12.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8조의2	2015.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3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조의4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7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0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3	2014.11.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1조	2015.12.30.	2016.1.1	2년마다	2019.12.31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31조	조문신설시기	조문신설시기			
방송통신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	제27조의2	2013.12.31.	3년마다	2020.12.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2014.5.2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9조	2016.1.22.	2016.1.1.	3년마다	2018.12.3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인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015.1.5.	2016.1.1.	2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6조	2013.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2014.3.24.	2014.1.1.	3년마다	2020.3.31
법무부	구직법	시행규칙	제19조	2015.1.15.	2년마다	2018.12.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6조	2015.1.15.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11조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9조	2015.1.15.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번호사법	시행령	제28조	2013.12.30.	2014.1.1.	5년마다	2018.12.31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의2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84조의2	2009.6.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8조	2013.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2015.1.5.	2015.1.1.	2018.12.31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5조	2014.12.9.	2015.1.1.	2018.12.31
		시행규칙	제10조	2015.1.5.	2015.1.1.	2018.12.3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결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조	2015.1.5.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14조의2	2013.12.30.	2014.1.1.	2019.12.31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2015.1.5.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10조의4	2013.12.30.	2014.1.1.	2019.12.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2013.12.31.	2016.1.1.	2018.12.31
		시행령	제18조	2015.1.5.	2015.1.1.	2018.12.3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2015.1.5.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15조	2014.9.1.	2015.1.1.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81조의2	2014.6.30.	2014.7.1.	2020.6.30
		시행령	제66조	2013.12.31.	2014.7.2.	2019.7.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2014.12.9.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23조	2013.12.31.	2014.1.1.	2019.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3조	2015.1.5.	2015.1.1.	2018.12.31
		시행령	제59조	2013.12.31.	2014.1.1.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구분	법령명	조문	제정/개정/폐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9조	2015.1.5. 2014.6.30.	2년마다	2018.12.31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6조의2	2017.1.1. 2015.1.5.	2년마다	2018.12.3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2015.1.6.	3년마다	2020.6.30	
		시행규칙	제36조의2	2009.7.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8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2010.2.24	3년마다	2019.12.3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44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1조	2010.2.24	3년마다	2019.12.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행규칙	제45조	2015.1.5.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5조의3	2015.1.5. 2013.12.30.	2년마다	2018.12.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015.1.5.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7조	2015.1.1. 2014.7.1.	3년마다	2020.12.3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7조	2015.1.1.	3년마다	2019.6.30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조문 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4.7.1	3년마다	2020.6.30	
	제24조의2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59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2013.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9조	2014.7.24.	3년마다	2020.6.3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7조의4	2015.1.5.	2년마다	2018.12.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10조	2014.7.28.	3년마다	2020.7.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	2014.9.26.	3년마다	2020.9.28	
	제30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아동복지법		2015.1.1	2년마다	2018.12.31	
인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2015.1.5.	2년마다	2018.12.31	
	제20조	2014.10.15.	3년마다	2020.6.30	
암관리법	제38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약사법	제26조의4	2013.12.30.	3년마다	2020.12.31	
	제42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013.12.31.	3년마다	2019.12.31	
	제47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의료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상특례법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규칙	제6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21조의2	2015.1.5	2년마다	2018.12.3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6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규칙	제12조	2015.1.5	2년마다	2018.12.31		
			제12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규칙	제12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26조	2015.1.5	2년마다	2018.12.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2013.12.31	2년마다	2018.12.31		
			제79조의2	2013.12.30	2년마다	2018.12.31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2012.4.6	주기없음	2019.4.8		
			제9조	2015.1.5	2년마다	2018.12.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2013.12.31	2년마다	2019.12.31		
			제29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2013.12.31	2년마다	2018.12.31		
			제31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입상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	2013.12.30	2년마다	2018.12.31		
			제31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2013.12.31	2년마다	2018.12.31		
			제31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제40조의3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제26조	2015.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3조	2015.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45조의3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67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9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8조	2015.1.1.	2년마다 2020.6.30
		시행규칙	제8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4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20조	2015.1.1.	3년마다 2020.6.30
		시행령	제40조	2015.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3조	2015.7.1.	3년마다 2018.6.30
		시행규칙	제10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4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9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0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9조의2	2015.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9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6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1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1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	2015.1.28.	2015.1.1	3년마다	2020.12.31
		법		제92조의3	제17조	2015.3.13.	2016.1.1	3년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	2013.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법		제16조	제60조	2015.1.5.	기준시기없음	주기없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	2015.1.5.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33조의2	제33조의2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	2014.12.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2조	제22조	2014.12.9.	2017.1.1	5년마다	2021.12.3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	2014.12.24.	2017.1.1	5년마다	2021.12.31
시행령		제24조	제24조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2014.12.24.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	2014.12.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	2014.12.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2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2	2014.12.9.	2016.1.1	3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45조	2014.12.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3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72조의3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72조	2013.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8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조	2014.12.24.	2015.1.1.	2년마다	2018.12.31	
	법	제52조의2	2010.5.31.	2010.12.31	5년마다	2020.12.30	
	시행령	제52조의2	2009.7.7.	2014.1.1.	5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51조의3	2009.11.27.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2조	2014.12.24.	2017.1.1.	3년마다	2019.12.31	
	법	제23조의2	2015.1.2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3.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8조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6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6조의2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2013.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31조의2	2015.11.11.	2016.1.1.	3년마다	2018.12.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8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계량에관한법률	제52조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제54조	2014.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64조	2014.12.31	2015.1.1	3년마다	2019.12.31	
	광산안전법	제21조	2017.1.6	2017.1.1	2년마다	2018.12.31	
		제34조	2017.1.6	2017.1.1	2년마다	2018.12.3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14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광업법	제71조의3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31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10조	2014.2.4.	2015.1.1.	2년마다	2018.12.31	
	대외무역법	제93조의2	2014.7.16.	2014.7.22	5년마다	2019.7.2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3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2014.2.4.	3년마다	2020.12.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9조	시행규칙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2015.1.1.	2년마다	2018.12.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2014.12.9.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2014.12.9.	2년마다	2018.12.31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2014.12.9.	2년마다	2018.12.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시행령	2015.4.1.	3년마다	2018.3.31
			시행령	2014.7.31	3년마다	2020.7.30
			시행규칙	2017.1.1.	3년마다	2019.12.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9조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2011.11.25.	2년마다	2018.12.31
			법	2016.3.29.	3년마다	2018.12.31
산업발전법	제31조의2	시행령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2014.2.4.	3년마다	2019.12.31	
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의2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2014.12.9.	2년마다	2018.12.31	
		법	2015.5.18.	2년마다	2019.12.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시행령	2009.7.7.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48조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의2	2009.9.1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2009.4.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50조		2015.1.1.	2년마다	2018.12.31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0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2014.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6조의2		2014.1.1.	2년마다	2018.12.31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014.7.28.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규칙	제30조의2		2015.1.1.	5년마다	2020.12.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14.2.4.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33조		2015.1.1.	3년마다	2019.12.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1조	2014.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81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	2014.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81조		2014.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5조	2009.9.1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8조	2011.1.17.	2014.1.1.	3년마다	2019.12.3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3	2014.2.27.	기준시점없음	추기없음	2018.12.31	
		시행규칙	제25조	2014.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2014.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014.2.4.	2014.1.1.	2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0조의3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2014.2.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7조의3	2009.7.7.	2015.1.1.	2년마다	2018.12.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62조의2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3조	2014.11.21.			3년마다	2019.12.3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2조	2017.1.1.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9조	2009.7.7.			3년마다	2020.12.31
						3년마다	2020.12.31
	시행규칙	제36조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9조의2	2014.12.9.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0조	2013.11.22.			3년마다	2019.12.31
						3년마다	2019.12.31
	법	제25조의3	2015.1.28.			3년마다	2020.12.3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25조의2	2014.12.9.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법	제46조의2	2016.1.6.			3년마다	2018.12.3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33조의2	2014.12.9.			3년마다	2020.12.3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19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9조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31조의3	2009.7.7.			3년마다	2019.12.3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7조	2014.12.31.			2년마다	2018.12.3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31조	2014.2.4.			3년마다	2019.12.3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해외지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소방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014.12.9.	2015.1.1	3년마다	2020.12.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8조	2013.12.4.	기준시점없음	주기없음	2016.12.31
		시행규칙	제15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2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2015.1.7.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63조	2009.7.7.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63조	2009.7.7.	2015.1.1	3년마다	2020.1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	2013.12.30	2015.7.1.	3년마다	2018.6.3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44조의2	2014.7.9.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6.6.30	3년마다	2019.6.2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3	2009.7.7.	2014.1.1	3년마다
2017.1.1						3년마다	2019.12.3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2014.12.9.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7.8.	3년마다	2020.12.31	
	진강가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2014.4.1.	2015.1.1	3년마다	2020.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11.4.	3년마다	2020.6.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6조	2009.8.6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99조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014.8.20.	2014.7.31	3년마다 2020.7.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4.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23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20.6.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2014.4.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66조	2014.4.1.	2015.1.1.	3년마다 2020.12.3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04조	2013.3.23.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2조	2015.1.29.	2015.1.1	3년마다 2020.12.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2014.4.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3조	2014.4.1.	2014.1.1	3년마다 2019.12.3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4.12.12.	2015.1.1	2년마다 2018.12.3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7조	2014.12.12.	2015.1.1	2년마다 2018.12.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010.11.16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5조의2	2014.12.9.	2017.1.1	2년마다 2018.12.3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2014.12.12.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6조	2014.9.24.	2015.1.1	3년마다 2020.12.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신설시기	기준시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제16조	2013.12.31.	2016.1.1	3년마다	2019.12.31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제17조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5.3.24.	2015.3.25	2015.3.25	3년마다	2018.3.24
		제37조의3	2013.12.30.	2014.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2014.12.12.	2014.7.1	2014.7.1	3년마다	2020.6.30
				2017.1.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청소년 보호법	제47조의2	2013.12.30.	2014.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7.1.	2015.7.1.	5년마다	2020.6.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4조	2014.12.30.	2015.1.1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5.1.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의3	2013.12.30.	2014.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1.1.	2015.1.1.	3년마다	2020.12.31	
	제21조	2013.12.31.	2014.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7.22	2014.7.22	3년마다	2020.7.21	
			2015.1.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	조문 신설시기			
외교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2014.12.9.	2017.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0조	2014.12.12.	2015.1.1	2년마다	2018.12.31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77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7조	2014.11.19.	2015.1.1	3년마다	2020.12.31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제100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53조	2014.10.8	2015.1.1	3년마다	2020.12.31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2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015.4.3.	2015.3.1	2년마다	2019.2.29
		시행령	제27조의2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15.4.3.	2015.3.1	2년마다	2019.2.29
		시행령	제12조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31조의2	2015.5.18.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20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2014.11.24.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0조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4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통일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2014.1.1.	2014.1.1.	3년마다	2019.12.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2014.7.21.	2015.1.1.	3년마다	2020.12.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2015.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3조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2015.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6조	2015.12.31.	2016.1.1.	3년마다	2018.12.31
		법	제83조의2	2015.5.18.	2015.7.1	3년마다	2020.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8조	2014.12.26.	2015.1.1.	2년마다	2019.6.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제32조의3	2013.12.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136조의2	2016.1.27.	2016.1.1.	3년마다	2018.12.31
		제42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제2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2013.12.30.	2017.1.1.	2년마다	2018.12.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2013.12.30.	2017.1.1.	2년마다	2018.12.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013.12.30.	2017.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디지털보호법	시행규칙	제102조	조문신설시기			
특허청	발명진흥법	법	제57조의2	2015.5.18.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29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법	제29조	2016.1.27.	2년마다	2018.12.31	
	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법	제17조의2	2016.1.27.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5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상표법	시행규칙	제101조	2015.9.14.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23조	2015.12.31.	3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6조	2014.4.17.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3조	2014.12.9.	3년마다	2020.8.21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014.8.22.	3년마다	2019.12.31	
		법	제61조	2010.4.15.	4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74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7조	2014.12.31.	3년마다	2019.12.3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56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6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의2	조문신설시기			
	남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9조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내수판매업법	시행규칙	제25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3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도선법	시행령	제3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6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1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01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5조	2015.8.4.	2016.1.1	3년마다	2018.12.3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	법	제26조의2	2011.6.15.	2008.12.31	5년마다	2018.12.30
		시행령	제2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6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6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56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62조	제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9조의3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8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2013.12.30.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52조의3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8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7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58조	2014.11.14.	2017.1.1	3년마다	2019.12.31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5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45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9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3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9조	전문신설시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영업조합법	시행령	제6조의2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2조	2013.12.30.	2017.1.1	2년마다	2018.12.3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4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0조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4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항만법	시행령	제92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4.9.25	3년마다	2020.9.24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규칙	제34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조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2014.11.14.	3년마다	2019.1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60조의2	2015.1.20.	2015.1.20.	2015.7.1	3년마다	2018.6.30
		시행령	제45조의2	2014.12.9.	2014.12.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45조의2	2014.12.31.	2014.12.31.	2017.1.1	3년마다	2019.12.3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86조	조문신설시기	조문신설시기			
행정안전부	해운법	시행령	제28조의2	2009.7.7.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0조	2009.8.19.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62조의3	2014.8.6	2014.1.1	3년마다	2019.12.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0조	2014.11.17.	2015.1.1	2년마다	2018.12.31
	금정시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4.1.10.	2014.1.1	3년마다	2019.12.3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015.12.15.	2016.1.1	3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17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2014.11.17.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0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9조	2014.12.9.	2015.1.1	3년마다	2020.12.31
		시행령	제22조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	2013.12.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0조	2014.4.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21조	2014.4.4.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법령	조문	신설시기	종료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의2	2016.1.6.	3년마다	2017.1.1	2019.12.31
		시행령	제54조	2009.7.7.	3년마다	2015.1.1	2020.12.31
	온천법	법	제31조의2	2015.7.20.	3년마다	2014.1.1	2019.12.31
		시행령	제23조	2013.12.30.	3년마다	2015.8.1	2018.7.3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2014.4.4.	2년마다	2014.1.1	2019.12.31
		시행령	제31조의3	2014.12.9.	주기없음	2015.1.1	2018.12.3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2014.12.9.	3년마다	2017.1.1.	2019.12.31
		시행령	제74조	2009.7.7.	2년마다	2015.1.1	2018.12.3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2조	2014.8.4.	3년마다	2014.1.1	2019.12.31
		시행령	제12조	2014.12.9.	2년마다	2015.1.1	2018.12.31
	자연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	2017.1.6.	2년마다	2017.1.1	2018.12.31
		시행령	제24조	2014.12.9.	3년마다	2017.1.1	2019.12.3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3	2014.11.4.	3년마다	2014.1.1	2019.12.31
		시행령	제37조	2013.12.30.	3년마다	2015.1.1	2020.12.3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2013.12.30.	3년마다	2014.1.1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의2	제91조				
환경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시행령	2015.3.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주민등록법	법	제36조의2	시행령	2016.5.29.	2017.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61조	시행령	2014.12.31.	2017.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행규칙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시행령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시행령	2014.12.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2014.10.16.	2015.1.1	3년마다	2020.12.3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행정사법	법	제35조의2	법	2015.5.18.	2015.6.1	2년마다	2019.5.31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령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2014.11.17.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령	2013.12.31.	2014.1.1	3년마다	2019.12.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시행규칙	2009.6.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시행령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32조	2014.4.30.	2014.1.1	2019.12.31
		제37조의4	013.12.30	2015.1.1.	2018.12.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2014.4.30.	2015.1.1	2020.12.31
		제38조의4	2013.12.30	2014.7.29	2020.7.28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4.4.30.	2015.1.1	2018.12.31
		제66조의2	2009.7.7.	2014.7.29	2020.7.26
	대기환경보전법	제137조	2009.6.30.	2015.1.1	2020.12.31
		제8조	2011.2.1.	2014.1.1	2019.12.3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2013.12.30.	2014.1.1	2019.12.31
	먹는물관리법	제45조	2014.4.30.	2014.7.22	2020.7.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013.12.30.	2014.7.22	2020.7.21
	상수물관리규칙	제20조	2014.4.30.	2014.7.17	2020.7.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2014.4.30.	2014.7.17	2020.7.16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2014.4.30.	2014.1.1	2019.12.31
		제14조의2	2013.12.30.	2014.1.1	2019.12.31
	제76조	2014.4.30.	2014.1.1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조문신설시기	기존시기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3	2013.12.30.	2014.1.1	5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44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68조	2013.12.30.	2014.7.1	3년마다	2020.6.30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8조	2014.4.30.	2014.7.1	3년마다	2020.6.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07조의2	2009.6.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2015.6.1.	2년마다	2019.5.31.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	제13조의4	2015.12.22.	2017.1.1	5년마다	2021.12.31	
		시행령	제15조	2016.12.20.	2017.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15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009.6.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9조의3	2014.7.16.	2014.7.17	3년마다	2020.7.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2014.4.30.	2014.7.17	3년마다	2020.7.16	
시행령		제37조의4	2013.12.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2014.4.30.	2014.7.29	3년마다	2020.7.28		
				2016.1.1	3년마다	2018.12.31		
				2014.7.29	3년마다	2020.7.28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재검토시기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0조	2014.1.1	3년마다	2019.12.31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53조의3	2017.1.1	2년마다	2020.12.31
	자연순환기본법	제33조	법	제33조	2021.1.1	주기없음	2023.1.1
				2021.1.1.	2021.1.1.	3년마다	2023.12.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2009.7.7.	3년마다	2019.12.31
		제28조	시행규칙	제28조	2009.6.30.	3년마다	2019.12.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2014.4.30.	3년마다	2019.12.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시행령	제36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2014.4.30.	3년마다	2019.12.3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2014.4.30.	3년마다	2019.12.31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2009.7.7.	3년마다	2019.12.31
		제37조	시행규칙	제37조	2009.6.30.	3년마다	2019.12.3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3	법	제62조의3	2015.7.20.	3년마다	2019.6.30
		제38조의3	시행령	제38조의3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제84조	시행규칙	제84조	2009.6.30.	3년마다	2019.12.3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6조	2013.12.30.	3년마다	2019.12.31

소관부처	근거법령(조문)				기초년	재검토주기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의3	조문신설시기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	2009.6.30.	2017.1.1.	3년마다	2019.12.31.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2013.12.30.	2014.7.29.	3년마다	2020.7.28.
		시행규칙	제18조	2014.4.30.	2016.1.1.	3년마다	2018.12.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2014.12.9.	2015.1.1.	2년마다	2018.12.31.
		시행규칙	제61조	2014.4.30.	2015.1.1.	3년마다	2020.12.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9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7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15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34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5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령	제23조	2014.7.14.	2014.9.25.	3년마다	2020.9.24.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	2013.12.30.	2014.1.1.	2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1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2013.12.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시행규칙	제38조	2014.4.30.	2014.1.1.	3년마다	2019.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	2015.12.22.	2017.1.1.	2년마다	2018.12.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7조	2015.12.22.	2017.1.1.	2년마다	2018.12.31.	

[부록 2]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8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10	제44조제2호 및 제3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동사 및 세무사의 기준	2018.12.31	
		시행규칙	제48조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시행규칙	제4조	제2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시행령	제66조의3	제3조	근로복지사업 용자업무취급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시행규칙	제30조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시행규칙	제30조	제17조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훈련과정 등에 관한 승인 절차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	제2조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세부 기준
		시행규칙	제8조	제3조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13조	제8조	제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시행령	제21조의3	제5조	제5조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8조	제8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9조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10조	해산신고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타워크레인의 지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대상 사업의 범위 임장료 징수 등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 도산통사실인정의 신청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직업상담원의 자격 지도단속 및 보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계약서의 기재사항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	검토대상규제	
공정거래 위원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71조	제142조 제420조제호 및 별표 12 제2조의2제1항 및 별 표 1 제3호	타워크레인의 지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대상 사업의 범위		2018.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4	제17조	임장료 징수 등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조의2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조	도산통사실인정의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시행령	제6조의3	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시행령	제36조의3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62조의2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시행령	제62조의2	제20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7조부터 제19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7조		채무의 상계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조		사업장
			제3조		청약의 유인 방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9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제11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제17조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제18조	다단계판매원 수첩				
제19조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	조합의 설립절차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10조	사업의 종류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7조의2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금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	
			제6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0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법	제38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제30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2018.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3	1.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	
			제27조의2제1항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제36조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관한 특례 범위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3조	사업개신명령	
			제144조 및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산국의 범위 및 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심사	
			제12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변경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신고	
			제15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8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시기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17조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심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8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시기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17조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39조 제44조 및 제45조 제3조 제4조제1항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위반행위의 증거에 필요한 명령	2018.12.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1조	제33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53조제8항 제13조제1항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8.2.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제53조제1항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방법		
	교육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시행규칙	제9조	제65조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8.12.31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53조의2제1항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13조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과과정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	
					제11조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제12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6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제19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직조사단의 구성 및 현직조사의 실시 방법	
		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제2조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3조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제5조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제6조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제7조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제9조	사이버대학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중원 기준	
		제10조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제11조	사이버대학의 학교현장과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공표	
제12조	「평생교육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유아교육법	제16조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조제2항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1조제2항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제32조제1항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6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제4조 및 별표 1	제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63조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9조의3제4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제9조제1항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23조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제15조제1항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제16조	검임교원의 산정기준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제13조	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절차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 절차	
			제22조 및 별표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기준 등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제3조의3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분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3조 및 별표 1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제3조제1항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				
제7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통보 및 고시 등				
제15조	상담실 설치기준				
제17조의3제7호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				
제21조 및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2조	시행령				
제34조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분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통보 및 고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상담실 설치기준		
	시행령	제20조의2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		
			과태료 부과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학위의 종류	학위의 표기방법	
국가 보훈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조 및 별표 제3조	학위의 종류	
			제15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학술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학술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제7조	학력인정의 기준	
				제8조	학위수여의 절차	
				제9조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수여 요건	
				제11조	학습정보의 관리	
				제15조	취업지원 기준	
				제35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권익 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7조 및 별표 1 제25조 및 별표 2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신물 등의 가예 범위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2018.12.31
			제120조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018.5.18
			제18조의2	제13조의3제9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	2018.7.31
			제10조	제7조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	
국토 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39조의3	제16조의2	건설기계 검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8.12.31
			제9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분양받은 자의 등의 방법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대수신 또는 설계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시 첩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공방시설법	법	제63조	유사동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의2	차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제12조제2항	정미한 사항	
	법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법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법 준공인가 신청 시 첩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시행규칙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시행규칙	제21조	자재관리 인가신청	
		시행령	제22조	관리비 등	
	사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표지의 설치 및 공시	
		시행규칙	제6조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 신청 시 첩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4조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 시 첩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금융위원회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018.12.31		
				제14조제3항		잠용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제16조제1항		원상회복 기한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7조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제9조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제10조		철도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등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제2조	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제330조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제332조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34조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9조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제20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2	제26조의2	입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68조제5항제4호마목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범위		
제77조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제90조·제91조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176조의5제10항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제한사유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제237조	투자합자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	투자의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련 준수사항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제271조의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271조의21제5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제271조의2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5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등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제326조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제327조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제328조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기획재정부	전자금융거래법		제329조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제341조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제346조	지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제371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5조제2항	금융회사의 범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1조의3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의 기준	
		시행령	제17조의10	제11조의3제4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4조제7항	제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	2018.12.31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3제2항	
세무사법	법	제21조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3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6조의14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제18조의2	제18조의2	한국은행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5	2018.1.20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8조제1항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2018.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변경계약 체결 대상 임대차계약의 항목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방법 기계화·농사 선정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각결한 사육·관리 방법 등 동물운송차의 범위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5.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제30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검토시기	
		제14조	제7조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0조	변경계약 체결 대상 임대차계약의 항목		
		제7조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시행령	제7조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제6조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방법		
	시행규칙	제8조	제3조제1항	기계화·농사 선정 기준		
		제77조	제5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	제3조 및 별표 1	각결한 사육·관리 방법 등		
제5조	동물운송차의 범위					
제6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7조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9조	5.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9조 및 별표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제24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27조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9에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제38조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4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제43조 및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	
			제15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	
			제16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제16조의3	대체조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등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정마의 개최 등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의2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0조	복색의 등록 절차 등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과 등록사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4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20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규칙	제62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39조의2	국가인증 제품		
식품안전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2	국가인증 제품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2018.12.31		제39조의2	국가인증 제품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문화체육 관광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5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	2018.12.31				
			시행규칙	제15조	제6조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2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1조의2	제16조제1호나목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2018.3.14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제8호	청소년계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국어기본법	제21조	제14조제6항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관광진흥법	제73조	별표 7	아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공연법	시행령	제23조	제4조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8.6.30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공연법	제66조의3	제27조제2항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공연법		제66조의3	제27조제2항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별표 1 제2호사목(9)	제25조제1항제2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연간 사업실적 기준	2018.12.31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6조의2	기간이 적절하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2	제33조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2	제34조	환급금의 산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2	제42조	위탁 운영비의 비율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2	제42조	체육시설의 임장료 징수 승인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무부	도서관법	법	제46조의2	제31조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 제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투자조합의 투자비용 확인신청 절차	2018.12.31
			제15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제11조의2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문화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조	진문예술품인·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제16조의2	제20조제2항제3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제16조의2	제33조	비디오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의 절차와 방법 표시사항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1조제1항제2호	변경신고의 절차	
			제17조의3	제13조 및 별표 1	간행물의 유통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0조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제19조	3조제5항	귀화 추천서 작성자의 기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2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1조	제2조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9조	제3조	법률구조법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변경승인 절차	
				제2조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4조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변호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보건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8.6.30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9조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	2018.12.31
		시행규칙	제14조	제23조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조제2항 및 별표 1 부타 별표 4	제37조제1항	소독업자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제14조	제7조	제39조제1항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의 제출서류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별표 1 부타 별표 4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10조	제5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조	제3조	제3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시 제출서	
		시행규칙	제6조	제3조	제3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시 제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시행령	제10조의4	제7조의2 및 별표 1	제7조의2 및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조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2조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4조	제14조	업무범위	
제3조				제3조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제3조의2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시 제출 서식의 내용	
		제3조의4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제23조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	
		제16조제1항	영유아·원아 구강검진 내용	
		제8조 및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별표 1 제8호사목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제7조제5항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의 내용	
		제6조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내용	
		제26조의2제1항	광역저활센터의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제26조의4제1항	광역저활센터의 평가기준	
		제26조의5제1항·제3항	광역저활센터가 제출 및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사항	
		제27조	지역저활센터의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제28조	지역저활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29조	지역저활센터의 평가기준	
		제30조	지역저활센터 운영자의 제출서류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사항	
		제18조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제9조	시행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3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3조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9조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4조	시험장 내용 변경의 신고사항	
		제18조	가입자 자격 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 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그 보존 기간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	
		제52조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시 제출서류	
		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7조 및 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제11조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방법·절차	
		제24조제1항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의 보고사항	
		제16조제1항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제17조 및 별표 2·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제20조제1항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제29조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제31조 및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근거	법률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3조제1항	비용수납의 신고 시 제출사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45조	제6조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제6조의2제4항	정보시스템에 의한 재무·회계처리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8조제2항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의 보고방법	
			제41조의7	후원금의 사용기준	
			제42조	감사주기	
			제1조의2	차료 요구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제14조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의2제2항	자격의 기준	
			제26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시 제출서류	
			제26조의2 및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7조의2	시설의 평가주기	
			제13조	제공자의 준수 사항	
			제16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상금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제4호 및 제5호	질병구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	
			제17조제1항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제18조제1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9조제1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1조	배아의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제27조제1항·제3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휴업·폐업 신고 및 배아연구기관의 변경·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제28조제1항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제29조제1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제3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시 제출서류	
		제38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제39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제51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제6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제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사항	
		제2조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3조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제4조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의 서식	
		제4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시 제출서류	
		제24조 및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5조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제6조 및 별표 1	안마시설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9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제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사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시 제출서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2조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8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의 내용			
		제10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	제42조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	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23조 및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제2항 및 제8항	제42조	제24조제2항 및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신청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제32조의2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		
		제32조의3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제33조		필수 건강진단 항목		
		제36조제1항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제34조	제47조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제35조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제40조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3조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기한			
제44조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규칙	제6조	제45조 및 별표 18	행정처분기준	
	시행령	제21조의2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6조의4 및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
시행규칙		제12조	제11조	의료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규칙	제12조	제25조 및 별표 2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규칙	제12조	제11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5조	결산서의 내용	
	시행령	제44조의2	제6조 및 별표 3	세탁금지 세탁물	
	시행규칙	제26조	제10조 및 별표 2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시설 기준
	시행령	제44조의2	제13조	안전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제23조	의료광고 금지기준	
			제4조	면허증 발급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의료법			제19조의5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제출서류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자격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자격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	의료인 등의 정원	의료인 등의 정원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41조제2항 및 별표 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범위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55조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의 종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제5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제7조	의료비의 반환 시 제출서류	
	입양특례법	제17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24조	기록의 내용	
		제25조제1항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서의 내용	
		제40조의3	시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5조	개인모자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제7조	시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기한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20조의6 및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제1항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0조의7제4항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제23조	국가보존모지등의 지정기준	
		제25조	법인모지 설치자 등의 보고 주기	
		제8조 및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4조	한국수어·페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21조제1항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제46조 및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인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시 제출서류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생산품 상징표시의 내용 인증 취소 시 인증서 반납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행정차분기준	
	제6조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시 제출서류		
	제34조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제36조	생산품 상징표시의 내용		
	제37조제2항	인증 취소 시 인증서 반납절차		
제41조 및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시 제출서류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생산품 상징표시의 내용 인증 취소 시 인증서 반납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행정차분기준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44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52조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제64조 및 별표 7	행정차분기준			
제13조	활동지원금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활동지원금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조 및 별표 1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 제9조제1항 별표 3 별표 7 제24조제1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신청 시 제출사항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시행규칙	제19조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조 및 별표 1 제6조의2 및 별표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9조	제2조의2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조의3 제12조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혈액관리업무 수행 방법		
		시행령	제17조	제9조	조직은행의 허가개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조의2제1항 제4조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2018.12.31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시 수수료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15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의 종류	
		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3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41조제5항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시 제출서류	
		제50조 및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 및 별표 1	목재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인정의 기준	
		제14조제1항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제15조제2항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8조제1항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제23조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4조제1항 및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28조제1항 및 별표 5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8.12.31
		제2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제17조제3항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장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제19조제3항	사방지의 지장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제9조제2항	사방지에서서 임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제16조제3항	협회에 두는 임원의 범위			
제18조	협회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제16조제2항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7조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23조제2항 및 별표 2	산불정보별 조치기준		
		제24조제1항	산림 등에서 불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2제1항	지방산림청장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장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제18조제3제1항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 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 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	방제사업의 감리기준	방제사업의 감리기준	
		제28조제1항	산림인접지역의 범위	산림인접지역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3	산림사업범인의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의 범위		
		제24조제1항 및 별표 10	가로수 조성·관리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의3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제7조제3항	인가 또는 변경인가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제10조제1항	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제25조제2제1항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산업통상 자원부	산지관리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제23조 및 별표 5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8조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2항 및 별 표 2 제25조의5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및 별표 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3조 제4조	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기술사용료의 일시납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보호조치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 지 여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의 범위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의 신고 수리 기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과태료 부과기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8.12.31
		시행령	제52조의2		
		시행규칙	제18조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2조		
		시행령	제31조의2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25조의2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광산안전법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제4조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사항	
		제5조제2항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제9조제3호 및 별표 11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9조제4호 및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5조제1항	안전상향상계회 심사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제22조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제13조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4조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제19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제23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제10조	광해방지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18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p>광업법</p> <p>기술의 이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p> <p>대외무역법</p>			제26조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기한, 이자금액의 범위 및 부담금 일시 징수의 요건	
	시행규칙	제1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34조	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작성 요건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시행령	제71조의3	1.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시행규칙	제31조	제13조제4항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시행령	제45조	제14조 제20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시행령	제45조	제19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	
	시행령	제93조의2	제5조제2항 제43조 제4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무역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제60조의2제2항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사항 및 절차:	재검토시기
		제9조제1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	
		제10조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	
		제10조의3 및 별표 1의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0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5조제1항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공자의 시공기록·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	
		제20조의2제1항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제23조제2항제2호·제7호, 별표 6 및 별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제25조제3항	정기검사 주기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7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토대상조문	제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8조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	
		제30조제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52조제1항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제54조제1항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	
		제58조 및 별표 1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65조제1항 및 별표 18	수수료	
		제3조제3항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28조 및 별표 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제31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제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제4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제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제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제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제50조	과태료			
제5조제1항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신청 시 첨부서류			
제6조제1항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제14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시행규칙	시행령			제30조의2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조	
			제3조	
산업발전법	법	제49조의2	제49조의2	
			제11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7조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심사 영역별 세부기준, 심사등급 판정기준, 인증심사 운영절차 및 전문인력 확보·운영사항	
		제8조제2항	수수료 산정 시 고려사항	
		제9조	수익사업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제12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인증절차	
		제26조 및 별표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5항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제24조제1항	부과금의 금액	
		제39조제1항 및 별표 3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제40조제1항	부과금의 금액	
		제47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제19조의3 및 별표 2의2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제42조제1항 및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제42조제2항 및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5조제1항 및 별표 8	석유정제업자 등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제3조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20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	
		제4조	설비인증의 대상	
		제5조제2항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제6조제1항	상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설비인증 심사기준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8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시행규칙	제50조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조제1항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제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4조제4항 및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7조제1항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4조 및 별표 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제39조제1항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제42조제2항	안전관리 실시대상 등의 의무 보존기간	
		제43조 및 별표 16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제45조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제46조제1항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제49조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제151조제1항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제52조제3항	정기검사 주기		
	제54조제1항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제69조 및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73조제1항 및 별표 2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보험가입 대상	
		제76조제1항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77조제1항 및 별표 24	수수료	
		제14조제1항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제31조제2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제31조제26제1항 및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제31조제30제1항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제42조제1항 및 별표 4의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별표 6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	
		제25조제3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제26조제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제19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제2	대규모점포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제6조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5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39조제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		
		제27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		
		제27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제10조제2항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제26조제1항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제8조	임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임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제14조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제19조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반입	
			제24조	역외직업의 신고사항, 역외직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	
			제41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임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제12조 및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7조제2제1항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8조제1항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2조제4제1항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8조제2항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53조제1항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2조 시행규칙	제30조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제14조제1항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4.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제29조의2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제33조제1항	단체의 보고 사항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절차 및 협의기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지능형 로봁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	제46조의2	지능형 로봁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로봁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제9조	변경등록 대상		
		제14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1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제20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9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시행령	제31조의3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14조제2항	의견제출 기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제8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0조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5조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행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전문감사기관 및 자가감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식품 의약품 안전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제24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제18조	제4조의2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하기의 기준 및 신청 기한		
			제10조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제15조	제11조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제12조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제27조	제14조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17조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시기		
		소방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12조의2
	제66조			제53조 및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2018.12.31
	제22조			제5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8.12.31
	제20조			제16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등에 관한 사항	2018.3.24
	여성 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			제4조 및 별표 1의2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제6조 및 별표 2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제9조 및 별표 3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제11조 및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보건복지부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5조의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제17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7조	제5조 및 별표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2조 및 별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시행규칙	제10조	제2조의2 및 별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제12조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방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7조 및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제20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24조	제2조	청소년중의 발금신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인사 혁신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숙박행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제1조의3	진강상태 확인 방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제12조제2항	복지 급여 신청 시의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의4	제10조의2제1항 및 별 표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절차 및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제10조의2제1항 및 별 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별 표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시행령	제100조	제4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53조	제14조제1항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기준 등
중소벤처 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응시연령	2018.12.31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의 실시	
			제3조의10	응시연령	
			제5조의3	응시연령	
			제14조	남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별점의 부과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	2018.12.3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요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 용도 제한	
			제11조의5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1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조의4항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지정사항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7조의4항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17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9조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0조 및 별표 2 제21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 기간 및 절차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및 금액의 최저한도	
			제9조의2	경쟁입찰 참여자력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및 절차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2조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의 대상자, 구매목표비율 및 절차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절차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절차	
	시행규칙	제16조	제8조 제10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절차 및 문서 송달 방법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제12조의4항 및 제2항 제31조	시험연구원의 업무규정 기재사항 및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단지조정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의 고려사항, 보고 및 고시 사항,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통일부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제34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절차, 회수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산 보고 절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작성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의 절차 및 변경승인 사항:	
				제27조	조합의 발기인 기준	
				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제90조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제24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특허청				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2018.12.31
				제45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특허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언어	2018.12.31
				제96조제1항제2호기목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	
				제6조의4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제6조의5 및 별표 1	연구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8조의4 및 별표 2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9조의3 및 별표 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제14조 및 별표 7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제19조의2 및 별표 8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4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제19조의5 및 별표 9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8조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제28조의2 및 별표 10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기준	
		제16조의3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제16조의4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17조	변리사회 조직의 구성 기준	
		제17조의3	회칙의 기재사항	
		제3조의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제3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4 및 별표 1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변리사법 부경정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2조의3		
		제5조의2		
		제3조의5 및 별표 2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6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절차 및 기록 보관의무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상표법	특허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해양수산부	상표법	제101조	제3조의7 및 별표 3 제48조제1항 및 별표 2 제9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특허법	제123조	제120조의2제1항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2018.6.30
	선박직원법	제26조의2	제2조제1호(가목2)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2018.12.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31조	행위의 금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31조의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신청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10조	예산업의 등록 신청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1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5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27조	행사의 허가 신청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8조	부유 등의 허가 신청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제34조	수수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선원법	제56조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절차	2018.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조	보험약관 기재사항		
				제3조		어촌계의 명칭 사용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15조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제24조의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7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제27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제27조의4		부대사업의 범위
				제30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42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9조 및 별표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13조		준공전 사용의 신고 또는 허가
제14조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범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27조의2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		
				제46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보고서류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조의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		
				제14조		
				제22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영업조합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14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22조의2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행정 안전부	온천법	법	제23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8.7.31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제37조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철회 등	
			제52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제63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의2 및 별표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 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	연면적에 관한 기준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8.12.31	
		제4조제1항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도로의 정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정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제2조제3항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제13조	도로정용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법	법	제17조의2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20조	과태료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4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제18조	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온천법		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8조의2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9조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제6조	인장의 규격	
인감증명법		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제32조의5	확인·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제58조제4항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자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별표	자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제1항	무단방치 자진거의 처분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3조의2	가입대상시설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	제83조의3제1항	보상한도액	
			제77조 및 별표 5 제14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5조제1항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15조제3항	사업의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25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5조제1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법	법	제36조의2	제40조	과태료 부과	
			제47조제4항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61조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행 정처치부장관의 자료 요구와 그 확인 및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 하는 사유	
			제14조	주민등록전입제대의 열람사항	
지방소도음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6조제1항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10조제1항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제20조	제한임찰에 의한 계약과 그 제한사항	
			제88조제5항 및 제6항	공동계약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0조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2조	업무처리부의 보관 기간 등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기간 또는 장소 등	
			제10조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법률근거	시행규칙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8조 및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조의2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조의3제1항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시정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3	제4조의3제1항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시정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2	제2조 및 별표 1	대기관리권역		
	아취방지법	제21조의2	제17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0조	측정기의 운영·관리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84조	제105조 및 별표 22	행정처분 기준		2018.12.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조의1항 및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5조의3제1항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시정원		
			제12조의2	비용기보증금액		
			제59조의2	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제68조 및 별표 18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5조의2제1항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시정원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8조제1항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제2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시 제출서류	
				제21조	협약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8조	허가배출기준	
				제25조	실태조사	
				제30조	보고와 검사	
				제47조	과태료	

[부록 3]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9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경찰청	도로교통법	법	제147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9.12.31
		시행령	제87조의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시행규칙	제141조의2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제10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제101조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제107조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28조	자동차운전학원의 휴원·폐원 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제10조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격장의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제15조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의 출입금지	
			제15조의23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사행기구 제조업자들의 사행기구 검사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2조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추거지역 등에서 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고용 노동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8조	청원경찰의 징계	2019.12.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3	제7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보고	
				제81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비 등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3	제30조	화약류의 폐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제38조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제45조 및 별표 12	화약류의 포장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제3조의2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제5조의4	이사회회 구성	
				제8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7조제1항 및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6조의2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6조	직무개시등록신청		
	시행규칙	제17조	제6조의2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7조	연수교육		
			제7조의2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제7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제11조	폐업신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제34조 및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및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53조	정관변경의 인가		
			제56조제1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결정 사항		
근로복지기본법	법	제80조의2	제58조	이사 및 감사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8조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2.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시행령	제66조의3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수탁기관, 위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제3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제27조	시정기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확점 등	
		제53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의2	비용 지원·용자 관련 보존 서류	
		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제5조	확정참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제30조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13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0조 및 별표 2 제11조	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기준 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8조	제16조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시행령	제47조의4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32조의4	지정특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32조의6	지정특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6조부터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설치·색채·제작·재료 등	
			제15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31조의2	실제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49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50조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시행규칙	제146조	제51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2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제55조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제56조	펜의 제공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07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36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제136조의8	등록신청 등	
		제144조	서류의 보존	
		제32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제14조	고용법등 등의 신고	
		제9조제1항	체당금의 청구기간	
		제34조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39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83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13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7조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제5조의7 및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 및 예지가맹금의 지급·반환	
		제6조제1항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제9조제1항	원재수의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	응시수수료	
		제30조제1항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제2조	서면 기재사항	
		제3조 및 제4조	계약내용의 확인 및 통지·회신의 방법	
		제5조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제3조의2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진환 신고 등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7조의11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등		
	제20조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결자 등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8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자연배상금의 이용	제13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3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기간 기준	제37조
			계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기준	제41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42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3조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제46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
			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제49조
			평가·인증사업자의 공시사항	제53조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제11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7조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제2조제5항
			서면 기재사항	제3조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 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간설허도금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외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5조
			과학관 사업의 범위	제4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 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과학관 등록신청	제2조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제3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제5조

2019.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0조	등 록 과 학 관 및 국 립 과 학 관 법 인 의 수 의 사 업 의 범 위 및 수 의 사 업 을 위 한 시 설 의 설 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조합의 출자 등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보증 등의 한도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0조	우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우	
			제2조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제3조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제2항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제4조제2항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24조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제3조	법 규정의 적용범위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우주손해배상법 우편대체법 우편법 전자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0조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9조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시행규칙	제48조	제23조	지급증서의 재교부		
	시행규칙	제145조	제141조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42조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4조	보편적 의무제공 실적보고서 제출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제28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서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대장 기재 사항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사항		
			제34조	이용약관의 인가대상 서비스의 범위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승인에 관한 첨부서류 및 전기통신설비의 심사 사항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설치신고·설치변경신고의 심사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58조	통계 보고의 종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4조의4	제15조의14	공인전자문서증계자의 지정요건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조의2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제5조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 기간	
			제6조	인증업무의 양수 및 합병 신고 등	
			제13조의2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4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13조의5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의 승인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전파법	시행령	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무선국 등의 검사수료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료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료		
		제103조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		
		제117조	무선통신사의 자격·정원배치기준		
		제20조제1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 및 별표 2	공상제한의 예외		
		제4조	실제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6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자격기준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시 제출서류	
		제21조	등록기준	
		제25조	도급계약 본리의 예외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6조	사용전검사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	불법감정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제36조	행정처분기준	
		제59조	방송광고	
		제67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제38조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5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66조의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제71조			2019.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의8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9.12.31
			제15조	학생의 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11조	수업일수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71조의2 및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3조	교사의 기준	
			제3조의2	복합시설의 설치	
			제4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	
			제5조	체육장의 기준	
			제6조	교지의 기준	
			제7조	사립학교 교지·교사 및 그 밖의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제8조	교구에 관한 기준	
			제9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설립·실습실 등의 기준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10조	급수·온수공급시설의 기준	
			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제17조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조의2 및 별표 1의3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제4조 및 별표 2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제5조	자비유학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3조	유학인정의 취소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안학교 설립인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교원 및 교사 등의 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사립학교법	제28조의3	차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교원의 임용 보고의 서식 및 첨부 서류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제11조	실험·실습 시설의 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46조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41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41조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제11조	학기의 기준	
		제12조	수업일수의 기준	
		제13조	학급편성의 기준	
		제14조	휴업일 및 임시휴업의 기준과 임시휴업 실시에 대한 원장의 보고 의무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20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제21조	유치원 평가의 기준	
		제22조	유치원 평가의 방법·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제2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유치원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의2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24조	유치원 직원의 배치기준	
		제26조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	
		제27조 및 별표 1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제3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			
제7조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8조	교구에 관한 사항	
		제9조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조	교지	
		제3조	실습지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제21조제1항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5조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제48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제65조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국가 보훈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9.12.3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8조	학교도서관의 시설·자료의 기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5조	제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자격 및 직무
			제12조 및 별표 3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 제31조	제16조	제16조의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16조의3	제16조의2		교습소의 장소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가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27조	제27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7조	제7조		취업지원의 제한
	국가 보훈처	시행령	제102조의3	제9조의8		신상 변동 신고
				제17조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 른 취업지원의 제한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8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99조		품위상행위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3	제17조제3항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03조 및 별표 11	신체검사 미수검 사유		
세대균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특수직종의 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신상변동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시행규칙	제38조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상 변동신고					
국방부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4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시행령	제26조의2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019.12.31	
국토 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2조 및 별표 1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3조 및 별표 2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제15조,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및 별표 4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20조 및 별표 6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시행규칙	제72조	제21조 및 별표 7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제22조 및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2019.3.29
				제23조 및 별표 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24조 및 별표 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제21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시행규칙	제72조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25조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제2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신청	
		제55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등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제68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9.5.2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제89조 및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렴결과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제20조제1항 및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시행령	제21조	부담금의 추정 사유 및 절차 등	
	시행규칙	제27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시행령	제28조의2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24조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2019.12.31
		제25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제15조제2항 및 별표 5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기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및 별표 15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62조, 제63조 및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제65조의3 및 별표 16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제70조의5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6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4조제2항 및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4조 및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13조 및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30조 및 별표 4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8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제23조제2항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			
제2조	적용 범위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87조의3	건설업의 등록기준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38조의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24조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	
		제12조의2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87조의3	건설업의 등록기준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	제8조제1항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제8조제3항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의 범위	
			제8조제4항	분양사업장의 설치 기준 등	
			제9조제1항	분양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제9조제2	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제3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11조	분양대금 납입방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의 공표 방법 등	
			제5조의5제1항제1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제1항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2조제1항제3호	신고 대상의 적절성	
			제14조	용도변경	
			제27조	대지의 조정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1조	건축선	
			제32조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제80조의2 및 별표 2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피어야 하는 거리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5조의2제1항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 건축물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8조제1항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제13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제33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제36조 및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제14조의3 및 별표 2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14조의7	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	복구비예치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105조 및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첩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제51조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첩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제101조	상능검사의 방법 등	
		제102조 및 별표 9	측량기기별 상능기준	
		제103조	상능검사서의 발급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18조	선수금	
	시행령	제99조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제10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제23조	관리비등	
			제28조	관리현황의 공개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40조	안전진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9조	제67조	주택관리업 등록발소 등의 기준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88조 및 제89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제17조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규칙	제29조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소관부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등
			제10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0조의2	성명의 표기방법 등
			제18조	보증의 설정신고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2조 및 별표 1	자격정지의 기준
			별표 2 제13호의2	업무정지 기준
			제4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3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105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10조	양도·양수의 신고	
		제11조	상속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수탁신고	
		제14조	휴지·폐지 신고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제8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9조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제13조제1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제15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제7조제7항 및 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제26조제1항	행위허가의 대상	
		제54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제54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아목	시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55조제9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점용허가 대상	
제56조제6항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3항	잠용료 조정	
		제18조	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제31조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 종류	
		제50조제1항	관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제10조 및 별표 1	장비계획 수립대상지역	
		제14조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47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3조 및 별표 4	장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66조 및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제67조	회계감사			
제5조	안전진단의 요청 등			
제18조의2제2항	협회의 정보 입력 등 의무			
제18조	시행자			
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55조	신수금			
제61조	관계 서류의 공람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제38조제1항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의2	시행규칙	
			시행령	
	도시개발법	제85조의6	시행규칙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시행령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43조 및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2조의12 및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2조의19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조의2 및 별표 3	단위부담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21조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제34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등
				제35조	임대주택의 공급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9조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14조 및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
제19조제2항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동·서·남·북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27조제2항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3조	선수금	
			제34조	시설부담금	
			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제43조의2	임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14조	물류단지 지정대상 등	
			제15조	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9조	심시계획승인신청서	
			제21조	시설부담금의 감면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5조	임대요율			
	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산업의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1조	시험과목 등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	전자문서	
			제5조	국제물류주산업의 등록신청	
			제3조	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29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	표준지공시지기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제7조제1항	표준지공시지기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제20조	개별공시지기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격 여부 심사 등		
		제9조	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및 별표 1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43조의2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제46조	준법감시인		
사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0조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산업단지지정 해제 요건
						제15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행위
						제19조	사업시행자
						제30조	신수금
						제40조제2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제40조의3제2항	건축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제41조제6항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제44조의13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10조제1항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행위신고 시 제출자료			
			제21조	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제34조제1항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제44조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9조	제12조 제16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시행령	제28조의2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0조의2 및 별표 2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5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6조 및 별표 1 제9조 및 별표 2 제16조	진단측정장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89조의2	제17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제19조	구조상 주요부분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6조	결격사유
				제10조제3항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제16조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24조제1항	운수종사자의 자격
				제24조제4항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53조	조합의 설립 인가		
		제59조	연합회의 설립 인가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제9조	공동운수협정		
		제18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제43조 및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3조의2 및 별표 4			별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2조		사업면허신청		
	제17조		한정면허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0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제21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시행령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108조의2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2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제28조	운임·요금의 신고	
		제3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8조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제41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43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운전자격체도의 운영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5조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	
		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1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4조	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93조의6 및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93조의8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95조	조합의 설립
			제96조	연합회의 설립
			제103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7조	차령 연장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26조의3	
			제17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5조	
	유도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제34조			제작자들의 등록신청	
제39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49조의3			제작자들의 제원의 통보	
제57조의9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			내암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63조			내암용기재검사 기준·절차 등	
			검점·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4조 및 별표 15의2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90조부터 제93조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 확보보고, 교육, 해임명령 등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11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제120조제2항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제121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41조	자동차폐차요청서의 첨부서류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10조	기불금예 등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분담금의 납부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	시행규칙	제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의5	시행령	제35조의5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조 및 별표 제10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구상금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시행규칙	제19조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시행령	제19조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시행규칙	제19조	제16조의5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시행령	제19조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시행규칙	제19조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66조	제9조 및 제9조의2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시행규칙	제66조	제10조·제2항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시행규칙	제66조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시행규칙	제66조	제15조	승강기 등	
	시행규칙	제66조	제25조	진입도로	
	시행규칙	제66조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3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액 등	
	시행규칙	제63조	제10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의 회차별납입인정일	
	시행규칙	제63조	제19조 및 제21조	입주자모집 방법과 공고	
	시행규칙	제63조	제22조	건설주택의 건축기준 등	
	시행규칙	제63조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주택법	시행령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35조부터 제49조	주택의 특별공급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60조	임주금의 납부	
		제59조 및 제61조	주택의 공급계약	
		별표 2	예치기준금액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71조	임주자의 동의 없이 지당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2조	부기등기 등	
		제83조부터 제85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9조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부가 운임의 상한	
			제21조	사업의 개선평명	
			제39조	진용철도 운영의 개선평명	
			제14조	철도차량표시	
			제15조 및 별표 3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 및 별표 4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대한 기록·관리 등	
			제18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자격	
			제23조	진용철도 운영의 등불절차 등	
			제44조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함물 등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제16조	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92조의3 및 별표 25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6조의2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조의3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45조제3항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51조제1항	납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7조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철회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20조의2	제10조 및 제12조	보안검색 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조제1항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		
			제7조제2항	항공기의 보안을 위한 매 비행 전 보안점검		
	시행령	제35조의2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13조	원지법인원장의 신고		
			제17조	해외공사상행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65조의2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3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송기행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기준		
제31조				운송기행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57조				차량중당조건		
제21조의5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시행규칙				제62조	제21조의6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44조의2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2019.2.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8조제3항제1호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범위	2019.7.31
			제17조제2항·제3항	성과보수 대상 및 지급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3조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입기준 등	
			제59조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7조의4제2항 및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9조	개별자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9.12.31
			제12조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 등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제16조의3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제18조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제18조의2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	
			제19조의7	중앙회의 자금 운용의 방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	제6조의5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제6조의8제1항제8호	모집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9제1항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는 기간의 범위	
			제7조의2	신불카드의 발행권금액의 최고한도 등	
			제17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제18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제19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어음 발행이나 유가증권 매출의 제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9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시행령	제21조의2	은행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제37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80조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3조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부터 제86조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거래제한의 예외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	
		제104조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제106조제5항제호라목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	
		제107조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제120조제1항제1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53조부터 제155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9조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제255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71조의1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기획 재정부			제301조 제320조 제370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자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격 요건 등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	외부감사의 대상	
	관세법	시행령	제290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2019.10.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	2019.12.18
	관세사법	시행령	제37조	합동사무소 설치의 등록	
		시행규칙	제8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규칙	제5조	통관취급범인등의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지역제한경쟁입찰	
		시행령	제5조	부정당업자의 임찰참가자격 제한	2019.12.31
		시행규칙	제12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시행규칙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간금수급조정조치	
시행규칙		제14조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농림축산 식품부	부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	부권의 판매제한 등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41조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세무사의 실무교육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3	외국환업무의 등록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가족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귀표등의 부착기한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류음번호의 표시방법	
	가족분노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2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가족친연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가족방역사의 자격요건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족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제14조의2 및 별표 1	가족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제19조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2019.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0조제2항 및 별표 2	소독 방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제20조제5항	소독실시기준	
		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제20조의6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제22조의2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제22조의5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제27조제1항 및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 기준	
		제27조제3항	매몰지 표지판의 기재사항	
		제31조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32조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제33조제3항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제42조 및 별표 14의2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요건·기간·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및 변경절차 등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3조제3항	소독명령 또는 쥐·곤충 방제명령의 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내용	시행근거			
농수산식품부	근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보고 사항	
			제4조	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근중의 사육 등의 신고·변경신고 절차	
			제6조	예방조치	
			제7조	예방조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제11조	보고사항	
			제5조 및 별표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제16조제2항 및 별표 2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제18조의2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농수산생명과학부	시행규칙	제25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제26조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제27조제1항 및 별표 8	수수료		
		제8조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증인의 기준		
		제10조 및 별표 1	국외반출증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제21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의 주기		
		제23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제4조	판매업의 등록 절차		
		제5조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 절차		
		제6조 및 별표 1	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제6조의2 및 별표 1의2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1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23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제24조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제24조의3	구매자 정보의 기록	
		제27조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등	
		제28조 및 별표 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제3조의2제1항 및 별 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	
		제6조 및 별표 8	검정 결과의 처리	
		제15조 및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사후관리	
		제17조 및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8조의2 및 별표 11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3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조의4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	채무 상환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0조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3	시행령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	
		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4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의 자격요건	
		제13조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방법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의2제3항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제32조	농업금융채권의 형식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제52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및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요건 및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제36조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52조 및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제3조	축사·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5조 및 별표 2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제6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절차	
		제29조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제9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1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6조	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제3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요건 등	
		제4조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	
		제11조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제10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보수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방법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 절차	
		제7조제2항 및 별표 1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제8조	등록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절차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폐업의 신고 절차	
		제14조,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	보증표시	
		제14조의2, 별지 제19 호의2서식 및 별지 제 19호의3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의 기재사항	
		제16조제2항 및 별표 2	행정차분기준	
		제7조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제12조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제1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	
		제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제30조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제31조	변경신고 절차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제23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의사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2조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조	면허증의 발급 절차	
		제3조제2항	면허대상 등록사항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조의2 및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제1항	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3	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조의4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5	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6	장관 변경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제22조의8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10	간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제22조의11	해산신고 절차 등	
		제22조의12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	격리제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범위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소관부처			제20조 및 별표 4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의 내용 및 절차	
			제33조	정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절차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9조의2 및 별표 8·9·2	발굴의 금지시간 등	
			제44조 및 별표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6조의2제1항	준수사항	
			제47조 및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	
			제1조의3 및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4 및 별표 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제5조 및 별표 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0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제20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제5조의2	검사원의 자격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사용금지농약·비료의 범위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절차				
제11조 및 별표 1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5조 및 별표 2	홍상, 태극상, 백상 및 흑상의 제조기준	
		제17조 및 별표 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제19조	검사의 장소	
		제20조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절차 등	
		제22조 및 별표 4의2	검사수수료	
		제23조제2항 및 별표 5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	
		제25조	검사결과와 표시 등	
		제28조제3항	수입부담금의 금액	
		제7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하기요건	
		제7조 및 별표 1	싸움소의 등록 절차	
		제8조	싸움소주인의 등록 절차	
		제9조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절차	
		제10조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사유	
제1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5조제1항 및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8조제1항 및 별표 4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3조 및 별표 5	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5조 및 별표 2	종차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2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제33조	사후보고 시기		
			제34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제35조제1항 및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절차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제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준수사항		
			제8조	가족의 등록기관 지정에 관한 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		
			제9조	가족의 등록 절차 등		
			제11조	가족의 검정 절차		
제16조	수정사업					
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액증명서 및 가족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결차 등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	교육홍살기관 등의 지정절차·기준 및 운영		
			제47조제1항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4	제5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6조	제8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4조의2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의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업경영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조	해의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등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9조의4	제1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9.12.31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농수산식품부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	
			제8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31조	제4조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제9조	의무자출금 산정기준 또는 가출한도의 변경 절차	
			제11조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6조제2항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자격	
			제21조	수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제24조제1항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지원의 중단기준	
			제27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한도	
			제28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9조	외부전문기관에의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97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5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4조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시행규칙	제57조	제6조	청산결과에의 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8조의2제1항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6조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제27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제28조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요건 및 절차	
		제34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제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금지	
		제35조의2 및 별표 1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제37조의3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제38조	표준경산서의 내용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4조 및 별표 2에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제50조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제52조의2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제56조 및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5조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18조 및 별표 2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 및 별표 4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 및 별표 5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6조 및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6조 및 별표 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54조 및 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제106조 및 별표 21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25조	검정절차
			제129조 및 별표 31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0조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제15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제23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제16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절차
			제24조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제27조 및 별표 2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61조 및 별표 6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3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제7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제17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	
		제12조	정관기재사항 등	
		제6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재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시행령			2019.12.31
제53조의2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5조의3	법	
		제9조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문화체육 관광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2019.12.31		
		시행규칙	제15조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제12조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시행령	제25조	제2조제1항제2호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제21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15조 및 별표 2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공연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8조	발매수득율의 통지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			
				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분양 및 회원모집 대상 관광사업 등	
				제66조의3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시행령	제73조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8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제8조	계방일수		
		법	제38조의3		제9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	제7조		제13조제1항	절격사유	
				제9조		등록 제외 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제11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제22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제31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방법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절차			
			제5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11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근거	법률근거				
법무부	잠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0조의3	제5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		
		시행규칙	제31조	공고의 내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		사업계획 승인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19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의 범위 등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 서류의 범위		
			제27조 및 별표 7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출판사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인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시행령		제3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의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절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19.12.31		
		제11조	국내거소이전신고 절차			
		제14조제2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과 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 복지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제20조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41조제3항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신청 절차
			제84조의2	제42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
			제7조	제45조제1항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9조의4제2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결혼동거 목적의 시증발급 요건
				제17조의3		시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제39조제1항		외국인의 출국심사 절차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7조	제21조제1항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하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제81조의2	별표 4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	소득의 대상		
			제48조	제48조	제48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	소독의 방법	
			제37조제1항 및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제7조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8조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15조제3항 및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1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공중위생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제4조 및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제5조 및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행정처분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3조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제59조	소독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비고(7)		
			제36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제29조의9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44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근거	법률근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1조 14조 및 별표 3	단기보호 급여기간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34조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25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59조	제56조 및 별표 6	행정처분 기준	
			제57조 및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	
		제58조제1항 및 별표 8	수수료		
	식품등의무허가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제8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3조제1항 및 제5항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22조의2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9조제1항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42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시행령 제28조의2	제38조제1항 및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제13조제2항 및 별표 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3조제1항 및 별표 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제2항 및 별표 16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의료급여법			제38조제3항 및 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의료급여의 질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8조	감염 예방 교육		
의료법			제43조 및 별표 1	과징금 산정 기준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의2 및 별표 2의3	하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법			제19조의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시행규칙		제19조의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60조	부대사업	
입양특례법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30조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		
	시행령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4조	입목발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보건 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처			제38조 및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	
			제15조	법인모지 등의 사용자 · 관리비의 신고 등	
	시행규칙	제26조	제20조의8 및 별표 3	장폐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	제3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 매특별법		제17조	생산시설 지정의 절차	
		시행령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한의학육성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혈액관리법		제10조의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9.12.31	
		제21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표 2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5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및 별표 3	의약품 판매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제20조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32조	제22조제1항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시행규칙	제20조	제30조	보고서의 제출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협회의 사업 범위				
							제10조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	제15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1조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16조제1항 및 별표 4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제4조제3항 및 별표 1	제16조제1항 및 별표 4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9조제5항제5호나목	제9조제5항제5호나목	산림자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	제4조의3 및 별표 1	산림자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제30조	제4호서식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제45조	제18조의3제2항	산림자유지도사의 업무범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3	제25조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12조	제18조의3제2항	굴취·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5조	중요생산업자의 자격 등					
								모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2019.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산림조합법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6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제31조제1항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제38조제1항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사항:	
		제49조제2항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대상 임산물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9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	
산지관리법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12조	부회장의 자격요건	
		제2조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3조 및 별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32조제3항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6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8조의3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52조의2	시행령	
		제51조의3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제10조제2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제16조 및 별표 2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제25조 및 별표 4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제26조제1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제28조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제4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제46조 및 별표 7	복구장비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3조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제7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8조제1항	소나무부류 취급업체의 범위	
			제8조의8 및 별표 3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제5조제1항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12조제1항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제3조	독립가의 요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제18조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26조의2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제3조	독립가의 요건		
		제16조제3항	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제17조의4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조의8	품질표시		
		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4조제2항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한		
		제25조의2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산업통상 자원부		제25조의6 제25조의4제3항 및 별 표 4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수수료의 금액			
	대외무역법	제12조의2제1항 제5조의2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5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2019.7.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1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제20조의2	외국외국기관의 개설요건		
			제20조의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21조의2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기준 및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4조	제8조제1항제2호, 제 28조제3항제2호, 제30 조제3항제2호, 제31조 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19.12.31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제39조 및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 표 33 제2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제17조 및 별표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45조	제19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제6조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친환경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시행규칙	제10조	제3조	친환경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제3조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35조제1항 및 별표 10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제14조의4 및 별표 1	체제부가금 부과기준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59조	제10조	최소 출자금액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제31조의2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	생산성 경영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제31조제5항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	도시가스사업 하가의 세부기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	제51조의4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7조 및 별표 2	상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4조 및 별표 4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3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36조의4	산할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8조의4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제54조	시정기간
			제58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및 대상 사업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의2제1항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42조	임주계약의 해지기간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제42조의2제1항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제42조의2제2항 및 별표 4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제42조의2제3항·제4항 및 별표 5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소관부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4조 및 별표 제18조	석탄기공업의 등록기준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시행령	제50조	제7조	소매·부품전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조	조합의 등록신청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1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1조	제40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및 별표 5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2조제1항 및 별표 4 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
		시행령	제39조의3	제39조의2 제5조제1항제1호	사전 심의 요건 외국인투자 엄중제한 및 제한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5조 제13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신청 절차
		시행령	제16조의2	제23조제1항 및 별표 1,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의2	허가·신고 대상 연구시설, 허가 절차, 신고 절차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4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제2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7조	입주 자격	
			제15조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6조	제고 기록 대상 물품, 멸실·분실·폐기 신고 절차 및 기록 보존 기간	
			제17조의3	토지의 분할 면적	
	시행령	제62조의2	제6조 및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제19조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0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규모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시행령	제31조의3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	
			제35조의3 및 별표 1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제50조의3제1항 및 별표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제8조 및 별표 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8조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소방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1조 및 별표 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2019.6.2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0조제1항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제22조의3	제40조제2항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제9조 및 별표 1의2	제14조 및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제20조의3	제43조제2항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20조의3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4조 및 별표 2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제22조의3	제14조제1항 및 별표 7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4조	제15조 및 별표 5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제39조의3	제14조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5조의2	제14조 및 별표 2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9조				제15조 및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9.12.31	
				제2조 및 별표 1	제15조제2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조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4조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5조	제2조 및 별표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판매업의 시설기준		
				제7조	제3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8조	제4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제15조	제5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8조	제7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폐업신고		
				제15조	제8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5조	제15조	품질관리인 선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1조 및 별표 5 제31조제1항 및 별표 9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제29조 및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2호 제36조 및 별표 14 제40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금지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의 신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아목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마목 제62조제1항제7호 제89조 및 별표 23 II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2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6조 및 별표 2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제35조 제37조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 심사 및 재심사 절차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제47조 및 제48조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행·보존	
			제104조	의약품의 제조하는 경우 원료의 입고 시험검사	
			제56조	약품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려는 자의 준수사항	
			별표 1	동물유래인료를 사용한 의약품(주사제로 한정한다)의 기준서 작성	
			제29조 및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제35조	영업의 신고	
			제36조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제5조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변경등록		
		제1조제2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3조제2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종사자의 수의 기준	2019.12.31	
		제25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종사자의 수의 기준		
		제7조 및 별표 1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		
		제4조 및 별표 1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제6조 및 별표 2	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	아이돌모미의 자격		
		제16조			
		제6조제2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7조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제20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0조의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7조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별표 1		수련시설 안전기준
			제14조		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외교부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6조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	2019.12.31	
조달청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9.12.31	
		제23조의2	단기조정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9.6.3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9.2.29	
		제17조	지도사 등록 시의 제출서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2019.12.31
		제2조 및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23조	사업조정 신청절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명령에 관한 별첨기준	2019.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의6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절차, 신고 요건 및 절차		
				제4조의2 및 별표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제11조의10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한의 범위,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 절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절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	시장정보사업의 제외 대상		
				제11조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		
				제13조제1항	휴업의 경우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제15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 면적		
				제6조 및 별표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1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제한되는 행위 및 예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규모비율 및 산정기준				
			제11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규모비율 및 계산 방법			
			제16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특허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27조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제31조의2	등록취소의 예외		
		제4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범위 및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에 대한 비율		
		제35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제5조의3제5항	금융회사가 제단 및 중앙회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출연시기 및 방법,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기간	제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 및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	
		제16조	제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 및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제8조의3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제19조의8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법리사법	법	제19조의9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9.12.31	
		제4조	법리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2	법리사 등록의 거부		
		제5조의3	법리사 등록의 취소		
		제6조의2	법리사 사무소의 설치		
시행령	제22조의3	제9조 및 제10조	법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제13조	법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0조	법리사의 등록신청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6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 제32조 별표 10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야간운항장비 및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의 조정 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 및 말소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상레저사업등록기준	
해양 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2019.12.31
				제20조 제51조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해양 수산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019.12.31
			제74조의2	제11조 제14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매립면허 신청 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조	신령기준 적용 제외	2019.12.3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조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국세청 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26조	국세청에어객신의 보안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33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제35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8조 및 별표 4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제40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8조	납시터업의 허가기준	
			제9조	납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9조	납시터업의 출항제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2조	납시터업자와 납시어선업자의 보험 등 가입	
			제25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	
			제27조	출입·검사 등	
			제17조 및 별표 1	포획·채취 금지	
			제18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제2조	도선사면허 신청	
			제7조	실무수습	
			제11조	행정처분의 통지 등	
도선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9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	출입·검사 등	
			제25조	포획·채취 금지	
			제17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출입·검사 등	
			제17조의2	포획·채취 금지	
			제18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제2조	도선사면허 신청	
			제7조	실무수습	
제11조	행정처분의 통지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8조제1항 및 별표 4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제20조	도선료 등의 신고		
		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행위제한의 예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출입제한의 예외	
				제15조	
			제18조 및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기한	
			제27조 및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	어구 또는 방법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제20조	
제22조 및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			준용되는 시험·연구 승인에 관한 허가신청절차 등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	총톤수의 개측신청		
		제6조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7조	제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47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제54조	예비검사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73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제81조	예인선항해검사	
		제93조	재검사 등	
		제97조의2	선박검사원의 자격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	성능시험	
		제60조의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7조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선박직원법	제9조	시험의 시행	
		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점권설정예의	
		제12조	업무의 범위	
		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선박투자회사법	제25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4조	장관의 기재사항		
	제8조의2	주식의 추가발행		
	제24조	검사·감독을 위한 조치		
	제2조	선박투자사업의 인가신청		
	시행규칙	제4조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제5조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신원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5조	신박운행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16조	징계위원회
				제17조	쟁의행위의 제한
				제21조	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2조	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3조	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제30조	귀국 후 신원수첩의 공인
				제31조	신원수첩 멸실 시의 공인사항 등 증명
				제34조의2	신원신분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45조	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46조의5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제53조	긴장진단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33조	제57조의3	취업규칙의 신고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6조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제10조	변경허가	
			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4조	친일염인증의 갱신 등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5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 및 별표 6	천일염인증 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	
		제27조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제28조 및 별표 7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조 및 별표 8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제32조 및 별표 9	수수료	
		제20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9조	살처분명령	
		제20조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제21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37조의7	진단서 및 검사서 등	
제37조의8	처방전 기재사항			
제37조의10	진료부 및 집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5	만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40조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6조	면허신청 등			
제29조	신고업의 종류			
제37조 및 별표 2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			
제86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제85조의2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3조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의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 가입 신청
				제26조 및 별표 14	조성금의 부과기준
	어선법	시행규칙	제77조	제53조 및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4조	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6조				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7조				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제14조				총톤수의 측정 등	
제17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 등	
제18조				재화증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21조				등록의 신청 등	
제23조				등록사항	
			제24조	어선의 표시항 및 표시방법	
			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 등:	
			제2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등	
			제33조의2	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4조	신박국적증서 영여서의 발급신청 등	
		제42조의2	어선위지발신청자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 등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제71조	증서 등의 재발급 등	
		제5조제1항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제6조	보호수역 입역통지	
		제8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17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제19조 및 별표 8 제2호각목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3조제2항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제31조 및 별표 10	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제36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제48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	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5	어업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제4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소관부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1조 및 별표 7	어업허가의 제한		
			제16조	어업의 변경허가		
			제30조	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제9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2조	준공검사 제출서류 등		
			제14조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시행령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9조	시행규칙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13조	시행규칙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	시행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신청	
			제13조	시행규칙	보고 요령 및 시기 등	
			제9조	시행규칙	보고 요령 및 시기 등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시행규칙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시행규칙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제18조	시행규칙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제25조	시행규칙	양륙량 등 보고		
		제3조	시행규칙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13조	시행규칙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4조	제2조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침몰·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시행규칙	제40조	제18조	항로표지관리법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요청		
			제28조	검사의 종류 등		
	시행령	제29조의4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제22조	금지행위		
			제23조 및 별표 4	설치 또는 철거 신고 대상 시설장비		
			제93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		
			제61조부터 제63조	사업시행장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항만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		장기채류화물의 반출 통보 등, 매각, 폐기 및 국가귀속
				제83조		행위 등의 제한
제90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4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제2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1조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제3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해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장기검사의 주기	
		제5조	검사신청	
		제6조 및 별표 1	검사대상의 범위	
		제7조	검사방법	
		제8조	검사결과와 처리	
		제12조 및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	사업계획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제15조	운임 및 요금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5조제1항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제6조	보호수역 입역통지	
		제8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17조	관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제19조 및 별표 8 제2 호가목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3조제2항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제31조 및 별표 10	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6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제48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30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40조	취수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41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42조	영업장 폐쇄조치의 방법 등
			제44조	광고의 제한
			제5조	민허계획의 공고 방법
			제6조	면허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등
			제7조	면허의 변경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등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제18조	자료의 제출
제28조	긴급진단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3조 및 별표 1	해양시설			
제7조	정도관리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11조 및 별표 3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36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제48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30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40조	취수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41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42조	영업장 폐쇄조치의 방법 등
			제44조	광고의 제한
			제5조	민허계획의 공고 방법
			제6조	면허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등
			제7조	면허의 변경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등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제18조	자료의 제출
제28조	긴급진단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3조 및 별표 1	해양시설			
제7조	정도관리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11조 및 별표 3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2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옥상폐기물의 종류 등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44조 및 별표 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의4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5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56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57조 및 별표 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0조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제78조	교육·훈련대상자 등		
		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제13조제2항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9조 및 별표 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0조	운임의 공표 등			
	제23조 및 별표 4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해운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0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	제35조의2 제62조의3			
행정 안전부	행정사법	제35조의2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2019.5.31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의3	제40조의2 및 별표 1 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37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제18조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측측업의 등록기준	
	도서개발 촉진법	제20조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측측업의 등록기준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22조	제12조	측측업의 등록기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1조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등
			제14조의2	제1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6조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또는 방법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하도급 허용범위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또는 방법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제5조	제16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2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제14조의2제2항	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제24조의7제2항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안전점검기관의 지정요건
			제24조의4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8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기간 또는 주기
			제20조	제20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2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13조	굴착허가	
온천법	시행령	제23조	제16조	지하수 개발 허가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제11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제12조제1항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3조	면허·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제5조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	
			제7조	영업구역의 기준	
			제10조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도선의 지정기준	
			제11조의2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기준	
			제12조	안전검사의 시기 등	
			제14조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우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1조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22조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제25조	유·도선의 운항규칙	
			제26조	운항약관의 신고방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구조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풍수해보험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27조 제6조 및 별표 1 제32조의2 및 별표 3	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대행자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24조	제8조제3항 및 별표 1	우수기업 인증취소의 기준						
		시행령	제23조의3	제12조 및 별표 5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7조	제8조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행위 등의 제한						
		시행령	제25조의2	제2조제1항	행위 제한						
		시행령	제91조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 제78조의3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제18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 및 별표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6조의2	토사 기준						
		법	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3항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62조의3	제13조의3제6항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환경부								2019.5.31.	2019.6.30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17조 및 별표 5 제21조 및 별표 7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별표 8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	가축분뇨관련영역의 허가기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개선평형 이행의 보고 시공감리자의 자격	
	시행규칙	제51조	제2조 및 별표 1에 제9조	건설폐기물의 종류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시행령	제29조의2	제14조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의2 제9조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배출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9.12.31
	시행규칙	제32조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제20조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치신고·변경승인·변경신고의 대상 등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39조 및 별표 10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40조 및 별표 10의2	자황유의 사용	
		제43조 및 별표 11의3	창정연료의 사용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6조 및 별표 13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77조제2항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제82조의4제1항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제82조의6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제87조제1항·제2항·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행목, 방법 및 기준 등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주기 및 기간	
		제2조 및 별표 1	수질기준	
		제4조제1항	수질검사의 횟수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상수원관리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2조	간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시행규칙	제15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14조의2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0조 및 별표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 및 별표 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제1항 및 별표 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제23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종류				
				제25조 및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13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	자동차제작자 검사·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자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50조 및 별표 16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54조 및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71조제1항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3조 및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18조 및 별표 2의2	측정기의 부착·기동 등	
		제23조 및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6조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8조제1항	사업장설치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9조제1항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장의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	
	제22조	자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포함사항 및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		
	제24조	자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내용 및 제출시기		
	제28조 및 별표 7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제3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제31조의3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32조 및 별표 8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자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33조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제34조	변경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제36조의2	수시검사 대상		
	제36조의6제1항	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제36조의9 및 별표 8의2	무운행기간의 설정범위 및 지원금액의 회수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토대상조문	제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제41조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4항 및 별표 7의2	지수조정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지수조정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31조 및 별표 8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제31조	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제59조 및 별표 17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제72조부터 제75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개신 명령의 기간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제18조제1항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 및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제54조제1항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및 제3항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87조 및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제89조제1항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주기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93조제1항 및 제94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제6조 및 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6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및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시행규칙	제15조	제4조 및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의 교육 주기 및 시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속·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와 공고 시기·기간·방법	
			제10조 및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제10조의8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4조의2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9조제1항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제16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제17조 및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 및 별표 9	행정처분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7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49조의2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4조 및 별표 2	사용역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5조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제7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제8조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제9조제1항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제10조제1항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제20조의3 및 별표 7	폐기물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시설 및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제21조제1항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18조 및 별표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별표 9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20조 및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관리대상기기에 관한 신고·변경신고 대상			
	제22조제2항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의 부착기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환경부	시행령	제36조의3	제29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제4조	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20조	제5조 및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제6조	재활용 및 회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3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서식	
	시행규칙	제12조	제3조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 1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5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18조의2	제8조의3	시정명령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	제17조의4 및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시행규칙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제19조	반출정화대상	
			제31조의2제1항 및 제4항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5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술인력 교육의 종류·주기·시간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제84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	집출수 배출허용기준	
		제9조제2항부터 제5항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기준 및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14조 및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14조의5제1항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수탁처리능력 확인 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2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35조제1항 및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대상	
		제4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제41조제5항제2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8조 및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하수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	재검토시기
		제59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제69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 시 제출서류	
		제3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제9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0조	설치기준 등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9조 및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제31조제1항 및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32조제1항 및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제33조 및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13조의7 및 별표 5의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4조제1항 및 제2항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한의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4조의2제1항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제42조 및 별표 8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9조	제53조 및 제54조 제7조	개인허수처리시설제조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7조	제2조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14조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행정처분기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14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요건 양성기관의 지정	
	시행규칙	제15조	제6조제1항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조 제22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55조	제22조의8 및 별표 1 제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환경권선택협회의 등록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17조의3	제46조	환경기술인력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4조 및 별표 1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및 별표 6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9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실기시험 응시 시 제출서류
			제31조 및 별표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77조의2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17조제1항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부록 4]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0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비율	2020.2.13
			별표 1의3제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 또는 같은 표 제4호 단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상당한 규모	
			별표 1의 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8조제3항	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금융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보증금 지급사유	2020.2.13
			제7조의5	할부금융영업의 영위 요건	
			제11조의2	금지행위의 요건	
				수탁수수료의 범위	
				금지행위의 시점 등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경비임의 시실 등의 기준	2020.3.31
			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제24조 및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제32조제1항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경비율이 휴대하는 장비 등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경비업의 시실 등의 기준	2020.6.7
			제31조의3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6.30
			제141조의2	경비율이 휴대하는 장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0.6.30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13조	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35조	제15조제1항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일		2020.11.28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35조	제27조 및 별표 3	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조	제재부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5조의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8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		2020.11.31
				시행령 제9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우편법	시행령 제53조의3	제4조	비파괴검사사업자의 보고 사항		
시행령 제53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	제3조제2항	보편적 의무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제12조	동의를 얻는 방법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7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12.31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교육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2020.12.31	
			제18조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토대상조문	제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	2020.6.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
국토 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8조	공동주택상승등급의 표시	2020.6.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1항 및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20.11.28
				제7조의1항 및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9조의2제1항 및 별 표 3	화물자동차 운수주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4제1항 및 별 표 4	화물자동차 운수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12.24		
공인노무사법	법	제3조의3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2020.12.30		
자동차관리법	법	제12조의4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20.12.31	
		제57조제1항제2호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기획재정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간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제28조제1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제38조 후단	사유서 첨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4조의3	부과율		
			제18조	제16조의2제8항		
			제12조	제4조의7 및 별표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4조의9 및 별표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오도문구등의 범위	2020.12.31	
			제4조의2 및 별표 2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6조의2 및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별표 3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7조	연초경각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			
		제3조 및 별표 1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유기식품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20.12.31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농품의 신고 절차		
			제19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		
			제32조의2 및 별표 9의2	인증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신청 절차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제35조 및 별표 10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47조 및 별표 13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제5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제53조, 제54조 및 별표 1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등	
		제57조 및 별표 16	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제58조	공시등의 품질관리	
		제59조, 제60조 및 별표 18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등	
		제62조	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63조	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제64조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제65조	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제66조 및 별표 16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6조	경영지도	
		제4조	업무 개시 보고	
		제5조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예외의 범위 및 절차	
제8조의3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제10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시 조합에 대한 검사 절차			
제4조	최대 채권자의 기준			
제5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0조의3		
		제20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3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문화체육 관광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항의 기준	2020.12.31	
		제16조 및 제17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제21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20조제2항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규정 마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별표 4 및 별 표 5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20.12.31
			제5조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제35조제1항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20조	국의 반출 허가 등	
			제48조	비문화재의 확인	
			제55조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제57조 및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	문화재수리의 제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20.12.31	
		제20조	감리대상 등		
		제21조 및 별표 10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1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22조	문화재수리업자들의 행정처분기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노래연습장 청소년심의 기준	2020.12.31	
		제6조	신수 및 심판의 자격		
		제11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4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19조	환급금의 산출
			제22조제1항	수익금의 배분비율
			제23조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제26조	경주장 등의 단속 등
			제28조 후단	취득 금액 제한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제10조제2항 및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제10조의2 및 별표 3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제10조의3제1항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의2제1항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절차
			제4조 및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제14조	첨부서류의 범위 등			
제15조	회원모집 방법 등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4조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기목 및 나목	비급여대상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2조	제18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020.6.30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0조	제28조 및 별표 3	기초연금 지급정지대상	
	기초연금법	제29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별표 1의2	소득·재산의 변동신고 내용	
	노인복지법	제26조의2	제7조	별표 제4호나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5조제3항 및 별표	추가비용 산정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3조 및 별표	제12조의2	외래환자 비율	
	암관리법	제19조	제18조 및 별표 2	제9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0조	제9조의2	제9조의2	소득·재산의 변동신고 대상	
	전문직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	제43조의5	제43조의5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아동복지법	제7조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4	제7조	제7조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4	제7조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이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증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과징금의 산정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12.31
	약사법	법	제97조의2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과태료 금액	
산림청	산지관리법	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20.12.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2020.12.31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7.30
			제2조제2항 및 별표 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제4조, 제5조 및 별표 3	계량기 제조업 등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제8조 및 별표 5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 및 별표 6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14조 및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 및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8조	중대한 결함의 기준	
			제19조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방법	
			제20조	계량기 검정·재검정의 기준	
			제21조 및 별표 13	계량기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5조 및 별표 14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6조 및 별표 15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27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30조 및 별표 16 제36조 및 별표 20 제37조제2항 제39조 및 별표 24 제40조 및 별표 25 제41조 및 별표 26 제42조 제45조 및 별표 27 제53조 및 별표 28 제3조제2항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34조 제41조 제47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정량의 검사기준 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보고 사항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 과징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와 보고 제조업 등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재거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의 보고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절차 및 부과기준 등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50조	제46조의2	제점도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시행규칙	제50조	제46조의2	공표기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공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3조의2 제8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및 별표 2 제31조제3항·제4항 및 별표 3 제34조 및 별표 4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과태료 부과기준		
에너지이용신업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49조제1항	보증액의 한도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16조 제19조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제21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자료제출 대상기관의 범위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차액계약의 포함 사항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2조의3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행규칙	제53조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청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20조제2항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	2020.12.31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3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3조의2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해의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1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17조의3	제31조의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2조의3		집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제25조의2	제12조의8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제25조의2	제15조		미상환 원리금 상환 기한
			제25조의2	제16조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제63조	제11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63조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제63조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63조	제51조제6항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조 및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20조의3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5조		안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토시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 제45조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제9조 및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 및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의2	업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제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제23조의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제40조 및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식품 의약품 안전처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별표 1	소방시설등 자체검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2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6조	지위승계신고 등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44조 및 별표 8	행정처분기준		
		제8조제9항	허가 요건확인 서류		
		제15조 제20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교육 등		2020.6.30
	식품·의약품분야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2020.7.30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및 별표 6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20조	시험·검사 능력 평가 방법 및 절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험·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대표자 및 시험·검사인력의 교육시간	2020.12.31	
		제22조제1항 및 별표 8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제9조의2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제3조제4항부터 제7항	기준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인체조직안전전에 관한 규칙	시험·검 시행규칙	제6조	조직은행 변경허가 사항 등	2020.12.31	
		제7조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여성 가족부		제13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사항	2020.6.30
		제14조	첨부분서 기재 사항	
		제15조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제16조	조직의 수입승인	
		제17조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제18조	기록의 작성·보고	
		제19조	회수·폐기명령 등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38조 및 별표 6 제2 호가목·나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15조의2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제12조 및 별표 3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제1항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제16조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범위			
제27조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2020.12.31		
제28조	수련지구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제29조 및 별표 4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38조의3	2020.6.30
청소년 보호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의3	시행령	제16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 4	
			별표 5	
			제38조 및 별표 6 제2 호가목·나목	
			제5조	
			제6조	
			제15조의2	
			제12조 및 별표 3	
			제12조·제1항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 4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제177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2020.12.3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령	별표 12 제3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6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응시의사 철회 기간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인사혁신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13조의3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사유	2020.12.31
			제17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28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제32조	과태료 부과 사유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020.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특허청	발명진흥법	법	제83조의2	합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	2020.12.31
			제57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50조의2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0조제1항제4호	과태료 부과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의2	제9조의4 제20조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2020.12.3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해양 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조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2020.8.21
				제6조	보험금액	
				제14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5조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해제	
		시행규칙	제13조	제6조제2항 및 별표 2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제4항 및 별표 3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제8조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해양 수산부	형민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61조 제96조의3	제63조의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2020.9.24
				제68조의2	신수금	
				제68조의3	원형지의 공금과 개발 절차	
				제72조의2	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	
				제72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2조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		
행정 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9조	제54조	방재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020.12.31
				제61조 및 별표 15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제7조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제8조	상근이사의 자격 요건	
				제14조제2항	지급의 차입한도	
				제25조	내부통제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제52조	경영지도방법	
		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54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제56조의2	제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제56조의3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제4조	허가 대상·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	신고 대상·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6조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	교통시설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1조제6항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제24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제점도시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20.6.30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7조 및 별표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14조	제18조	모집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68조	제24조 및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5조	질수질비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조제1항제2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18조	제8조 및 별표 3 제2호	표시사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1조의2	정기검사의 주기	
				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6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	하·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20.7.16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020.7.16
		제4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8조 및 별표 3	행정차분기준	
		제13조의2 및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4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제23조의3제2항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제23조의4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제23조의5제1항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제23조의9	개선기간	
		제28조 및 별표 8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제29조제1항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제47조제3항	박제업자의 변경등록사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수렵면허의 신청·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제72조의2 및 별표 9	수수료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제7조 및 제8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9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2020.7.21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21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제4조제2항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7조의2 및 별표 1의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제8조제2항 및 별표 2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제9조 및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7항	영업의 허가·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제16조제1항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횟수 및 과정	
		제20조 및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 시 제출서류·제출시기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 보고 시 제출서류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 시 제출서류	
		제35조제1항 및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기간 및 과정	
		제38조의3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제39조 및 별표 9	행정처분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20.7.28
			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에의 기록·보존 방법 등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시행령	제37조의4	제12조 및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38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제22조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에의 기록·보존 방법 등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4	제14조 및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20.7.28
			제39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제24조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에의 기록·보존 방법 등	
	시행규칙	제49조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제35조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제12조 및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38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의5 및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제31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제31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규칙	제18조	제8조의12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제8조의13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시행령	제23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제2조제8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제20조 및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26조의3	제6조 및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8조 및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14조의2 및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7조 및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9.24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4조제6항 각 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7조 및 별표 7	행정처분기준	2020.12.31
			제32조 및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37조의4	제7조	수질기준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시행령	제38조의4	제9조	수질기준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시행규칙	제137조	제5조 및 별표 3	배출시설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제15조 및 별표 8	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7조 및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제38조제1항	개선계획서의 포함·첨부 사항	
		제39조제1항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제57조 및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8조제4항·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제62조 및 별표 17	제작자 배출허용기준	
		제63조 및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4조	인증신청·인증생략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제67조제1항	변경인증의 대상	

소관부처	법률근거	제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합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결합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합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수질기준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장의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	제37조의4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5조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6조 및 별표 20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7조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8조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32조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33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31조제2항 및 별표 11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32조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	

[부록 5]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21년 이후)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시행명	시행규칙		시행명	시행규칙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의10	제44조제2호 및 제3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	2018.12.31	
		제48조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	제2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의3	제3조		근로복지사업 용자업무취급기관
	제52조의3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27조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상을 위한 훈련시설·훈련과정·훈련승인 절차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세부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1조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제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3조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		
				제8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2	제21조의3	보존서류의 종류		
제10조				해산신고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소관부처	법률근거		검토대상조문	검토대상규제		재검토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671조	제142조	터워크베인의 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4	제420조제호 및 별표 12 제2조의2제1항 및 별 표 1 제3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대상 사업의 범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조	임장료 징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조의2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조	도산통사실인정의 신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명령	제6조의3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제21조	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명령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20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입법평가 연구 17-15-⑥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2017년 11월 13일 印刷

2017년 11월 15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13,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03-4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